

연구보고서 2003-09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 노동시장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중심으로 -

원종욱
백화중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90년대들어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세계화와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은 각국의 노동시장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정책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는 적절한 사회보장체계의 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외생변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들어 다른 선진국가와 같이 세계화와 지식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위기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완전고용상태하에서 상시근로자의 정년을 가정으로 한 사회보험의 관리체계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조기퇴직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위험양상이 다기화된 경제사회환경 하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사회보장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90년대 이후 노동시장유연화와 더불어 나타난 인구학적인 변화는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이로 인한 연금재정 부담을 비롯한 노령계층의 사회적 부양부담이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인 동시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더불어 연금제도를 통해 고령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개인적인 소득보장과 국가적인 재정부담완화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연구의 진행은 원종욱 연금보험연구팀장의 주관하에 백화중 국민생활연구

팀장, 김태완 주임연구원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바쁜 일정가운데도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본원의 박능후 사회보장연구실장과 최병호 사회보험연구팀장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 약	3
제1장 서 론	3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3
제2장 노동시장 현황분석	34
제1절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34
제2절 우리나라의 비정규·임시·일용직의 현황	35
제3절 중·장년층의 고용현황	40
제3장 노동시장환경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49
제1절 조기퇴직에 따른 가입유형의 변화	49
제2절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등급변동분석	54
제3절 조기퇴직에 따른 평균소득변동분석	60
제4절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64
제4장 노동시장변화와 국민연금재정	75
제1절 조기퇴직자의 소득등급분포 및 가입기간분포	76
제2절 자격변동에 따른 재정수지분석	89
제3절 소결	102

제5장 국민연금의 노동시장에서의 공익적 기능	104
제1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능확대를 통한 고령근로자 재취업활성화 방안	105
제2절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점진적 퇴직제도 확산방안	108
제6장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다원화와 사각지대해소방안	117
제1절 조세방식기초연금제도의 급여대상과 급여수준	118
제2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121
참고문헌	126
부 록	127

표 목 차

〈표 2- 1〉 비정규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36
〈표 2- 2〉 종사상지위별 근로자의 추이	37
〈표 2- 3〉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률	38
〈표 2- 4〉 다양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39
〈표 2- 5〉 사회보험 적용률	40
〈표 2- 6〉 직종별 고령근로자 비율	41
〈표 2- 7〉 연령대별 총인구의 전망: 2000~2020년	43
〈표 2- 8〉 고연령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한 의견	46
〈표 2- 9〉 정년제도 운영하는 사업체 비율	47
〈표 2-10〉 직종별 정년연령	47
〈표 2-11〉 정년퇴직하는 직원을 재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48
〈표 3- 1〉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전체)	50
〈표 3- 2〉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전체)	51
〈표 3- 3〉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전체)	52
〈표 3- 4〉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전체)	54
〈표 3- 5〉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전체)	55
〈표 3- 6〉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전체)	56
〈표 3- 7〉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전체)	58
〈표 3- 8〉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전체)	59
〈표 3- 9〉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대비 평균신고소득변동	60
〈표 3-10〉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평균소득변동(전체)	61
〈표 3-11〉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대비 평균신고소득변동(전체)	62
〈표 3-12〉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대비 평균신고소득변동(전체)	63

<표 3-13>	1998년 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전체)	65
<표 3-14>	2000년 퇴사자들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전체)	67
<표 3-15>	1998년 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전체)	69
<표 3-16>	2000년 퇴사자들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전체)	72
<표 4- 1>	자격변동별 등급구간 분포	76
<표 4- 2>	1998년 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분포	78
<표 4- 3>	2003년 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분포	79
<표 4- 4>	1998년대비 2003년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 연령·등급별 가입자 분포	80
<표 4- 5>	2003년 기준 지역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분포	81
<표 4- 6>	2003년 기준 미가입자의 1998년 연령별 등급별 분포	82
<표 4- 7>	자격변동별 등급구간 분포	83
<표 4- 8>	1998년 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평균가입기간 분포	84
<표 4- 9>	2003년 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평균가입기간 분포	85
<표 4-10>	1998년대비 2003년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의 연령·등급별 평균가입기간	86
<표 4-11>	2003년 기준 지역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평균가입기간 분포	87
<표 4-12>	2003년 기준 미가입자의 1998년까지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평균가입기간 분포	88
<표 4-13>	1998년대비 2003년 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들의 수지분석	91
<표 4-14>	지역가입자유형별 수지분석	92
<표 4-15>	자격변동에 따른 소득대체율변동	93
<표 4-16>	가입자유형별 수지분석	94
<표 4-17>	가입자유형별 등급별 소득대체율 비교	95

〈표 4-18〉	연도별 보험료 수입 추정(1998년 기준 45~55세)	96
〈표 4-19〉	연도별 연금급여 추정(1998년 기준 45~55세)	98
〈표 4-20〉	1998년대비 2003년 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들의 수지분석	100
〈표 4-21〉	지역가입자유형별 수지분석	101
〈표 4-22〉	가입자유형별 수지분석	101
〈표 5- 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내용	107
〈표 5- 2〉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107
〈표 5- 3〉	국민연금기금의 연도별 투자현황	108
〈표 5- 4〉	규모별 포트폴리오 현황	109
〈표 5- 5〉	업종별 투자비중	110
〈표 5- 6〉	국민연금기금보유 상위 5종목	111
〈표 5- 7〉	주식 보유 상위 10개 종목 현황(2002.12.31 현재)	112
〈표 5- 8〉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기업별 지분율 현황	112
〈표 6- 1〉	대상별 기초연금액수준예시(2003년 기준)	119
〈표 6- 2〉	평균소득자의 가입기간별 최종소득대체율(2003년 기준)-1	120
〈표 6- 3〉	평균소득자의 가입기간별 최종소득대체율(2003년 기준)-2	121
〈표 6- 4〉	연도별 기초연금수급자수 추계	122
〈표 6- 5〉	연도별 기초연금소요예산 추정액	123
〈표 6- 6〉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124
〈표 6- 7〉	우리나라 세목별 국세징수액	125

도 목 차

[도 2-1]	평균근속년수의 추이	42
---------	------------	----

부표목차

〈부표 1〉	1998년 퇴사 남성사업장가입자의 2003년 가입유형	129
〈부표 2〉	2000년 퇴사 남성사업장가입자의 2003년 가입유형	130
〈부표 3〉	1998년 퇴사 여성사업장가입자의 2003년 가입유형	131
〈부표 4〉	2000년 퇴사 여성사업장가입자의 2003년 가입유형	132
〈부표 5〉	1998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45~55세)	133
〈부표 6〉	2000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47~57세)	134
〈부표 7〉	2000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45~55세)	135
〈부표 8〉	2000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47~57세)	136
〈부표 9〉	1998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	137
〈부표 10〉	2000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	138
〈부표 11〉	1998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	139
〈부표 12〉	2000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	140
〈부표 13〉	1998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45~55세)	141
〈부표 14〉	2000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47~57세)	142
〈부표 15〉	1998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45~55세)	143
〈부표 16〉	2000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47~57세)	144
〈부표 17〉	1998년 대비 2003년 평균소득변동의 성별비교	145
〈부표 18〉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대비 평균소득변동 성별비교	146
〈부표 19〉	1998년 대비 2003년 평균소득변동의 성별비교(45~55세)	147
〈부표 20〉	2000년 대비 2003년 평균소득변동의 성별비교(47~57세)	148
〈부표 21〉	1998년 남성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149
〈부표 22〉	2000년 남성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151

〈부표 23〉	1998년 여성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153
〈부표 24〉	2000년 여성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155

Abstract

The Effect of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creasing flexibility of labor market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e have utilized the actual records of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to compare the status of salary workers in between years of 1998, 2000, and 2003.

The main focus of the paper is on the salary workers who leaves job in the year of 1998 and 2000 and their participating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2003.

We found that job quitters in either 1998 or 2000 who are found to be employed in 2003 have reported higher earnings than those who are found to be self-employed in 2003. We also found that average tenure of the employed workers are getting shorter in recent years. The most of workers who left jobs in 1998 or 2000 could not move to another employed position and became self-employed or out of labor market.

This trend will threaten old-age income security of those who have been laid off in early 40's and older after retirement.

This paper recommends measure that could deter trend of private labor market culture of shying away from long-tenured workers.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0년대들어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음.
 - 상시근로자의 정년을 가정으로 한 사회보험의 관리체계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위험양상이 다기화된 경제사회환경하에서는 효과적인 사회보장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함.
-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령계층의 사회적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인 동시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 선진국에서 활발히 채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연금급여체계를 고령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 자격변동 관련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관련 선행연구와 선진국의 고령자의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1998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이후 국내노동시장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들의 노동환경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II. 노동시장 현황분석

1.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구조조정하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일시해직, 비정규직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들간에는 상이한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박동운(1997)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과 고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라고 쓰고 있음.
 - 어수봉(1997)은 노동유연성을 외부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노동유연성은 인적자원의 질적 측면 및 양적 측면, 그리고 가격측면 등 다면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함.
 - 박래영(1999)은 첫째 미국·영국과 같이 일시해고(lay off)와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과 둘째, 미·영

과 달리 유럽대륙국가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고용안정을 중요시여겨 노동시간 단축과 업무분할의 방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함.

2. 우리나라의 비정규·임시·일용직의 현황

- 2000년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 다양한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일용근로가 27%로 주종을 이루며 단기계약근로의 비중도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중 시간제근로는 18%, 용역근로는 16%, 독립도급근로는 9%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이 상대적으로 시간제근로(23.5%)와 독립도급(12.4%)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은 일용근로(34.4%)와 용역근로(18.2%)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일용근로와 용역근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고학력일수록 단기계약근로와 시간제근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1990년 45.8%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1996년 43.2%로 증가한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1999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후 이후 계속적으로 50%대에 머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 비정규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의 적용률은 고용보험이 44%, 건강보험 41%, 국민연금 38%, 산재보험 5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단기계약근로와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 7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일용근로나 시간제근로의 경우 20~40%내외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독립도급근로자의 경우는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음.

- 43% 내외의 임금근로자가 모든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된 반면 또 다른 43%는 모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음. 즉, 정규근로자의 모든 사회보험 적용률은 77%이며 비정규근로자의 경우는 약 14%에 불과함.

3. 중·장년층의 고용현황

- 『사업체실태조사』(2002)에 의하면 50세 이상 고연령근로자는 33.6천명으로 전체의 5.0%수준이었음. 직종별로는 고연령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관리인력(13.3%)과 단순노무인력(13.6%)이었으며, 그밖에 다른 직종에서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1980~90년대에 걸쳐 미국 노동시장에 나타났던 고용불안에 비하여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근속기간의 평균 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됨. 전체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1994년의 7.08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는 6.00년의 수준으로 15.3%가 줄어들었음.
-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볼 경우, 노령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노후대비를 위해 고령자의 취업수요는 높아질 것임.
 -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현재에도 빈곤가구(소득이 중간소득의 1/2 미만인 가구)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가우이거나 여성가장가우임.
- 경제위기이후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즉 기업의 연공서열형 인력관리 및 임금체계 아래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중·장년화는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중·장년층 노동력의 상당수가 실직하

여 유희 인력화되거나 또는 전 직장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단순·저기능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경력단절)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 노후대책, 빈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

□ 기업에서 해고된 중·장년층의 장기근속자가 축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임금·저생산성·고용불안의 2차 노동시장에 빠지거나 또는 취업 포기자가 되어 빈곤의 위험성에 처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의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복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비용은 결국 기업과 가계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다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즉, 해고의 기업 비용 < 사회적 비용).
- 현재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는 정리해고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고용유지를 중시하는 질적 구조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함.
- 기업의 구조조정은 임금의 유연화와 함께 이루어짐.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생산성보다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임금이 생산성과 일치하도록 성과급·직무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Ⅲ. 노동시장환경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 노동시장의 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자원자료를 분석하였음.

- 현재 조기퇴직의 연령을 빠르게는 45세로 보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1998년 45~50세와 2000년에 45~55세로 사업장가입자중 퇴사를 하여 자격변동이 발생한 전수에 대해 2003년 현재 가입형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았음.

1. 조기퇴직에 따른 가입유형의 변화

가. 동일연령집단(45~50세)의 연도별 자격변동추이

- 1998년에 45세에서 50세였던 사업장가입자들 중 퇴사를 한 사람들로 총 172,528명이며 이들 중 다른 5년 후인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67,722명(39.3%), 지역가입자는 63,185명(36.6%) 미가입자 41,675명(24.2%)으로 분석되었음.
 -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 중 40.1%가 납부예외 등 보험료미납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연령층(45~50세)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자의 38.8%가 보험료미납자로 전락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0년에는 45세부터 50세의 사업장가입자중 146,570명이 퇴사를 하였고 이들 중 67,805명(46.3%)이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되었으며 45,627명(31.1%)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33,138명(22.6%)이 미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의 44.5%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45~50세의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 퇴사자와 2000년 퇴사자들을 비교해 보면 1998년 퇴사자에 비해 2000년 퇴사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39.3%(1998): 46.3%(2000)로 비교적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미납자가 될 확률은 2000년 이 44.6%로 1998년의 40.1%보다 높아졌음.
- 성별로 분석한 결과 1998년 퇴사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업장가입

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가입으로 전환될 확률로 남성이 17% 정도인데 반해 여성은 43%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여성가입자들의 연도별 차이는 2000년 퇴사자들이 1998년 퇴사자들에 비해 퇴사후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나. 45~55세연령군의 퇴직시점 차이에 따른 가입유형 추이

- 1998년과 2000년 퇴직자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퇴사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퇴사후 사업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임.
 - 1998년의 경우, 45세 퇴직자 중 사업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40%이지만, 54세 퇴직자는 31%, 55세는 10.6%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남성퇴직자만을 분석해 본 결과, 1998년 55세로 퇴직한 남성근로자중 5년 뒤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11.4%로 54세 퇴직자 33.9%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1998년에 비해 2000년이 8%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음. 남성과 다른 점은 경제상황이 2000년에 호전되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비중은 26%로 동일하다는 것임.

2.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등급변동분석

가. 동일연령 집단(45세~50세)의 연도별 소득등급변동 추이

- 1998년 사업장퇴사이후 2003년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의 경우 소득등급이 상승한 사람들이 하락한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45세에 퇴사를 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03년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57%가 등급이 상승되었고, 31.9%는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11.1%는 등급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퇴사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등급이 상승되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급이 상승되는 경우는 45세의 13.1% 그리고 50세의 11.3% 등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 2000년에 퇴사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03년에 타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등급이 올라간 경우가 45세의 경우에는 67.1%, 50세는 65.4%로 1998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등급하락도 45세의 경우 19.3%, 50세 22.0%로 1998년에 비해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음.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로 등급변화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남성의 경우 1998년 퇴사자가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등급이 상승된 비중이 52.8%(45세) 45.7%(50세)인데 반해 여성은 73.4%(45세), 65%(50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이 여성에 비해 퇴사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확률은 높은 반면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직을 한 사람들만을 비교한 다면 등급상승이 될 확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함.
 - 1998년 퇴사자와 2000년 퇴사자를 비교한 결과 남성의 등급상승자 비중이 1998년에 비해 2000년 퇴사자가 10% 이상인데 반해 여성의 등급상승자비중증가는 6%수준이어서 남성의 등급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에는 2000년이 1998년 퇴

사자에 비해 등급상승된 사람의 비중이 약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1998년 남성퇴사자 중 2003년 사업장으로 이직한 가입자의 등급상승자 비중은 퇴직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2000년 퇴사한 후 2003년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의 경우 등급상승이 된 사람들의 비중이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 1998년 퇴사자에 비해 2000년 퇴사의 등급상승자 비중이 2~3% 향상된 것에 그친 데 비해, 사업장가입자들의 경우 10~15%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음. IMF의 여파가 지역가입자보다 사업장가입자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여성가입자의 경우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998년에 비해 2000년도에 등급이 상승된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2000년도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연령과 등급상승이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음. 이는 IMF 외 환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근로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통계임.

나. 45~55세연령군의 퇴직시점차이에 따른 등급변동

- 1998년 45세로 사업장을 퇴직하여 2003년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로 확인된 사람중 등급이 상승된 사람의 비중은 56.6%임.
 - 동일연령층이 1998년이 아닌 2000년에 퇴직을 한 경우 47세가 되며 이들의 등급상승은 65.5%임. 50세가 넘는 고령근로자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등급상승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역설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령근로자가 기업에 잔류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조기퇴직에 따른 평균소득변동분석

가. 45~50세

- 1998년에 45세로 퇴사를 하여 2003년 타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신고소득이 74,412원 상승한 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월신고소득이 1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 1998년 퇴사자와 2000년 퇴사자를 비교해 보면 2000년 퇴사자들의 경우 사업장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퇴사시점의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신고소득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0년 퇴사자 중 사업장으로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도 퇴사시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신고소득액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1998년 퇴사자들에 비해 평균신고소득감소액이 12~13만원정도 줄어들었음.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만을 비교한다면 여성들의 평균소득이 남성들 보다 훨씬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들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 퇴사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남성과 다른 점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신고소득감소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4.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가. 45~50세

- 1998년 퇴사자들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퇴사자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장 규모는 11~50인 사업장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퇴사하는 사업장규모는 45세에서 48세까지는 1~5인 사업장이고 49세와 50세의 경우에는 101인~

500인 사업장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들이 퇴사후 2003년에 종사하는 사업장종사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는 11~50인 사업장이 30% 이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1998년 남성의 경우 1~5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들의 비중이 23.7%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2000년에는 11~50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남성의 비중이 전체 퇴사자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의 경우에는 1998년과 2000년 모두 11~50인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여성의 수가 전체 퇴사자의 30% 이상으로 가장 높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경우, 2003년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있어서 1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의 경우 20%를 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10%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IV. 노동시장변화와 국민연금재정

1. 조기퇴직자의 소득등급분포 및 가입기간분포

가. 소득등급분포

□ 1998년에 퇴사를 한 후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의 퇴직당시 소득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45세의 경우, 소득등급이 21~30등급에 속한 사람들의 비중(34.6%)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 55세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 11~20등급에 속한 사람들의 비중(47%)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03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의 퇴직당시 소득등급을 살펴보면 45세와 55세 모두, 21~30등급에 속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48.3%와 43%로 가장 높았음. 2003년 미납자인 사람들이 1998년에 속했던 소득등급을 보면 45세, 55세 모두 11~20등급에 속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아 44.3%, 35.1%임을 알 수 있음.

나. 가입기간분포

- 1998년에 퇴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과거가입기간이 있어야만 연금급여액의 추정이 가능함. 특징중의 하나는 소득등급이 상승할수록 가입기간이 길어 진다는 것임. 1998년에 퇴사를 한 사람들 중 가입기간이 가장 긴 그룹은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중 1998년 당시 소득등급이 41~45등급이었던 사람들임.

— 평균가입기간은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36~144개월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120~124개월, 그리고 미납부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76~92개월로 가장 짧았음.

2. 자격변동에 따른 재정수지분석

가. 사업장가입자(1998) → 사업장가입자(2003)는 유지하되 등급이 하락한 경우

- 여기서는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했지만, 등급이 하락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수입 및 급여지출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2003년 사업장가입자 중 1998년대비 등급하락자들이 1998년의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의 보험료 수입은 1조 5913억원, 연금급여는 3조 45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재정수지는 1조 8622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2003년 사업자가입자중 1998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의 보험료 수입은 1조 1216억원, 연금급여는 2조 9290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수지는 1조 8074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나. 사업장가입자(1998) → 보험료납부지역가입자(2003)

- 2003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이 1998년이후 계속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은 2조 3,615억원, 연금급여는 7조 5,679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5조 2,064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1998년 이후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보험료수입은 8,989억원, 연금급여는 3조 8,827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2조 9,838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보험료수입은 1조 46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금급여지출은 3조 685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의 순수지차는 2조 2226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등급변동에 따른 등급별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에도 사업장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경우 1등급의 소득대체율은 128.1% 7등급 97.7%, 16등급 50.7%, 31등급 29.6%, 45등급 23.6%로 나타났음.
 - 반면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1등급은 78.5% 7등급 77.5%, 16등급 37.8%, 31등급 23.1%, 45등급 17.8%로 나타나, 사업장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대체율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다. 사업장가입자(1998)→ 보험료미납자(납부예외자, 미가입등(2003))

- 2003년기준 미납자들이 1998년의 사업장가입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보험료수입은 1조 6,609억원, 연금급여는 4조 6,208억원으로 재정수지는 2조 9,599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반면에 1998년 이후 미가

입자로 남아있는 경우 1998년까지의 보험료수입은 6,984억원, 연금급여는 1조 1,535억원, 재정수지는 4,551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기준 미납자들이 1998년의 사업장가입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볼 경우, 1등급은 93.7%, 6등급 81.4%, 12등급 46.7%, 20등급 33.0%, 30등급 24.9%, 40등급 21.4%, 45등급 19.6%로 추계되었음. 반면에 미가입의 상태를 계속해 유지하는 경우, 일부 미가입 상태로 전환하기전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0”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 미가입자들중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일부러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대상자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미가입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이후 거의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따라서 이들 대상자들의 소득대체율이 “0” 이라는 점을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결국 이들 대상자들의 일부가 기초적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경우 공공부조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음.

라. 기준연도별 보험료수입 및 급여지출 추이

- 1998년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수입은 1998년까지는 2조 4,395억원이며, 연령증가에 따라 보험료수입이 감소해 2012년에는 334억원까지 줄어들었음. 2012까지의 전체적인 보험료수입은 6조 6,16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 반면에 1998년 이후 가입자격에 변동이 생겨 2003년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미납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2003년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2012년까지의 보험료수입은 2조 3,914억원, 지역가입자의 2012년까지의 보험료수입은 8,989억원으로 추계되어 전체적인 합계는 3조 2,903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동 금액에 1998년 이후 사업장을 나와 미가입의 상태로 남아 있던 사람들의 1998까지의 보험료수입 6,984억원을 합한 경우, 2003년 가입자격 변동으로 인한 총 추정보험료는 3조 9,887억원으로 나타났음. 1998년의 사업장가입자격을 계속 유지시와의 보험료수입차이는 2조 6,282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준연도별 연금급여 지출을 살펴볼 경우, 1998년 사업장가입 당시의 등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60세부터 연금급여를 수령할 경우의 총연금급여액은 16조 7,056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반면에 2003년에 가입자 자격이 변동후 60세 이후 연금급여를 수령한다고 한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사업장지위를 유지할 경우, 연금급여지출은 6조 101억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3조 8,827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동 금액 합계인 9조 8,928억원에, 1998년 이후 미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의 연금급여지출 1조 1535억원을 합할 경우, 2003년 자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연금급여지출액은 11조 463억원으로 추정되었음.

3. 생애평균소득의 변동을 통한 재정수지 비교

가. 추정배경

- 노동연구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전연령대의 전생애 평균임금은 120.6만원으로 추정되었음.
 - 따라서 본 부문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25등급이하의 현재의 표준보수월액이 자신의 생애소득이라 가정하였으며, 26~32등급은 생애평균소득을 120만원으로 가정하였음. 33등급 이상은 현재가치시 사용한 장기콜금리를 기준으로 각 등급별 보수월액에 5%씩 할인하여 생애평균소득으로 삼아 전체적인 연금급여를 추정하였음.

나. 사업장가입자(1998) → 사업장가입자(2003)는 유지하되 등급이 하락한 경우

□ 2003년 사업장가입자격을 유지한 자중 1998년에 비해 등급하락자들이 1998년의 등급을 유지할 경우의 연금급여는 3조 3,0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재정수지는 1조 7,156억원으로 B값을 변경하기전 1조 8,622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반면에 2003년 사업장가입자 중 1998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의 연금급여는 2조 8,397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수지는 1조 7,181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전체적으로 등급하락시와 등급유지시의 순수지차는 25억원으로 B값을 변경하기전에 548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다. 사업장가입자(1998) → 보험료납부지역가입자(2003)

□ B값변화에 따른 2003년 지역가입자들의 분석결과를 볼 경우, 2003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이 1998년이후 계속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연금급여는 7조 3,004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4조 9,389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1998년이후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연금급여는 3조 8,253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2조 9,264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연금급여지출은 3조 4,7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의 순수지차는 2조 125억원으로 추계되었음. 이는 B값 변경전 2조 2,226억원에 비해 2101억원 감소된 것임.

라. 사업장가입자(1998)→ 보험료미납자(납부예외자, 미가입등(2003))

□ 2003년기준 미납자들이 1998년의 사업장가입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연금급여는 4조 4,785억원으로 재정수지는 2조 8,176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

으로 추계되었으며, 1998년 이후 미가입자로 남아있는 경우 1998년까지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한 연금급여는 1조 945억원, 재정수지는 3961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순수지차는 2조 4215억원으로 B값 변동전 2조 5048억원에 비해 833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4. 소결

- 본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첫째, 기존의 연구나 학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주장되어 오던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예를 들어, 1998년의 사업장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45~55세 사업장가입자들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금액은 6조 616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연금급여지출은 16조 7056억원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아가는 연금급여가 약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둘째, 연금가입자들이 사업장가입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지역가입자나 미가입의 형태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는 연금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연금급여하락은 자격변동자들의 노후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스스로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이들 노후소득의 감소는 정부가 연금과는 다른 형태의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음.
 - 셋째, 자료분석결과,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노동시장에의 변화가 매우 심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 가입자격의 변동은 근로자들의 소득감소와 더불어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차원의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음.

V. 국민연금의 노동시장에서의 공익적 기능

- 앞장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지 못하고 자영업자나 미가입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사업장가입자에서 탈퇴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의 저하, 하향신고등으로 인해 소득등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앞에서 확인 할 수 있었음.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가입기간의 축소와 소득등급의 하락 등 2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선진국의 경우, 연금급여수준이 높아 60세 이후 노동시장의 참여보다는 연금수급을 선호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확보차원에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부분연금지급 등 점진적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문제가 되는 고령근로자의 연령은 선진국과 같이 60세가 아니고 45세 전후가 되고 있음.
 - 유럽국가들의 경우, 60세 이후 65까지 연금제도의 조정으로 고령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시점을 연장시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이 선진국 보다 앞서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보완으로는 고령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4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취업가능성확대와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장잔류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만 할 것임.
 - 취업가능성 확대는 고령자를 고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를 수정하는 것도 포함됨. 즉, 기업에서 고령근로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이 연공서열형 보수체계인만큼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만 할 것임.

1. 국민연금관리공단 기능확대를 통한 고령근로자 재취업활성화 방안

- 고령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잔류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자신을 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임.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 그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은 정년퇴직이후의 소득의 단절보다는 45세 전후에 퇴사로 인한 소득의 단절 또는 소득수준의 하락임.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관리주체는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퇴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퇴사한 사업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성공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만 함.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업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수요조사를 통해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장가입자들에게 신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장잔류가능성을 높여주도록 해야 할 것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지사별로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또 다른 역할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가입자들에 대한 취업알선서비스의 제공임. 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장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

2.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점진적 퇴직제도확산방안

- 국민연금기금의 소유주는 가입자이고 가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협하는 조기퇴직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확산을 주주권행사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주권행사는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금에 의한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의결권행사차원에서 당연히 행사되어야 함.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 의결권행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는 1991년 20억규모로 최초 시작하여 2002년 매입가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금액은 2조 9546억원으로 전년(2조 2778억원) 대비 29.7% 증가하였음. 보유종목은 2001년 62개 종목에서 2002년에는 68개 종목으로 증가하였음.
 - 시장별로 분리해서 보면 2002년 말 거래소 상장종목 62개, 코스닥 등록종목 6개에 대하여 투자하고 있음. 2002년 말 보유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래소 종목은 거래소 시가총액의 1.27%,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 시가총액의 0.2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01년에는 시가총액의 1.1%, 코스닥 등록기업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음.
 -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보면 전기전자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음. 업종별 보유 현황을 보면 전기전자업종이 2001년에 29.04%이고, 2002년에 는 31.1%으로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보유비중을 보이고 있음. 전기전자 업종에 이어서 2002년 말 통신업(17.5%),금융업(16.0%) 등이 있고 보유비중이 낮은 업종은 코스닥 등록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목별로는 2001년에 한국통신, 삼성전기 및 국민, 한미, 하나은행 등 은행 종목들을 초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삼성 전자, KT, SK 텔레콤, 국민은행 등 상위 종목 대부분을 시장에 비해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말 기준으로 투자비중 상위 10종목의 투자비중이 전체 주식투자액의 67%를 넘고 있어 일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나. 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를 통한 노동시장에의 공익적 영향력행사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인 국민에 대하여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일정한 위험허용한도 내에서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치 및 연금자산 가치에 제고에 기여하므로 국민연금 기금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함.
-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주주권한을 행사한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CalPERS 가입 이전과 이후의 S&P500대비 초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가입 이전 5년간에는 평균 66.4%(연간 11.7%)의 음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한것과 비교하여, 이들 기업은 5년간 평균 41.3%(연간 7.2%)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투자대상회사별 주식 보유비중이 작고 보유기간이 짧아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적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매우 작다고 보아야 함.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서 기업별 투자규모도 크기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거대연금은 index portfolio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피함.

- 공적연금은 수입 및 지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기업과 상업적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없어 이해상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의결권 행사를 법적으로 의무화
 -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의무도 있음을 명문화
-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
 - 국민연금기금중 직접투자분은 투자하고 있는 보통주수가 2000년말의 84개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 그리고 외부자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한 없이 모두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 간접투자 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첫째, 자산운용사, 투자전문사, 투신운용사 등에 간접투자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직접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이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직접투자 분에 대해서 내린 의결권 방향을 그대로 적용. 둘째, 국민연금기금이 직접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통주에 위탁운용사가 투자하는 경우는 한가지 방법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어 수탁사가 의결권을 대리 행사토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른 방법은 외부자문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의안을 분석하고 의결권 방향을 권고토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은행 등 수탁기관이 의결권을 위한 의안분석 능력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기업지배구조 기본 원칙 마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의 기본지침이 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Corporate Governance Core Principles)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전담직원 및 위원회 마련
 - 업무의 성격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를 기금운용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본부 내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하나의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만 하는 단계에서는 주식운용팀에 전담직원 한 사람을 두고 (가칭)의결권행사위원회(proxy committee)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외부 자문기관 활용
 - 국민연금 내부직원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고 모든 투자대상 기업들의 주총 의안들을 일일이 분석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해야 할 것임.
- 국민연금 관계자의 투자대상 기업 이사겸임
 -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
- 공시의 강화
 - 적극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공시 강화와 관련하여 연금가입자들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요구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측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국민연금법에 규정 할 수 도 있을 것임.

— 준법감시인에 의한 감시

- 준법감시인은 의결권이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에 부합되게 행사되는지 감시해야 하며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준법감시인은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임. 감시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위해 준법감시인은 현재와 같이 기금운용본부장 밑에 둘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령근로자지원방안

가. 임금보조금제도

-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보조금제도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의 범위안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내용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다수고용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근로자의 6% 이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는 사업장	분기당 15만원을 6%를 초과하여 고용한 고령근로자의 수만큼 지원
신규고용	구직등록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하고 있는 고령자를 월 1인 이상 새로이 고용	신규 고령근로자 1인 당 25만원을 6개월간 지급
재고용	경영상이유, 정년퇴직, 질병, 부상, 통근 곤란 등으로 퇴직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퇴직 3개월 후 2년이내에 재고용	재고용자 1인당 30만원 6개월간 지급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책: 각국사례』,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고령자고용에 대한 임금보조금제도는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제도임. 다만, 장지연(2002)에 의하면 이 제도의 수혜자는 고령근로자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학력수준이 낮고 단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제도의 보완을 통해 거의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표 2〉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지원업체(개소) (증가율 %)	1,726	4,098 (137.4)	8,379 (104.5)	10,126 (20.8)	12,336 (21.8)	14,360 (16.4)
지원인원(명) (증가율 %)	110,207	103,579 (△ 6.0)	150,534 (45.3)	177,520 (17.9)	222,658 (25.4)	268,424 (20.6)
지원금액(백만원) (증가율 %)	8,824	9,257 (4.9)	13,495 (45.8)	15,915 (17.9)	28,009 (76.0)	38,769 (38.4)

VI.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다원화와 사각지대해소방안

- 현재와 같이 사업장가입자들의 평균가입기간이 감소하고 영세자영자로의 이전이 늘어가는 추세 속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16%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소득이 잘 노출되지 않는 자영자들의 소득하향신고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연금제도의 직역간 형평성 및 재정부담문제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상의 어려움이 많은 영세자영자의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방식으로는 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음.
 - 또한 현재 보험료부과방식으로는 납부예외자들을 포함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음.
 - 일부 사업장가입자들의 경우 퇴직금의 기업연금화가 실현되어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들은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외에는 노후소득원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각지대해소를 이룰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 조세방식기초연금제도의 급여대상과 급여수준

- 기초연금액은 해당연도의 1인당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를 사용하였고 2003년의 경우 1인 기준 최저생계비(현금급여)는 313,224원임.
 - － 기초연금급여의 수준을 설정하는데는 형평성을 최우선의 지표로 사용하였고 최대수급액은 2003년기준으로 최저생계비 313,224원의 2/3인 208,607원이 됨.

<표 3> 대상별 기초연금액수준예시(2003년 기준)

급여대상		부분별 기초연금액				월기초 연금액	
		생애평균소득부분		가입기간부분 ¹			
국민연금 급여대상자	생애평 균소득 등급	1 ~ 15	A ² ×60%	가입 기간	10년	A×10%	146,094
					20년	A×30%	187,836
					30년	A×40%	208,707
		16 ~ 30	A×50%		10년	A×10%	125,224
					20년	A×30%	166,965
					30년	A×40%	187,836
		31 ~ 45	A×40%		10년	A×10%	104,353
					20년	A×30%	146,094
					30년	A×40%	166,965
국민연금급여 비대상자 (기초생활대상자 와 타공적연금수급자는 제외)	전가구 소득 계층	가구소득부분		거주 기간	국내거주기간부분		
		중위소득이상	A× 0%				
					중위소득 이하	A×30%	10~19
		20~29	A×10%				83,518
		30~40	A×15%				93,966

주: 1) A는 당해연도 1인기준최저생계비(현금급여)의 2/3로 정함. 2003년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는 313,224원이므로 A는 208,707원이 됨.
 2) 가입기간은 10년을 초과하는 1년당 1.5%를 적용함. 예를 들어 15년은 17.5%, 25년은 32.5%가 각각 적용됨.

2.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표 4> 연도별 기초연금수급자수 추계

(단위: 천명)

연도	국민연금급여대상자(A)					국민연금급여비대상자
	특례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완전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기존노령계층 또는 국민연금사각지대
2008	1923	107	9	117	35	1,438
2015	1665	553	159	326	154	1,920
2020	1415	1,248	404	611	294	2,054
2025	1104	2,108	805	963	376	2,469
2030	755	2,766	1,304	1,378	362	2,928

- 주: 1) 국민연금급여비대상자는 $[(65\text{세 노인인구} - \text{국민연금급여대상자}) \times 65\%]$ - 타공적연금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 로 구하였음.
 2) 노인이 있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중 중위소득이하인 가구의 비중을 65%로 추정하였고 타 공적연금대상자는 2003년 실적인 25만명을 그리고 65세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002년 기준인 97,424명을 모든 연도에 적용하였음
 3) 연금수급자추계는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에서 인용하였음.

2008년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경우 월 3,5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의 저하를 우려하여 추계기간을 2030년으로 한정하였고 2030년에는 월 1조 2천억원(2003년가격)의 재정소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경우 연간 조세부담액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397,667억원이며 조세부담율은 22.7%에서 조금 상승한 23.43%로 올라가게 됨.

〈표 5〉 연도별 기초연금소요예산 추정액

(단위: 천명)

연도	국민연금급여대상자					국민연금급여 비대상자	월총 소요예산 (단위: 억원)
	특례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완전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기존노령계층 또는 국민연금사각지대	
2008	1923× 93,966원	107× 140,936원	9× 156,596원	117× 156,596원	35× 156,596원	1,438× 93,966원	3,561
2015	1665× 93,966원	553× 140,936원	159× 156,596원	326× 156,596원	154× 156,596원	1,920× 93,966원	5,148
2020	1415× 93,966원	1,248× 140,936원	404× 187,836원	611× 187,836원	294× 187,836원	2,054× 93,966원	7,068
2025	1104× 93,966원	2,108× 140,936원	805× 187,836원	963× 187,836원	376× 187,836원	2,469× 93,966원	9,711
2030	755× 93,966원	2,766× 140,936원	1,304× 187,836원	1,378× 187,836원	362× 187,836원	2,928× 93,966원	12,125

주: 연도별 소요예산은 2003년도 가격으로 계산된 것임.

- 우리나라 국세의 주요세목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국세의 총징수액은 96조 6천억원이며 이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가가치세로 32.71%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우리나라 세목별 국세징수액

(단위: 10억원, %)

세목	징수액	비중	세목	징수액	비중
부가가치세	31,608	32.71	주세	2,655	2.74
법인세	19,243	19.91	농어촌특별세	1,379	1.42
소득세	19,160	19.83	상속·증여세	2,381	0.88
교통세	9,479	9.81	증권거래세	2,035	2.10
특별소비세	4,288	4.43	기타	856	2.46
교육세	3,532	3.65	합계	96,616	100

- 기초연금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음주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인상과 철저한 부과·징수를 통해 기초연금재원의 상당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 나머지 일부 재원은 상속·증여세의 인상을 통해 충당하고 증권거래세와 교통세에서도 일부 추가징수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동시장의 변화는 적절한 사회보장체계의 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외생변수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들어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위기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노동력 수급의 탄력적 조절이 용이한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체도의 적용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0; 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는 완전고용상태하에서 상시근로자의 정년을 가정으로 한 사회보험의 관리체계는 1990년대이후 본격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조기퇴직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위험양상이 다기화된 경제사회환경하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사회보장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른 한편,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연금재정 부담을 비롯한 노령계층의 사회적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인 동시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선진국에서 활발히 채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연금급여체계를 고령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과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자 자격변동 관련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관련 선행연구와 선진국의 고령자의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자료로는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1998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이후 국내노동시장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들의 노동환경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가입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행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연금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노동시장 현황분석

제 1 절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1990년대들어 나타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하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기업구조조정하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일시해직, 비정규직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¹⁾.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들간에는 상이한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박동운(1997)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과 고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라고 쓰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론적 측면에서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간접적 조정은 노동비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임금비용의 상승을 완화하거나, 임금체계의 성과급화 및 다양화, 비임금노동비용의 상승완화를 의미한다. 직접적 조정은 다시 양적 고용조정과 기능적 고용조정으로 구분되며, 양적 고용조정에는 노동이동의 촉진(노동시장 정보의 활성화, 연금제도의 개선,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간 자본이동 촉진), 근로시간 및 근로관행 조정(정규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임시근로 및 파트타임제 실시, 계약 및 파견근로제 실시), 근로자 수 조정(신규채용 중지 또는 삭감, 조기퇴직 유도, 비정규근로자 재계약 중지)이 있다. 기능적 고용조정은 근

1) 정부는 1997년과 1998년의 두 번에 걸친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우선 1997년 3월 노동법개정을 통해서는 정리해고제(2년간 유예),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의 시행과,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임금 2002년 폐지 등을 도입하였으며, 1998년 2월에는 정리해고의 실시(2년유예삭제), 교원노조허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인정,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였다.

로조직개편과 노동력재배치(기업내 일시적 혹은 항구적인 배치전환, 파견, 훈련과 재훈련 실시)의 2가지로 나누고 있다. 정책적 조정은 정부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공공서비스의 행정제공, 노동시장 훈련, 청년·장애인·노령계층의 직업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어수봉(1997)은 노동유연성을 외부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노동유연성은 인적자원의 질적 측면(지식·기능·기술, 배치전환 등) 및 양적 측면(고용량,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그리고 가격측면(임금의 결정방식, 임금조정 등) 등 다면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래영(1999)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영국과 같이 일시해고(lay off)와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과 둘째, 미·영과 달리 유럽대륙국가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고용안정을 중요시여겨 노동시간 단축과 업무분할의 방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제 2 절 우리나라의 비정규·임시·일용직의 현황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비정규직 및 임시·일용직과 관련된 현황자료는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주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등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1. 비정규근로자의 분포

2000년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 다양한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일용근로가 27%로 주종을 이루며 단기계약근로의 비중도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1 참조). 이중 시간제근로는 18%, 용역근로는 16%, 독립도급근로는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시대체근로나 재택가내근로는 1% 미만에 불과하며, 파견근로의 비중도 4% 미만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비정규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단위: 천명, %)

	전 체	시간제	단기 계약	일용 근로	일시 대체	용역 근로	파견 근로	재택 가내	독립 도급
전 체	1,360	18.3	25.0	26.8	1.0	16.0	3.7	0.3	9.0
성 별									
남 자	643	12.4	25.2	34.4	0.9	18.2	3.5	0.3	5.2
여 자	717	23.5	24.8	20.0	1.1	14.0	3.8	0.4	12.4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285	8.2	19.8	36.3	0.7	29.4	1.8	0.2	3.6
고 졸	704	18.5	22.4	27.5	1.1	15.2	3.9	0.3	11.1
초 대 졸	133	21.2	37.0	15.0	1.3	8.7	8.3	0.4	8.2
대졸 이상	164	26.5	42.9	8.6	1.0	4.3	3.8	0.5	12.4
미 상	74	31.0	7.9	45.1	0.5	10.7	1.0	0.5	3.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

성별로 살펴볼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시간제근로(23.5%)와 독립도급(12.4%)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은 일용근로(34.4%)와 용역근로(18.2%)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녀 공히 비중이 높게 나타난 곳은 단기계약으로 각각 25.2%와 2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시간제, 단기계약, 일용근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남성은 단기계약, 일용근로, 용역근로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일용근로와 용역근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고학력일수록 단기계약근로와 시간제근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시일용직의 확산

각 연도별 취업자 통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1990년 45.8%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1996년 43.2%로 증가한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9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후 이후 계속적으로 50%대에 머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전체 취업자중에서 임

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25.5%로 전체 취업자의 1/4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30%를 넘어 2002년에는 33%까지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중 1/3수준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2〉 종사상지위별 근로자의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취업자(A)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B)				(C+D)/B	(C+D)/A
			전체	상용	임시(C)	일용(D)		
1990	18,085	7,135	10,950	5,938	3,171	1,840	45.8	27.7
1991	18,649	6,950	11,699	6,497	3,362	1,840	44.5	27.9
1992	19,009	7,099	11,910	6,838	3,300	1,772	42.6	26.7
1993	19,234	7,291	11,944	7,033	3,193	1,718	41.1	25.5
1994	19,848	7,370	12,479	7,225	3,475	1,779	42.1	26.5
1995	20,414	7,515	12,899	7,499	3,598	1,802	41.9	26.5
1996	20,853	7,653	13,200	7,499	3,907	1,794	43.2	27.3
1997	21,214	7,810	13,404	7,282	4,236	1,886	45.7	28.9
1998	19,938	7,641	12,296	6,534	4,042	1,720	46.9	28.9
1999	20,291	7,628	12,663	6,135	4,255	2,274	51.6	32.2
2000	21,156	7,795	13,360	6,395	4,608	2,357	52.1	32.9
2001	21,572	7,913	13,659	6,714	4,726	2,218	50.8	32.2
2002	22,169	7,988	14,181	6,862	4,886	2,433	51.6	33.0

자료: 통계청, 인터넷자료(kosis).

3.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실태

비정규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의 적용률은 고용보험이 44%, 건강보험 41%, 국민연금 38%, 산재보험 5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단기계약근로와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 7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일용근로나 시간제근로의 경우 20~40%내외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독립도급근로자의 경우는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적용률은 가구단위 조사(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나타나는 적용률보다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사업체와 긴밀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비정규근로자 중심으로 사업체단위

조사에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²⁾.

〈표 2-3〉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률

(단위: 천명,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 체	43.7	40.8	38.2	52.2
시 간 제	23.5	17.6	17.8	29.1
단기계약	73.9	72.1	68.5	73.5
일용근로	18.6	12.3	11.5	39.0
일시대체	46.4	37.1	35.1	50.8
용역근로	75.7	78.6	70.1	87.7
파견근로	77.2	71.9	71.1	79.9
채택가내	20.1	19.4	17.4	31.5
독립도급	5.2	7.4	5.9	6.0

주: 적용률 = 적용 / (적용 + 미적용) ×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

43% 내외의 임금근로자가 모든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된 반면 또 다른 43%는 모든 사회보험³⁾의 혜택을 받고 있다(표 2-4 참조).

무기계약근로의 경우 근로지속가능성에 따라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을 배제되는 비중은 32%(근로지속가능)에서 93%(1년 이내에만 제한적으로 근로지속가능)로 현저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무기계약근로의 경우 시간당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근로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유기계약근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사회보험을 배제하는 비중은 10% 미만인 반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저히 높은 수준(근로지속이 가능한 경우는 64%이며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95%에 이룸)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의 경우 약 95%가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2) 산재보험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산재보험료 항목이 없는 바 이의 적용은 응답사업장의 설문에 대한 인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3) 여기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만 고려

일용대기근로 역시 거의 100%에 배제되어 있다. 반면 파견근로나 용역근로의 경우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중은 각각 43%와 30%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독립도급근로의 경우 시간당임금 수준이 높은 데 반해 사회보험의 적용률은 낮은 편으로 20% 만이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표 2-4〉 다양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단위: 천명, %)

고용형태	2001년		2002년	
	모두 배제	모두 적용	모두 배제	모두 적용
전체	5,733 (43.4)	5,752 (43.5)	5,811 (42.6)	5,978 (43.9)
무기계약				
지속가능	2,866 (30.6)	5,050 (53.8)	3,126 (31.7)	5,222(52.9)
3년 초과	45 (62.5)	20 (27.8)	14 (42.4)	17 (51.5)
3년 이하	190 (83.0)	24 (10.5)	118 (79.7)	16 (10.8)
1년 이하	206 (92.4)	8 (3.6)	161 (93.1)	7 (4.0)
유기계약근로				
3년 초과 (○)	1 (1.9)	40 (76.9)	3 (4.6)	48 (73.8)
(×)	0 (0.0)	3 (60.0)	0 (0.0)	5 (83.3)
1년~3년 (○)	4 (7.4)	38 (70.4)	6 (9.5)	42 (66.7)
(×)	1 (11.1)	6 (66.7)	0 (0.0)	5 (71.4)
1년 (○)	11 (7.7)	115 (81.0)	10 (5.1)	166 (83.3)
(×)	0 (0.0)	12 (85.7)	1 (7.1)	7 (50.0)
1년 미만 (○)	163 (70.9)	43 (18.7)	143 (64.4)	51 (23.0)
(×)	472 (89.6)	32 (6.1)	472 (90.6)	19 (3.6)
시간제근로	565 (96.6)	7 (1.2)	537 (95.0)	10 (1.8)
파견근로	55 (45.1)	60 (49.2)	37 (43.0)	45 (52.3)
용역근로	114 (38.1)	126 (42.1)	97 (29.6)	145 (44.2)
독립도급근로	540 (72.3)	150 (20.1)	508 (70.6)	153 (21.3)
일용대기근로	304 (99.7)	0 (0.0)	421 (99.5)	0 (0.0)
재택근로	197 (88.7)	19 (8.6)	157 (85.8)	18 (9.8)

주: 고용형태 중 (○)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경우 (×)는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만 해당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비정규근로자의 모든 사회보험 적용배제율은 78%에 이르는 반면 정규근로자의 경우는 5% 미만(표 2-5 참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근로자의 모든 사회보험 적용률은 77%이며 비정규근로자의 경우는 약 14%에 불과하다. 오분류된 근로자 중 일용직의 경우는 비정규근로자보다 열악한 편인 반면 임시직의 경우는 비정규근로자보다는 다소 나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5〉 사회보험 적용률

(단위: 천 명, %)

	2001년		2002년	
	모두 배제	모두 적용	모두 배제	모두 적용
임금근로자	5,733 (43.4)	5,752 (43.5)	5,811 (42.6)	5,978 (43.9)
비정규근로자	2,851 (80.0)	488 (13.7)	2,666 (78.4)	482 (14.2)
오분류 근로자: 일용직	503 (90.1)	26 (4.7)	622 (90.0)	32 (4.6)
오분류 근로자: 임시직	2,136 (71.9)	481 (16.2)	2,246 (68.5)	650 (19.8)
정규근로자	244 (4.0)	4,757 (77.7)	278 (4.4)	4,814 (76.9)

주: 오분류된 근로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를 경우 비정규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아 정규근로자로 구분되나 종사상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인 경우로 비정규근로의 규모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임(본문 참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제 3 절 중·장년층의 고용현황

1. 고령근로자의 취업현황

『사업체실태조사』(2002)에 의하면 50세 이상 고연령근로자는 33.6천명으로 전체의 5.0%수준이었다. 직종별로는 고연령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관리인력(13.3%)과 단순노무인력(13.6%)이었으며, 그밖에 다른 직종에서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고령근로자의 비중은 더욱 낮아지며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

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관리인력 중에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12%, 단순노무인력 중에는 10.7%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력의 22~24%, 단순노무인력의 22~28%가 50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이다. 300인 미만 사업체간에는 더 세부적인 차이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6〉 직종별 고령근로자 비율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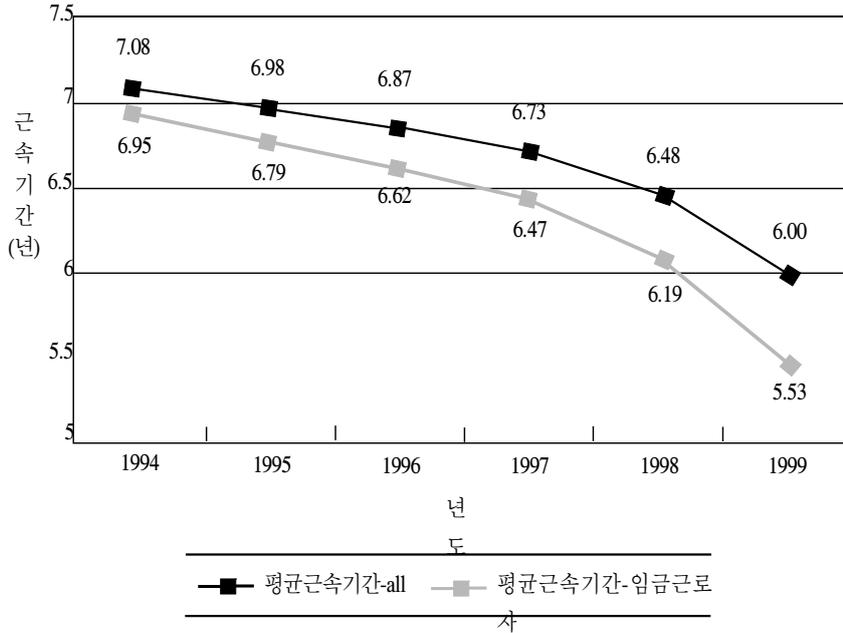
	산업별		규모별			
	전산업	제조업	50인 미만	51~150인	151~300인	300인 이상
관리인력	13.27	11.13	23.57	22.44	21.81	11.89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3.24	1.35	2.61	3.17	4.34	3.16
사무인력	2.94	1.57	3.29	3.67	3.06	2.95
서비스 및 영업인력	2.49	0.73	4.67	3.82	3.81	2.30
생산기능인력	4.48	3.52	9.42	10.92	7.49	3.81
단순노무인력	13.60	9.40	28.03	22.15	27.63	10.67
전체 고연령근로자	33.6	13.4	.95	4.0	4.0	24.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2. 근속기간 감소와 고용불안정성 증가 현황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1980~90년대에 걸쳐 미국 노동시장에 나타났던 고용불안에 비하여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2-1] 평균근속년수의 추이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근속기간의 평균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된다(도 2-1 참조). [도 2-1]에서 전체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1994년의 7.0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는 6.00년의 수준으로 15.3%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근로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 같은 기간에 19.6%나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볼 경우, 노령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노후대비를 위해 고령자의 취업수요는 높아질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의 발달은 은퇴 연령을 늦추고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인구구성을 살펴볼 경우, 전체 인구 중 20대의 비중은 2000년의 17.5%에서 2005년 15.8%, 2010년 13.9% 등으로 줄어드는 반면, 중·고령자의 비중 증가에

따라 취업자의 연령증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50~64세 인구의 비중은 2000년의 13.2%에서 2005년 14.5%, 2010년 18.1%, 2015년 21.2%로 증가하였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인구는 2000년의 521만 명(11.1%)에서 2005년에는 628만 명(12.9%), 2010년 751만 명(15.5%)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 연령대별 총인구의 전망: 2000~2020년

(단위: 천명,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5~19세	3842 (8.2)	3096 (6.4)	3456 (7.0)	3174 (6.3)	2719 (5.4)
20~24세	3854 (8.2)	3822 (7.9)	3081 (6.2)	3440 (6.8)	3160 (6.2)
25~29세	4353 (9.3)	3829 (7.9)	3799 (7.7)	3063 (6.1)	3420 (6.8)
30~34세	4248 (9.0)	4340 (9.0)	3819 (7.7)	3790 (7.6)	3057 (6.0)
35~39세	4273 (9.1)	4223 (8.7)	4317 (8.7)	3802 (7.6)	3774 (7.5)
40~44세	4020 (8.6)	4223 (8.7)	4180 (8.4)	4277 (8.5)	3769 (7.4)
45~49세	2921 (6.2)	3961 (8.2)	4170 (8.4)	4134 (8.2)	4233 (8.4)
50~54세	2366 (5.0)	2868 (5.9)	3901 (7.9)	4112 (8.2)	4083 (8.1)
55~59세	2006 (4.3)	2302 (4.7)	2805 (5.7)	3823 (7.6)	4034 (8.0)
60~64세	1817 (3.9)	1913 (3.9)	2212 (4.5)	2710 (5.4)	3701 (7.3)
65세 이상	3395 (7.2)	4366 (9.0)	5302 (11.0)	6337 (12.6)	7667 (15.0)

주: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인구에서 해당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2001. 11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에도 빈곤가구(소득이 중간소득의 1/2 미만인 가구)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가우이거나 여성가장가우이다. 빈곤가구의 52.5%가 60세 이상 고령가우이며, 60세 이상 가구의 47.2%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패널 조사).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위기이후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즉 기업의 연공서열형 인력관리 및 임금체계 아래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중·장년화는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중·장년층 노동력의 상당수가 실직하여 유희 인력화되거나 또는 전 직장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단순

· 저기능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1960~1965년 사이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40대 후반에 접근함에 따라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0·50대 인구의 비중은 2000년의 24.1%에서 2005년 27.5%, 2010년 30.4%로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경력단절)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 노후대책, 빈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외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남성의 상당수는 26~27세에 사회에 진출하여 40·50대 실직하는 반면, 선진국의 남성들은 22~23세에 사회에 진출 60세까지는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3. 기업의 중·장년층 고용정책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여기에 필연적으로 함께 수반하는 것은 기업의 고용조정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의 당위론은 「고용조정 ⇒ 경쟁력 강화 ⇒ 경제성장촉진 ⇒ 취업기회확대 ⇒ 중·장년층의 재고용」의 메커니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조정은 중·장년층의 희생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의 열매가 지식·기술을 갖춘 청년층에 돌아가고, 중·장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중·장년층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해고된 중·장년층의 장기근속자가 그 동안 축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임금·저생산성·고용불안의 2차 노동시장에 빠지거나 또는 취업포기자가 되어 빈곤의 위험성에 처한다면,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의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복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비용은 결국 기업과 가계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다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즉, 해고의 기업 비용 < 사회적 비용).

따라서 고령자의 빈곤 및 복지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와 지속적인 취업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중·장년층이 축적하여온 인적자원(특히,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유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는 정리해고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고용유지를 중시하는 질적 구조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즉, 인력재배치, 순환휴직, 일자리 공유, 일시휴업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직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유지에 대한 노력은 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고용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 임금의 유연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의 중·장년층 고용불안의 핵심원인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인해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생산성보다 임금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이 생산성과 일치하도록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성과급·직무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기업의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

고연령 인력에 대하여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의 약 8%에 해당하는 113개 사업체는 이미 고용조정을 통하여 고연령 인력의 과잉문제를 해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4%의 사업체는 현재 고연령 인력의 과잉고용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37%의 사업체는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고령자 과잉고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제조업체는 비제조업체에 비하여 고연령인력의 과잉고용이 향후 문제점으로

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연령인력의 과잉문제는 사업체 규모별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현재 또는 미래의 고연령 인력 과잉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고연령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한 의견

	비제조업	제조업	50인 미만	51~150인	151~300인	300인 이상	규모 미확인	전체
고용조정을 통해 고연령의 과잉 고용문제를 해소함	56 (7.4)	57 (8.4)	18 (6.2)	40 (9.5)	15 (6.8)	33 (9.0)	7 (5.2)	113 (7.9)
여전히 고연령 인력의 과잉고용은 심각함	22 (2.9)	35 (5.2)	5 (1.7)	13 (3.1)	13 (5.9)	21 (5.7)	5 (3.7)	57 (4.0)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에는 과잉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임	256 (33.9)	273 (40.3)	78 (26.7)	163 (38.7)	89 (40.6)	156 (42.6)	47 (31.9)	529 (36.9)
고연령 인력의 과잉고용은 문제가 되지 않음	358 (47.4)	266 (39.2)	159 (54.5)	185 (43.9)	88 (40.2)	145 (39.6)	47 (34.8)	624 (43.5)
기타	63 (8.3)	47 (6.9)	32 (10.9)	20 (4.7)	14 (6.4)	11 (3.0)	33 (24.4)	110 (7.7)
전체	755 (100.0)	678 (100.0)	292 (100.0)	421 (100.0)	219 (100.0)	366 (100.0)	135 (100.0)	1,433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76.2%로 나타났다. 5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50%에 불과하며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비율도 높아져서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96.4%)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에 비하여 제조업의 정년제 운영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9〉 정년제도 운영하는 사업체 비율

(단위: %)

	규 모					산 업		전체
	50인 이하	51~150인	151~300인	301인 이상	규모 미확인	비제조업	제조업	
정년제도 있음	50.2	70.0	88.1	96.4	75.8	73.9	78.8	76.2
직종/직급별 정년	13.4	15.4	17.3	21.4	30.1	24.9	11.7	18.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표 2-10〉 직종별 정년연령

(단위: %)

	규 모					산 업		전체
	50인 이하	51~150인	151~300인	301인 이상	규모 미확인	비제조업	제조업	
관리인력	51.6	58.2	57.6	58.1	56.6	58.8	56.2	57.9
연구개발/기술인력	60.3	55.9	57.2	57.9	58.2	59.0	55.7	57.4
사무인력	55.9	57.1	55.4	56.9	56.4	57.1	55.5	56.6
서비스 및 영업인력	55.6	55.5	54.8	57.0	55.6	56.8	54.9	55.9
생산기능인력	56.7	56.3	56.7	56.4	56.0	56.4	56.4	56.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일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임금을 삭감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경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급만 주거나 보수의 50~70%만 지급한다면 재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22~28% 정도로 나타났고 퇴직자를 파트타임으로 재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기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33.4%의 기업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 정년퇴직하는 직원을 재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단위: %)

	규 모					산 업		전체
	50인 이하	51~ 150인	151~ 300인	301인 이상	규모 미확인	비제조 업	제조업	
보수의 50~70% 지급	25.2	34.6	25.8	23.2	26.2	23.8	32.0	27.7
기본급만 유지	18.8	27.7	22.4	19.4	17.5	18.3	26.5	22.2
파트타임으로 고용	16.9	17.1	16.3	16.0	15.9	16.5	16.6	16.5
기타 비정규직으로 고용	26.9	34.4	35.2	36.4	31.3	33.0	33.8	33.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제 3 장 노동시장환경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과급효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자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사업장가입자들이 퇴사로 인해 자격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들이 향후 국민연금에 어떠한 형태로 가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기퇴직의 연령을 빠르게는 45세로 보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1998년 45~50세와 2000년에 45~55세로 사업장가입자중 퇴사를 하여 자격변동이 발생한 전수에 대해 2003년 현재 가입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내용은 두 기간의 가입유형변화, 소득등급변화, 평균소득변화, 사업장규모별 가입유형 등이다.

제 1 절 조기퇴직에 따른 가입유형의 변화

1. 동일연령집단(45~50세)의 연도별 자격변동추이

1998년 사업장에서 45~50세 연령대내에서 퇴사한 가입자들이 2003년 현재 국민연금에 어떠한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2000년에 동일연령대인 45~50세의 퇴사한 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3-1>은 1998년에 45세에서 50세였던 사업장가입자들 중 퇴사를 한 사람들로 총 172,528명이며 이들 중 다른 5년 후인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67,722명(39.3%), 지역가입자는 63,13명(36.6%) 미가입자 41,675명(24.2%)으로 분석되었다.

〈표 3-1〉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전체)

(단위: 명, %)

퇴사당시 연령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12,422 (40.3)	12,339 (99.3)	83 (0.7)	11,057 (35.9)	6,577 (59.7)	4,480 (40.5)	7,352 (23.8)	30,831 (100.0)
46세	13,643 (39.7)	13,552 (99.3)	91 (0.7)	12,330 (35.9)	7,393 (60.0)	4,937 (40.0)	8,386 (24.4)	34,359 (100.0)
47세	10,007 (39.8)	9,956 (99.5)	51 (0.5)	8,983 (35.7)	5,326 (59.3)	3,657 (40.7)	6,143 (24.4)	25,133 (100.0)
48세	10,791 (39.6)	10,737 (99.5)	54 (0.5)	9,922 (36.4)	6,012 (60.6)	3,910 (39.4)	6,523 (23.9)	27,236 (100.0)
49세	10,577 (38.7)	10,527 (99.5)	50 (0.5)	10,280 (37.6)	6,167 (60.0)	4,113 (40.0)	6,484 (23.7)	27,341 (100.0)
50세	10,282 (37.2)	10,224 (99.4)	58 (0.6)	10,559 (38.2)	6,352 (60.2)	4,207 (39.8)	6,787 (24.6)	27,628 (100.0)
전체	67,722 (39.3)	67,335 (99.4)	387 (0.6)	63,131 (36.6)	37,817 (59.9)	25,304 (40.1)	41,675 (24.2)	172,528 (100.0)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중 40.1%가 납부예외 등 보험료미납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연령층(45~50세)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자의 38.8%가 보험료미납자로 전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중에 어떠한 형태로 가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3년에 지역가입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퇴사자의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이들의 상당수가 보험료미납부자로 전락함을 알 수 있었다.

2000년에는 45세부터 50세의 사업장가입자중 146,570명이 퇴사를 하였고 이들 중 67,805명(46.3%)가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되었으며 45,627명(31.1%)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3,138명(22.6%)가 미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의 44.5%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연령구간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확율이 높아지거나 미납자로 전락할 확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전체)

(단위: 명, %)

퇴사당 시연령 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14,978 (46.8)	14,894 (99.4)	84 (0.6)	9,693 (30.3)	5,421 (55.9)	4,272 (44.1)	7,355 (23.0)	32,026 (100.0)
46세	12,521 (46.4)	12,444 (99.4)	77 (0.6)	8,481 (31.4)	4,720 (55.7)	3,761 (44.3)	5,993 (22.2)	26,995 (100.0)
47세	10,923 (46.9)	10,864 (99.5)	59 (0.5)	7,153 (30.7)	3,938 (55.1)	3,215 (44.9)	5,228 (22.4)	23,304 (100.0)
48세	11,650 (45.8)	11,591 (99.5)	59 (0.5)	7,965 (31.3)	4,397 (55.2)	3,568 (44.8)	5,841 (22.9)	25,456 (100.0)
49세	8,505 (45.8)	8,466 (99.5)	39 (0.5)	5,832 (31.4)	3,252 (55.8)	2,580 (44.2)	4,216 (22.7)	18,553 (100.0)
50세	9,228 (45.6)	9,171 (99.4)	57 (0.6)	6,503 (32.1)	3,602 (55.4)	2,901 (44.6)	4,505 (22.3)	20,236 (100.0)
전체	67,805 (46.3)	67,430 (99.4)	375 (0.6)	45,627 (31.1)	25,330 (55.5)	20,297 (44.5)	33,138 (22.6)	146,570 (100.0)

45~50세의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 퇴사자와 2000년 퇴사자들을 비교해 보면 1998년 퇴사자에 비해 2000년 퇴사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39.3%(1998): 46.3%(2000)로 비교적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미납자가 될 확률은 2000년 이 44.6%로 1998년의 40.1%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부표 1~4참조) 1998년 퇴사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가입으로 전환될 확률로 남성이 17% 정도인데 반해 여성은 43%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이면서 납부예외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합친다면 일단 사업장을 퇴사하는 경우 여성들이 보험료 미납자로 전환될 확률은 남성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입자들의 연도별 차이는 2000년 퇴사자들이 1998년 퇴사자들에 비해 퇴사후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은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45~50세 연령대의 사업장가입자가 퇴사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비중이 31.6%인데 반해 2000년 퇴직자들은 39.7%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미납자의 비중은 51%내외로 1998년과 2000년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45~55세연령군의 퇴직시점 차이에 따른 가입유형 추이

〈표 3-3〉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전체)

(단위: 명, %)

퇴사당 시연령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12,006 (40.0)	11,926 (99.3)	80 (0.7)	10,818 (36.0)	6,424 (59.4)	4,394 (40.6)	7,202 (24.0)	30,026 (100.0)
46세	13,223 (39.5)	13,131 (99.3)	92 (0.7)	12,007 (35.9)	7,179 (59.8)	4,828 (40.3)	8,213 (24.6)	33,443 (100.0)
47세	9,739 (39.7)	9,685 (99.4)	54 (0.6)	8,775 (35.8)	5,194 (59.2)	3,581 (40.8)	6,011 (24.5)	24,525 (100.0)
48세	10,448 (39.4)	10,395 (99.5)	53 (0.5)	9,662 (36.4)	5,852 (60.6)	3,810 (39.4)	6,402 (24.1)	26,512 (100.0)
49세	10,229 (38.5)	10,175 (99.5)	54 (0.5)	10,031 (37.7)	6,012 (59.9)	4,019 (40.1)	6,338 (23.8)	26,598 (100.0)
50세	9,993 (37.1)	9,932 (99.4)	61 (0.6)	10,317 (38.3)	6,191 (60.0)	4,126 (40.0)	6,646 (24.7)	26,956 (100.0)
51세	9,788 (36.5)	9,731 (99.4)	57 (0.6)	10,093 (37.6)	6,169 (61.1)	3,924 (38.9)	6,963 (25.9)	26,844 (100.0)
52세	7,657 (34.7)	7,613 (99.4)	44 (0.6)	8,316 (37.7)	5,105 (61.4)	3,211 (38.6)	6,076 (27.6)	22,049 (100.0)
53세	6,718 (33.4)	6,683 (99.5)	35 (0.5)	7,539 (37.5)	4,501 (59.7)	3,038 (40.3)	5,872 (29.2)	20,129 (100.0)
54세	6,806 (31.0)	6,763 (99.4)	43 (0.6)	7,664 (34.9)	4,781 (62.4)	2,883 (37.6)	7,519 (34.2)	21,989 (100.0)
55세	2,479 (10.6)	2,467 (99.5)	12 (0.5)	3,762 (16.0)	2,562 (68.1)	1,200 (31.9)	17,199 (73.4)	23,440 (100.0)
전체	99,086 (35.1)	98,501 (99.4)	585 (0.6)	98,984 (35.0)	59,970 (60.6)	39,014 (39.4)	84,441 (29.9)	282,511 (100.0)

현재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퇴직대상연령이 되고 있는 45~55세 연령군의 사업장가입자들이 1998년 퇴사하는 경우와 2년후인 2000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후 자격변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1998년과 2000년 퇴직자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퇴사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퇴사후 사업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1998년의 경우, 45세 퇴직자 중 사업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40%이지만, 54세 퇴직자는 31%, 55세는 10.6%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1998년에는 35.1%, 2000년에는 41.8%로 조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으로 전환된 사람 중 비납부자의 비중은 1998년의 39.4%였으나, 2000년에는 43.5%로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퇴직자만을 분석해 본 결과, 55세를 전후로 하여 퇴직후 사업장으로 이직할 확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1998년 55세로 퇴직한 남성근로자중 5년 뒤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11.4%로 54세 퇴직자 33.9%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표 5>에서 45세에 사업장을 퇴직한 사람들 중 5년 뒤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42.4%이다. 1998년 45세였던 사람들 중 1998년에 퇴직을 하지 않고 2000년에 47세로 2년 더 사업장에 잔류한 후 퇴직한 사람들의 5년후 사업장가입자 전환비중은 <부표 6>에서와 같이 49.2%를 나타내고 있다. 2년 더 잔류한 후 퇴직한 사람들의 사업장 전환비중이 약 7%정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는 IMF여파가 해소된 경제전반적인 효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앞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 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부표 7~8참조). 전반적으로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1998년에 비해 2000년이 8%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다른 점은 경제상황이 2000년에 호전되었음에도 지역가입자 전환된 사람의 비중은 26%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미가입자의 비중이 줄고 사업장가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전체)

(단위: 명, %)

퇴사당시 연령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7세	10,502 (46.7)	10,444 (99.4)	58 (0.6)	6,928 (30.8)	3,818 (55.1)	3,110 (44.9)	5,067 (22.5)	22,497 (100.0)
48세	11,241 (45.6)	11,187 (99.5)	54 (0.5)	7,736 (31.4)	4,267 (55.2)	3,469 (44.8)	5,682 (23.0)	24,659 (100.0)
49세	8,220 (45.8)	8,181 (99.5)	39 (0.5)	5,655 (31.5)	3,158 (55.8)	2,497 (44.2)	4,081 (22.7)	17,956 (100.0)
50세	8,913 (45.5)	8,855 (99.3)	58 (0.7)	6,300 (32.1)	3,495 (55.5)	2,805 (44.5)	4,387 (22.4)	19,600 (100.0)
51세	8,803 (45.7)	8,764 (99.6)	39 (0.4)	6,314 (32.8)	3,406 (53.9)	2,908 (46.1)	4,138 (21.5)	19,255 (100.0)
52세	8,663 (45.0)	8,619 (99.5)	44 (0.5)	6,323 (32.8)	3,454 (54.6)	2,869 (45.4)	4,282 (22.2)	19,268 (100.0)
53세	8,389 (43.5)	8,351 (99.5)	38 (0.5)	6,191 (32.1)	3,457 (55.8)	2,734 (44.2)	4,686 (24.3)	19,266 (100.0)
54세	6,496 (41.5)	6,458 (99.4)	38 (0.6)	5,054 (32.3)	2,920 (57.8)	2,134 (42.3)	4,110 (26.2)	15,660 (100.0)
55세	6,064 (38.8)	6,033 (99.5)	31 (0.5)	4,924 (31.5)	2,823 (57.3)	2,101 (42.7)	4,624 (29.6)	15,612 (100.0)
56세	6,162 (39.5)	6,136 (99.6)	26 (0.4)	5,054 (32.4)	3,035 (60.1)	2,019 (39.9)	4,383 (28.1)	15,599 (100.0)
57세	2,221 (14.4)	2,208 (99.4)	13 (0.6)	2,916 (19.0)	2,015 (69.1)	901 (30.9)	10,249 (66.6)	15,386 (100.0)
전체	85,674 (41.8)	85,236 (99.5)	438 (0.5)	63,395 (31.0)	35,848 (56.5)	27,547 (43.5)	55,689 (27.2)	204,758 (100.0)

제 2 절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등급변동분석

1. 동일연령 집단(45세 ~ 50세)의 연도별 소득등급변동 추이

동일한 집단에 대해 퇴사 이후 현재의 소득등급이 과거 퇴사시점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998년 사업장퇴사이후 2003년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의 경우 소득등급이 상승한 사람들이 하락한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5세에 퇴사를 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03년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57%가 등급이 상승되었고, 31.9%는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11.1%는 등급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전체)

(단위: 명, %)

연령	구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7,086 (57.0)	3,959 (31.9)	1,377 (11.1)	12,422 (100.0)
	지역	2,406 (13.1)	15,669 (85.1)	334 (1.8)	18,409 (100.0)
46세	사업장	7,551 (55.3)	4,553 (33.4)	1,539 (11.3)	13,643 (100.0)
	지역	2,337 (11.3)	18,068 (87.2)	311 (1.5)	20,716 (100.0)
47세	사업장	5,437 (54.3)	3,479 (34.8)	1,091 (10.9)	10,007 (100.0)
	지역	1,704 (11.3)	13,201 (87.3)	221 (1.5)	15,126 (100.0)
48세	사업장	5,689 (52.7)	3,927 (36.4)	1,175 (10.9)	10,791 (100.0)
	지역	1,876 (11.4)	14,316 (87.1)	253 (1.5)	16,445 (100.0)
49세	사업장	5,320 (50.3)	4,114 (38.9)	1,143 (10.8)	10,577 (100.0)
	지역	1,856 (11.1)	14,595 (87.1)	313 (1.9)	16,764 (100.0)
50세	사업장	5,082 (49.4)	4,123 (40.1)	1,077 (10.5)	10,282 (100.0)
	지역	1,968 (11.3)	15,090 (87.0)	288 (1.7)	17,346 (100.0)

주: 지역가입항목에서 등급하락 수치는 미가입자 및 가입상태가 취득 이외인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함.

그러나 퇴사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등급이 상승되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5세 퇴사자가 2003년에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등급상승된 비율은 57%인데 반해 46세는 55.3%, 47세는 54.3%, 48세 52.7%, 49세 50.3%, 50세 49.4%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급이 상승되는 경우는 45세의 13.1% 그리고 50세의 11.3% 등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등급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전체)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10,048 (67.1)	2,892 (19.3)	2,038 (13.6)	14,978 (100.0)
	지역	2,309 (13.5)	14,374 (84.3)	365 (2.1)	17,048 (100.0)
46세	사업장	8,394 (67.0)	2,469 (19.7)	1,658 (13.2)	12,521 (100.0)
	지역	2,010 (13.9)	12,139 (83.9)	325 (2.2)	14,474 (100.0)
47세	사업장	7,170 (65.6)	2,239 (20.5)	1,514 (13.9)	10,923 (100.0)
	지역	1,646 (13.3)	10,442 (84.3)	293 (2.4)	12,381 (100.0)
48세	사업장	7,684 (66.0)	2,418 (20.8)	1,548 (13.3)	11,650 (100.0)
	지역	1,881 (13.6)	11,592 (84.0)	333 (2.4)	13,806 (100.0)
49세	사업장	5,648 (66.4)	1,736 (20.4)	1,121 (13.2)	8,505 (100.0)
	지역	1,405 (14.0)	8,363 (83.2)	280 (2.8)	10,048 (100.0)
50세	사업장	6,039 (65.4)	2,033 (22.0)	1,156 (12.5)	9,228 (100.0)
	지역	1,596 (14.5)	9,136 (83.0)	276 (2.5)	11,008 (100.0)

주: 지역가입항목에서 등급하락 수치는 미가입자 및 가입상태가 취득 이외인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함.

2000년에 퇴사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03년에 타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등급이 올라간 경우가 45세의 경우에는 67.1%, 50세는 65.4%로 1998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등급하락도 45세의 경우 19.3%, 50세 22.0%로 1998년에 비해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 등급이 상승된 사람들의 비중이 1998년 퇴사자와 2000년 퇴사자간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로 등급변화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표 9~12 참조).

남성의 경우 1998년 퇴사자가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등급이 상승된 비중이 52.8%(45세) 45.7%(50세)인데 반해 여성은 73.4%(45세), 65%(50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퇴사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확률은 높은 반면 사업

장에서 사업장으로 이직을 한 사람들만을 비교한 다면 등급상승이 될 확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다.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 중 등급이 유지된 사람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8년 퇴사자와 2000년 퇴사자를 비교한 결과 남성의 등급상승자 비중이 1998년에 비해 2000년 퇴사자가 10%이상인데 반해 여성의 등급상승자 비중증가는 6%수준이어서 남성의 등급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에는 2000년이 1998년 퇴사자에 비해 등급상승된 사람의 비중이 약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남성퇴사자 중 2003년 사업장으로 이직한 가입자의 등급상승자 비중은 퇴직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5세에 퇴직을 한 사람들 중 2003년 다른 사업장에서 등급이 상승된 사람들의 비중은 52.8%이나 50세에 퇴직을 하고 2003년에 다른 사업장가입자로 등급이 상승된 사람의 비중도 45.7%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등급상승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2000년 퇴사한 후 2003년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의 경우 등급상승이 된 사람들의 비중이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45세에 퇴직을 한 후, 2003년 새로운 사업장에서 등급이 상승된 사람의 비중은 63.2%이고 50세의 경우는 61.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 1998년 퇴사자에 비해 2000년 퇴사의 등급상승자 비중이 2~3% 향상된 것에 그친데 비해, 사업장가입자들의 경우 10~15%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IMF의 여파가 지역가입자보다 사업장가입자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입자의 경우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998년에 비해 2000년도에 등급이 상승된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연령과 등급상승이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근로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통계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의 등급상승비중은 극히 낮고 1998년에 비해

2000년에 등급이 상승된 비율도 1%내외로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2. 45~55세연령군의 퇴직시점차이에 따른 등급변동

1998년 45세로 사업장을 퇴직하여 2003년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로 확인된 사람중 등급이 상승된 사람의 비중은 56.6%이다. 동일연령층이 1998년이 아닌 2000년에 퇴직을 한 경우 47세가 되며 이들의 등급상승은 65.5%이다. 2년후에 회사를 옮긴 사람들의 등급상승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통계이지만 1998년의 특수한 상황과 비교를 하는 관계로 경제상황의 호전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7〉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전체)

(단위: 명, %)

연령	구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6,798 (56.6)	3,894 (32.4)	1,314 (10.9)	12,006 (100.0)
	지역	2,090 (11.6)	15,641 (86.8)	289 (1.6)	18,020 (100.0)
46세	사업장	7,282 (55.1)	4,442 (33.6)	1,499 (11.3)	13,223 (100.0)
	지역	2,274 (11.2)	17,641 (87.2)	305 (1.5)	20,220 (100.0)
47세	사업장	5,623 (54.0)	3,417 (35.1)	1,059 (10.9)	9,739 (100.0)
	지역	1,657 (11.2)	12,912 (87.3)	217 (1.5)	14,786 (100.0)
48세	사업장	5,460 (52.3)	3,845 (36.8)	1,143 (10.9)	10,448 (100.0)
	지역	1,822 (11.3)	14,000 (87.2)	242 (1.5)	16,064 (100.0)
49세	사업장	5,110 (50.0)	4,015 (39.3)	1,104 (10.8)	10,229 (100.0)
	지역	1,793 (11.0)	14,267 (87.2)	309 (1.9)	16,369 (100.0)
50세	사업장	4,917 (49.2)	4,044 (40.5)	1,032 (10.3)	9,993 (100.0)
	지역	1,920 (11.3)	14,762 (87.0)	281 (1.7)	16,963 (100.0)
51세	사업장	4,633 (47.3)	4,131 (42.2)	1,024 (10.5)	9,788 (100.0)
	지역	2,089 (12.2)	14,618 (85.7)	349 (2.0)	17,056 (100.0)
52세	사업장	3,448 (45.0)	3,428 (44.8)	781 (10.2)	7,657 (100.0)
	지역	1,679 (11.7)	12,426 (86.3)	287 (2.0)	14,392 (100.0)
53세	사업장	2,999 (44.6)	3,061 (45.6)	658 (9.8)	6,718 (100.0)
	지역	1,666 (12.4)	11,481 (85.6)	264 (2.0)	13,411 (100.0)
54세	사업장	3,024 (44.4)	3,127 (45.9)	655 (9.6)	6,806 (100.0)
	지역	1,861 (12.3)	13,012 (85.7)	310 (2.0)	15,183 (100.0)
55세	사업장	1,059 (42.7)	1,193 (48.1)	227 (9.2)	2,479 (100.0)
	지역	1,146 (5.5)	19,627 (93.6)	188 (0.9)	20,961 (100.0)

50세가 넘는 고령근로자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

고, 등급상승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설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령근로자가 기업에 잔류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전체)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7세	사업장	6,874 (65.5)	2,146 (20.4)	1,482 (14.1)	10,502 (100.0)
	지역	1,611 (13.4)	10,108 (84.3)	276 (2.3)	11,995 (100.0)
48세	사업장	7,388 (65.7)	2,346 (20.9)	1,507 (13.4)	11,241 (100.0)
	지역	1,821 (13.6)	11,275 (84.0)	322 (2.4)	13,418 (100.0)
49세	사업장	5,445 (66.2)	1,676 (20.4)	1,099 (13.4)	8,220 (100.0)
	지역	1,367 (14.0)	8,092 (83.1)	277 (2.8)	9,736 (100.0)
50세	사업장	5,812 (65.2)	1,968 (22.1)	1,133 (12.7)	8,913 (100.0)
	지역	1,553 (14.5)	8,868 (83.0)	266 (2.5)	10,687 (100.0)
51세	사업장	5,762 (65.5)	1,941 (22.0)	1,100 (12.5)	8,803 (100.0)
	지역	1,570 (15.0)	8,612 (82.4)	269 (2.6)	10,451 (100.0)
52세	사업장	5,687 (65.6)	1,872 (21.6)	1,104 (12.7)	8,663 (100.0)
	지역	1,650 (15.6)	8,663 (81.7)	292 (2.8)	10,605 (100.0)
53세	사업장	5,375 (64.1)	1,995 (23.8)	1,019 (12.1)	8,389 (100.0)
	지역	1,719 (15.8)	8,825 (81.1)	333 (3.1)	10,877 (100.0)
54세	사업장	4,179 (64.3)	1,576 (24.3)	741 (11.4)	6,496 (100.0)
	지역	1,474 (16.1)	7,393 (80.7)	297 (3.2)	9,164 (100.0)
55세	사업장	3,658 (60.3)	1,755 (28.9)	651 (10.7)	6,064 (100.0)
	지역	1,430 (15.0)	7,835 (82.1)	283 (3.0)	9,548 (100.0)
56세	사업장	3,805 (61.7)	1,757 (28.5)	600 (9.7)	6,162 (100.0)
	지역	1,596 (16.9)	7,510 (79.6)	331 (3.5)	9,437 (100.0)
57세	사업장	1,439 (64.8)	561 (25.3)	221 (10.0)	2,221 (100.0)
	지역	1,298 (9.9)	11,660 (88.6)	207 (1.6)	13,165 (100.0)

제 3 절 조기퇴직에 따른 평균소득변동분석

1. 45~50세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령별로, 가입종별로 신고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를 확인해 보았다. 1998년에 45세로 퇴사를 하여 2003년 타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신고소득이 74,412원 상승한 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월신고소득이 1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퇴사시점의 연령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신고소득이 하락하였으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45세와 46세에 퇴사를 한 사람들이 신고소득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고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퇴사연령이 높아지는 경우, 타사업장에서의 신고소득이 연령에 비례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대비 평균신고소득변동

(단위: 원, 명)

연령	구분	평균소득	인원
45세	사업장	74,412	12,422 (40.3)
	지역	-1,096,750	18,409 (59.7)
46세	사업장	37,653	13,643 (39.7)
	지역	-1,097,879	20,716 (60.3)
47세	사업장	-15,287	10,007 (39.8)
	지역	-1,100,883	15,126 (60.2)
48세	사업장	-43,338	10,791 (39.6)
	지역	-1,110,999	16,445 (60.4)
49세	사업장	-81,702	10,577 (38.7)
	지역	-1,131,969	16,764 (61.3)
50세	사업장	-127,040	10,282 (37.2)
	지역	-1,125,770	17,346 (62.8)

1998년 퇴사자와 2000년 퇴사자를 비교해 보면 2000년 퇴사자들의 경우 사업장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퇴사시점의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신고소득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퇴사자 중 사업장으로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도 퇴사시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신고소득액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1998년 퇴사자들에 비해 평균신고소득감소액이 12~13만원정도 줄어들었다.

〈표 3-10〉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평균소득변동(전체)

(단위: 원, 명, %)

연령	구분	평균소득	인원
45세	사업장	282,442	14,978 (46.8)
	지역	-874,312	17,048 (53.2)
46세	사업장	261,784	12,521 (46.4)
	지역	-882,311	14,474 (53.6)
47세	사업장	240,925	10,923 (46.9)
	지역	-895,370	12,381 (53.1)
48세	사업장	229,843	11,650 (45.8)
	지역	-880,421	13,806 (54.2)
49세	사업장	224,618	8,505 (45.8)
	지역	-858,943	10,048 (54.2)
50세	사업장	187,282	9,228 (45.6)
	지역	-862,485	11,008 (54.4)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만을 비교한다면 여성들의 평균소득이 남성들 보다 훨씬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표 17~18 참조). 예를들어, 1998년에 퇴사를 한 남성이 2003년에 타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평균신고소득이 40,891원 증가한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213,026원이 증가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사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남성과 다른 점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신고소득감소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퇴사자들을 비교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을 비교하면 남성

과 여성들간의 평균신고소득상승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여 모두 퇴사시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신고소득상승액이 감소하여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1998년 퇴사자들에 비해 2000년 퇴사자들의 평균신고소득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두 기간 동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 45~55세('98년), 47~57세('00년)

〈표 3-11〉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대비 평균신고소득변동(전체)

(단위: 원, 명)

연령	구분	평균소득	인원
45세	사업장	69,645	12,006
	지역	-1,095,710	18,020
46세	사업장	26,641	13,223
	지역	-1,100,646	20,220
47세	사업장	-22,770	9,739
	지역	-1,102,037	14,786
48세	사업장	-53,205	10,448
	지역	-1,113,982	16,064
49세	사업장	-89,593	10,229
	지역	-1,134,969	16,369
50세	사업장	-135,641	9,993
	지역	-1,127,704	16,963
51세	사업장	-168,119	9,788
	지역	-1,121,620	17,056
52세	사업장	-206,954	7,657
	지역	-1,151,640	14,392
53세	사업장	-250,718	6,718
	지역	-1,177,411	13,411
54세	사업장	-228,112	6,806
	지역	-1,193,229	15,183
55세	사업장	-251,194	2,479
	지역	-1,386,174	20,961

<표 3-12>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대비 평균신고소득변동(전체)

(단위: 원, 명)

연 령	구 분	평균소득	인 원
47세	사업장	239,441	10,502
	지역	-897,200	11,995
48세	사업장	227,696	11,241
	지역	-881,567	13,418
49세	사업장	222,175	8,220
	지역	-859,150	9,736
50세	사업장	185,286	8,913
	지역	-863,423	10,687
51세	사업장	172,581	8,803
	지역	-855,614	10,451
52세	사업장	158,397	8,663
	지역	-863,825	10,605
53세	사업장	131,786	8,389
	지역	-861,307	10,877
54세	사업장	113,404	6,496
	지역	-900,325	9,164
55세	사업장	37,827	6,064
	지역	-989,314	9,548
56세	사업장	38,677	6,162
	지역	-888,954	9,437
57세	사업장	62,981	2,221
	지역	-995,593	13,165

제 4 절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1. 45~50세

사업장규모별로 퇴사후 자격변동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1998년 퇴사자들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퇴사자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장규모는 11~50인 사업장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퇴사하는 사업장규모는 45세에서 48세까지는 1~5인 사업장이고 49세와 50세의 경우에는 101인~500인 사업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이 퇴사후 2003년에 종사하는 사업장종사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는 11~50인 사업장이 30% 이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사당시 1~5인 사업장가입자들이 전체 퇴사자의 약 20%수준인 반면 2003년에는 7%내외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에는 6~10인 사업장종사자의 비중이 6%내외인 반면 2003년에는 12%내외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1~50인 사업장의 종사비율이 1998년에 비해 10%정도 증가한 반면 영세사업장인 1~5인 사업장의 종사자비중은 14%정도 감소하였다.

1998년 남성의 경우 1~5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들의 비중이 23.7%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2000년에는 11~50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남성의 비중이 전체 퇴사자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98년과 2000년 모두 11~50인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여성의 수가 전체 퇴사자의 30%이상으로 가장 높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경우, 2003년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있어서 1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의 경우 20%를 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10%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3〉 1998년 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전체)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규모 (명)	1998년			2003년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5세	0	0 (0.0)	0 (0.0)	0 (0.0)	3 (0.0)	11,057 (100.0)	7,352 (100.0)
	1~5	7,129 (23.1)	0 (0.0)	0 (0.0)	967 (7.8)	0 (0.0)	0 (0.0)
	6~10	1,939 (6.3)	0 (0.0)	0 (0.0)	1,530 (12.3)	0 (0.0)	0 (0.0)
	11~50	7,545 (24.5)	0 (0.0)	0 (0.0)	4,107 (33.1)	0 (0.0)	0 (0.0)
	51~100	3,014 (9.8)	0 (0.0)	0 (0.0)	1,490 (12.0)	0 (0.0)	0 (0.0)
	101~500	5,817 (18.9)	0 (0.0)	0 (0.0)	2,529 (20.4)	0 (0.0)	0 (0.0)
	501~1000	1,603 (5.2)	0 (0.0)	0 (0.0)	527 (4.2)	0 (0.0)	0 (0.0)
	1001 이상	3,784 (12.3)	0 (0.0)	0 (0.0)	1,269 (10.2)	0 (0.0)	0 (0.0)
계	30,831 (100.0)	0 (0.0)	0 (0.0)	12,422 (100.0)	11,057 (100.0)	7,352 (100.0)	
46세	0	0 (0.0)	0 (0.0)	0 (0.0)	1 (0.0)	12,330 (100.0)	8,386 (100.0)
	1~5	7,486 (21.8)	0 (0.0)	0 (0.0)	1,008 (7.4)	0 (0.0)	0 (0.0)
	6~10	2,118 (6.2)	0 (0.0)	0 (0.0)	1,626 (11.9)	0 (0.0)	0 (0.0)
	11~50	8,423 (24.5)	0 (0.0)	0 (0.0)	4,530 (33.2)	0 (0.0)	0 (0.0)
	51~100	3,418 (9.9)	0 (0.0)	0 (0.0)	1,739 (12.7)	0 (0.0)	0 (0.0)
	101~500	6,608 (19.2)	0 (0.0)	0 (0.0)	2,764 (20.3)	0 (0.0)	0 (0.0)
	501~1000	1,898 (5.5)	0 (0.0)	0 (0.0)	598 (4.4)	0 (0.0)	0 (0.0)
	1001 이상	4,408 (12.8)	0 (0.0)	0 (0.0)	1,377 (10.1)	0 (0.0)	0 (0.0)
계	34,359 (100.0)	0 (0.0)	0 (0.0)	13,643 (100.0)	12,330 (100.0)	8,386 (100.0)	
47세	0	0 (0.0)	0 (0.0)	0 (0.0)	1 (0.0)	8,983 (100.0)	6,143 (100.0)
	1~5	5,398 (21.5)	0 (0.0)	0 (0.0)	714 (7.1)	0 (0.0)	0 (0.0)
	6~10	1,543 (6.1)	0 (0.0)	0 (0.0)	1,187 (11.9)	0 (0.0)	0 (0.0)
	11~50	6,133 (24.4)	0 (0.0)	0 (0.0)	3,355 (33.5)	0 (0.0)	0 (0.0)
	51~100	2,549 (10.1)	0 (0.0)	0 (0.0)	1,328 (13.3)	0 (0.0)	0 (0.0)
	101~500	4,834 (19.2)	0 (0.0)	0 (0.0)	2,028 (20.3)	0 (0.0)	0 (0.0)
	501~1000	1,368 (5.4)	0 (0.0)	0 (0.0)	480 (4.8)	0 (0.0)	0 (0.0)
	1001 이상	3,308 (13.2)	0 (0.0)	0 (0.0)	914 (9.1)	0 (0.0)	0 (0.0)
계	25,133 (100.0)	0 (0.0)	0 (0.0)	10,007 (100.0)	8,983 (100.0)	6,143 (100.0)	
48세	0	0 (0.0)	0 (0.0)	0 (0.0)	2 (0.0)	9,922 (100.0)	6,523 (100.0)
	1~5	5,488 (20.1)	0 (0.0)	0 (0.0)	793 (7.3)	0 (0.0)	0 (0.0)
	6~10	1,559 (5.7)	0 (0.0)	0 (0.0)	1,258 (11.7)	0 (0.0)	0 (0.0)
	11~50	6,761 (24.8)	0 (0.0)	0 (0.0)	3,605 (33.4)	0 (0.0)	0 (0.0)
	51~100	2,734 (10.0)	0 (0.0)	0 (0.0)	1,421 (13.2)	0 (0.0)	0 (0.0)
	101~500	5,448 (20.0)	0 (0.0)	0 (0.0)	2,204 (20.4)	0 (0.0)	0 (0.0)
	501~1000	1,494 (5.5)	0 (0.0)	0 (0.0)	509 (4.7)	0 (0.0)	0 (0.0)
	1001 이상	3,752 (13.8)	0 (0.0)	0 (0.0)	999 (9.3)	0 (0.0)	0 (0.0)
계	27,236 (100.0)	0 (0.0)	0 (0.0)	10,791 (100.0)	9,922 (100.0)	6,523 (100.0)	

〈표 3-13〉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 (명)	1998년			2003년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9세	0	0 (0.0)	0 (0.0)	0 (0.0)	1 (0.0)	10,280 (100.0)	6,484 (100.0)
	1~5	5,441 (19.9)	0 (0.0)	0 (0.0)	783 (7.4)	0 (0.0)	0 (0.0)
	6~10	1,589 (5.8)	0 (0.0)	0 (0.0)	1,346 (12.7)	0 (0.0)	0 (0.0)
	11~50	6,763 (24.7)	0 (0.0)	0 (0.0)	3,513 (33.2)	0 (0.0)	0 (0.0)
	51~100	2,676 (9.8)	0 (0.0)	0 (0.0)	1,363 (12.9)	0 (0.0)	0 (0.0)
	101~500	5,470 (20.0)	0 (0.0)	0 (0.0)	2,137 (20.2)	0 (0.0)	0 (0.0)
	501~1000	1,614 (5.9)	0 (0.0)	0 (0.0)	486 (4.6)	0 (0.0)	0 (0.0)
	1001 이상	3,788 (13.9)	0 (0.0)	0 (0.0)	948 (9.0)	0 (0.0)	0 (0.0)
	계	27,341 (100.0)	0 (0.0)	0 (0.0)	10,577 (100.0)	10,280 (100.0)	6,484 (100.0)
50세	0	0 (0.0)	0 (0.0)	0 (0.0)	0 (0.0)	10,559 (100.0)	6,787 (100.0)
	1~5	5,426 (19.6)	0 (0.0)	0 (0.0)	721 (7.0)	0 (0.0)	0 (0.0)
	6~10	1,673 (6.1)	0 (0.0)	0 (0.0)	1,261 (12.3)	0 (0.0)	0 (0.0)
	11~50	6,813 (24.7)	0 (0.0)	0 (0.0)	3,688 (35.9)	0 (0.0)	0 (0.0)
	51~100	2,765 (10.0)	0 (0.0)	0 (0.0)	1,264 (12.3)	0 (0.0)	0 (0.0)
	101~500	5,518 (20.0)	0 (0.0)	0 (0.0)	2,037 (19.8)	0 (0.0)	0 (0.0)
	501~1000	1,558 (5.6)	0 (0.0)	0 (0.0)	495 (4.8)	0 (0.0)	0 (0.0)
	1001 이상	3,875 (14.0)	0 (0.0)	0 (0.0)	816 (7.9)	0 (0.0)	0 (0.0)
	계	27,628 (100.0)	0 (0.0)	0 (0.0)	10,282 (100.0)	10,559 (100.0)	6,787 (100.0)

<표 3-14> 2000년 퇴사자들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전체)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규모 (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5세	0	0 (0.0)	0 (0.0)	0 (0.0)	0 (0.0)	9,693 (100.0)	7,355 (100.0)
	1~5	4,244 (13.3)	0 (0.0)	0 (0.0)	998 (6.7)	0 (0.0)	0 (0.0)
	6~10	2,713 (8.5)	0 (0.0)	0 (0.0)	1,755 (11.7)	0 (0.0)	0 (0.0)
	11~50	11,022 (34.4)	0 (0.0)	0 (0.0)	5,085 (33.9)	0 (0.0)	0 (0.0)
	51~100	3,730 (11.6)	0 (0.0)	0 (0.0)	1,875 (12.5)	0 (0.0)	0 (0.0)
	101~500	6,561 (20.5)	0 (0.0)	0 (0.0)	2,656 (17.7)	0 (0.0)	0 (0.0)
	501~1000	1,321 (4.1)	0 (0.0)	0 (0.0)	720 (4.8)	0 (0.0)	0 (0.0)
	1001 이상	2,435 (7.6)	0 (0.0)	0 (0.0)	1,889 (12.6)	0 (0.0)	0 (0.0)
	계	32,026 (100.0)	0 (0.0)	0 (0.0)	14,978 (100.0)	9,693 (100.0)	7,355 (100.0)
46세	0	0 (0.0)	0 (0.0)	0 (0.0)	0 (0.0)	8,481 (100.0)	5,993 (100.0)
	1~5	3,542 (13.1)	0 (0.0)	0 (0.0)	878 (7.0)	0 (0.0)	0 (0.0)
	6~10	2,202 (8.2)	0 (0.0)	0 (0.0)	1,397 (11.2)	0 (0.0)	0 (0.0)
	11~50	9,149 (33.9)	0 (0.0)	0 (0.0)	4,145 (33.1)	0 (0.0)	0 (0.0)
	51~100	3,192 (11.8)	0 (0.0)	0 (0.0)	1,479 (11.8)	0 (0.0)	0 (0.0)
	101~500	5,528 (20.5)	0 (0.0)	0 (0.0)	2,352 (18.8)	0 (0.0)	0 (0.0)
	501~1000	1,114 (4.1)	0 (0.0)	0 (0.0)	642 (5.1)	0 (0.0)	0 (0.0)
	1001 이상	2,268 (8.4)	0 (0.0)	0 (0.0)	1,628 (13.0)	0 (0.0)	0 (0.0)
	계	26,995 (100.0)	0 (0.0)	0 (0.0)	12,521 (100.0)	8,481 (100.0)	5,993 (100.0)
47세	0	0 (0.0)	0 (0.0)	0 (0.0)	0 (0.0)	7,153 (100.0)	5,228 (100.0)
	1~5	3,010 (12.9)	0 (0.0)	0 (0.0)	744 (6.8)	0 (0.0)	0 (0.0)
	6~10	1,871 (8.0)	0 (0.0)	0 (0.0)	1,219 (11.2)	0 (0.0)	0 (0.0)
	11~50	7,939 (34.1)	0 (0.0)	0 (0.0)	3,615 (33.1)	0 (0.0)	0 (0.0)
	51~100	2,718 (11.7)	0 (0.0)	0 (0.0)	1,294 (11.8)	0 (0.0)	0 (0.0)
	101~500	4,814 (20.7)	0 (0.0)	0 (0.0)	2,108 (19.3)	0 (0.0)	0 (0.0)
	501~1000	1,015 (4.4)	0 (0.0)	0 (0.0)	523 (4.8)	0 (0.0)	0 (0.0)
	1001 이상	1,937 (8.3)	0 (0.0)	0 (0.0)	1,420 (13.0)	0 (0.0)	0 (0.0)
	계	23,304 (100.0)	0 (0.0)	0 (0.0)	10,923 (100.0)	7,153 (100.0)	5,228 (100.0)
48세	0	0 (0.0)	0 (0.0)	0 (0.0)	0 (0.0)	7,965 (100.0)	5,841 (100.0)
	1~5	3,187 (12.5)	0 (0.0)	0 (0.0)	703 (6.0)	0 (0.0)	0 (0.0)
	6~10	2,059 (8.1)	0 (0.0)	0 (0.0)	1,249 (10.7)	0 (0.0)	0 (0.0)
	11~50	8,610 (33.8)	0 (0.0)	0 (0.0)	3,930 (33.7)	0 (0.0)	0 (0.0)
	51~100	3,002 (11.8)	0 (0.0)	0 (0.0)	1,418 (12.2)	0 (0.0)	0 (0.0)
	101~500	5,324 (20.9)	0 (0.0)	0 (0.0)	2,294 (19.7)	0 (0.0)	0 (0.0)
	501~1000	1,136 (4.5)	0 (0.0)	0 (0.0)	603 (5.2)	0 (0.0)	0 (0.0)
	1001 이상	2,138 (8.4)	0 (0.0)	0 (0.0)	1,453 (12.5)	0 (0.0)	0 (0.0)
	계	25,456 (100.0)	0 (0.0)	0 (0.0)	11,650 (100.0)	7,965 (100.0)	5,841 (100.0)

〈표 3-14〉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 (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9세	0	0 (0.0)	0 (0.0)	0 (0.0)	0 (0.0)	5,832 (100.0)	4,216 (100.0)
	1~5	2,355 (12.7)	0 (0.0)	0 (0.0)	490 (5.8)	0 (0.0)	0 (0.0)
	6~10	1,427 (7.7)	0 (0.0)	0 (0.0)	907 (10.7)	0 (0.0)	0 (0.0)
	11~50	6,353 (34.2)	0 (0.0)	0 (0.0)	2,811 (33.1)	0 (0.0)	0 (0.0)
	51~100	2,215 (11.9)	0 (0.0)	0 (0.0)	1,077 (12.7)	0 (0.0)	0 (0.0)
	101~500	3,870 (20.9)	0 (0.0)	0 (0.0)	1,668 (19.6)	0 (0.0)	0 (0.0)
	501~1000	759 (4.1)	0 (0.0)	0 (0.0)	395 (4.6)	0 (0.0)	0 (0.0)
	1001 이상	1,574 (8.5)	0 (0.0)	0 (0.0)	1,157 (13.6)	0 (0.0)	0 (0.0)
	계	18,553 (100.0)	0 (0.0)	0 (0.0)	8,505 (100.0)	5,832 (100.0)	4,216 (100.0)
50세	0	0 (0.0)	0 (0.0)	0 (0.0)	0 (0.0)	6,503 (100.0)	4,505 (100.0)
	1~5	2,538 (12.5)	0 (0.0)	0 (0.0)	515 (5.6)	0 (0.0)	0 (0.0)
	6~10	1,614 (8.0)	0 (0.0)	0 (0.0)	997 (10.8)	0 (0.0)	0 (0.0)
	11~50	6,649 (32.9)	0 (0.0)	0 (0.0)	3,058 (33.1)	0 (0.0)	0 (0.0)
	51~100	2,448 (12.1)	0 (0.0)	0 (0.0)	1,198 (13.0)	0 (0.0)	0 (0.0)
	101~500	4,307 (21.3)	0 (0.0)	0 (0.0)	1,871 (20.3)	0 (0.0)	0 (0.0)
	501~1000	937 (4.6)	0 (0.0)	0 (0.0)	439 (4.8)	0 (0.0)	0 (0.0)
	1001 이상	1,743 (8.6)	0 (0.0)	0 (0.0)	1,149 (12.5)	0 (0.0)	0 (0.0)
	계	20,236 (100.0)	0 (0.0)	0 (0.0)	9,228 (100.0)	6,503 (100.0)	4,505 (100.0)

2. 45~55세('98년), 47~57세(2000년)

<표 3-15> 1998년 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전체)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5세	0	147 (0.5)	0 (0.0)	0 (0.0)	1 (0.0)	10,818 (100.0)	7,202 (100.0)
	1~5	6,815 (22.7)	0 (0.0)	0 (0.0)	956 (8.0)	0 (0.0)	0 (0.0)
	6~10	1,914 (6.4)	0 (0.0)	0 (0.0)	1,497 (12.5)	0 (0.0)	0 (0.0)
	11~50	7,245 (24.1)	0 (0.0)	0 (0.0)	3,914 (32.6)	0 (0.0)	0 (0.0)
	51~100	2,940 (9.8)	0 (0.0)	0 (0.0)	1,439 (12.0)	0 (0.0)	0 (0.0)
	101~500	5,677 (18.9)	0 (0.0)	0 (0.0)	2,435 (20.3)	0 (0.0)	0 (0.0)
	501~1000	1,568 (5.2)	0 (0.0)	0 (0.0)	517 (4.3)	0 (0.0)	0 (0.0)
	1001 이상	3,720 (12.4)	0 (0.0)	0 (0.0)	1,247 (10.4)	0 (0.0)	0 (0.0)
계	30,026 (100.0)	0 (0.0)	0 (0.0)	12,006 (100.0)	10,818 (100.0)	7,202 (100.0)	
46세	0	0 (0.0)	0 (0.0)	0 (0.0)	16 (0.1)	12,007 (100.0)	8,213 (100.0)
	1~5	7,335 (21.9)	0 (0.0)	0 (0.0)	1,022 (7.7)	0 (0.0)	0 (0.0)
	6~10	2,052 (6.1)	0 (0.0)	0 (0.0)	1,566 (11.8)	0 (0.0)	0 (0.0)
	11~50	8,087 (24.2)	0 (0.0)	0 (0.0)	4,356 (32.9)	0 (0.0)	0 (0.0)
	51~100	3,321 (9.9)	0 (0.0)	0 (0.0)	1,672 (12.6)	0 (0.0)	0 (0.0)
	101~500	6,460 (19.3)	0 (0.0)	0 (0.0)	2,671 (20.2)	0 (0.0)	0 (0.0)
	501~1000	1,873 (5.6)	0 (0.0)	0 (0.0)	581 (4.4)	0 (0.0)	0 (0.0)
	1001 이상	4,315 (12.9)	0 (0.0)	0 (0.0)	1,339 (10.1)	0 (0.0)	0 (0.0)
계	33,443 (100.0)	0 (0.0)	0 (0.0)	13,223 (100.0)	12,007 (100.0)	8,213 (100.0)	
47세	0	0 (0.0)	0 (0.0)	0 (0.0)	4 (0.0)	8,775 (100.0)	6,011 (100.0)
	1~5	5,266 (21.5)	0 (0.0)	0 (0.0)	709 (7.3)	0 (0.0)	0 (0.0)
	6~10	1,500 (6.1)	0 (0.0)	0 (0.0)	1,137 (11.7)	0 (0.0)	0 (0.0)
	11~50	5,927 (24.2)	0 (0.0)	0 (0.0)	3,253 (33.4)	0 (0.0)	0 (0.0)
	51~100	2,479 (10.1)	0 (0.0)	0 (0.0)	1,284 (13.2)	0 (0.0)	0 (0.0)
	101~500	4,772 (19.5)	0 (0.0)	0 (0.0)	1,981 (20.3)	0 (0.0)	0 (0.0)
	501~1000	1,339 (5.5)	0 (0.0)	0 (0.0)	473 (4.9)	0 (0.0)	0 (0.0)
	1001 이상	3,242 (13.2)	0 (0.0)	0 (0.0)	898 (9.2)	0 (0.0)	0 (0.0)
계	24,525 (100.0)	0 (0.0)	0 (0.0)	9,739 (100.0)	8,775 (100.0)	6,011 (100.0)	
48세	0	0 (0.0)	0 (0.0)	0 (0.0)	3 (0.0)	9,662 (100.0)	6,402 (100.0)
	1~5	5,352 (20.2)	0 (0.0)	0 (0.0)	790 (7.6)	0 (0.0)	0 (0.0)
	6~10	1,518 (5.7)	0 (0.0)	0 (0.0)	1,214 (11.6)	0 (0.0)	0 (0.0)
	11~50	6,488 (24.5)	0 (0.0)	0 (0.0)	3,489 (33.4)	0 (0.0)	0 (0.0)
	51~100	2,672 (10.1)	0 (0.0)	0 (0.0)	1,345 (12.9)	0 (0.0)	0 (0.0)
	101~500	5,329 (20.1)	0 (0.0)	0 (0.0)	2,142 (20.5)	0 (0.0)	0 (0.0)
	501~1000	1,461 (5.5)	0 (0.0)	0 (0.0)	497 (4.8)	0 (0.0)	0 (0.0)
	1001 이상	3,692 (13.9)	0 (0.0)	0 (0.0)	968 (9.3)	0 (0.0)	0 (0.0)
계	26,512 (100.0)	0 (0.0)	0 (0.0)	10,448 (100.0)	9,662 (100.0)	6,402 (100.0)	

〈표 3-15〉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9세	0	0 (0.0)	0 (0.0)	0 (0.0)	4 (0.0)	10,031 (100.0)	6,338 (100.0)
	1~5	5,321 (20.0)	0 (0.0)	0 (0.0)	757 (7.4)	0 (0.0)	0 (0.0)
	6~10	1,553 (5.8)	0 (0.0)	0 (0.0)	1,292 (12.6)	0 (0.0)	0 (0.0)
	11~50	6,497 (24.4)	0 (0.0)	0 (0.0)	3,398 (33.2)	0 (0.0)	0 (0.0)
	51~100	2,570 (9.7)	0 (0.0)	0 (0.0)	1,299 (12.7)	0 (0.0)	0 (0.0)
	101~500	5,338 (20.1)	0 (0.0)	0 (0.0)	2,077 (20.3)	0 (0.0)	0 (0.0)
	501~1000	1,590 (6.0)	0 (0.0)	0 (0.0)	485 (4.7)	0 (0.0)	0 (0.0)
	1001 이상	3,729 (14.0)	0 (0.0)	0 (0.0)	917 (9.0)	0 (0.0)	0 (0.0)
계	26,598 (100.0)	0 (0.0)	0 (0.0)	10,229 (100.0)	10,031 (100.0)	6,338 (100.0)	
50세	0	0 (0.0)	0 (0.0)	0 (0.0)	1 (0.0)	10,317 (100.0)	6,646 (100.0)
	1~5	5,300 (19.7)	0 (0.0)	0 (0.0)	705 (7.1)	0 (0.0)	0 (0.0)
	6~10	1,622 (6.0)	0 (0.0)	0 (0.0)	1,229 (12.3)	0 (0.0)	0 (0.0)
	11~50	6,598 (24.5)	0 (0.0)	0 (0.0)	3,572 (35.7)	0 (0.0)	0 (0.0)
	51~100	2,676 (9.9)	0 (0.0)	0 (0.0)	1,242 (12.4)	0 (0.0)	0 (0.0)
	101~500	5,394 (20.0)	0 (0.0)	0 (0.0)	1,971 (19.7)	0 (0.0)	0 (0.0)
	501~1000	1,536 (5.7)	0 (0.0)	0 (0.0)	476 (4.8)	0 (0.0)	0 (0.0)
	1001 이상	3,827 (14.2)	0 (0.0)	0 (0.0)	797 (8.0)	0 (0.0)	0 (0.0)
계	26,956 (100.0)	0 (0.0)	0 (0.0)	9,993 (100.0)	10,317 (100.0)	6,646 (100.0)	
51세	0	0 (0.0)	0 (0.0)	0 (0.0)	5 (0.1)	10,093 (100.0)	6,963 (100.0)
	1~5	5,272 (19.6)	0 (0.0)	0 (0.0)	761 (7.8)	0 (0.0)	0 (0.0)
	6~10	1,633 (6.1)	0 (0.0)	0 (0.0)	1,172 (12.0)	0 (0.0)	0 (0.0)
	11~50	6,531 (24.3)	0 (0.0)	0 (0.0)	3,635 (37.1)	0 (0.0)	0 (0.0)
	51~100	2,661 (9.9)	0 (0.0)	0 (0.0)	1,253 (12.8)	0 (0.0)	0 (0.0)
	101~500	5,313 (19.8)	0 (0.0)	0 (0.0)	1,863 (19.0)	0 (0.0)	0 (0.0)
	501~1000	1,556 (5.8)	0 (0.0)	0 (0.0)	421 (4.3)	0 (0.0)	0 (0.0)
	1001 이상	3,878 (14.4)	0 (0.0)	0 (0.0)	678 (6.9)	0 (0.0)	0 (0.0)
계	26,844 (100.0)	0 (0.0)	0 (0.0)	9,788 (100.0)	10,093 (100.0)	6,963 (100.0)	
52세	0	0 (0.0)	0 (0.0)	0 (0.0)	2 (0.0)	8,316 (100.0)	6,076 (100.0)
	1~5	4,144 (18.8)	0 (0.0)	0 (0.0)	636 (8.3)	0 (0.0)	0 (0.0)
	6~10	1,269 (5.8)	0 (0.0)	0 (0.0)	1,007 (13.2)	0 (0.0)	0 (0.0)
	11~50	5,456 (24.7)	0 (0.0)	0 (0.0)	2,774 (36.2)	0 (0.0)	0 (0.0)
	51~100	2,261 (10.3)	0 (0.0)	0 (0.0)	905 (11.8)	0 (0.0)	0 (0.0)
	101~500	4,403 (20.0)	0 (0.0)	0 (0.0)	1,527 (19.9)	0 (0.0)	0 (0.0)
	501~1000	1,314 (6.0)	0 (0.0)	0 (0.0)	312 (4.1)	0 (0.0)	0 (0.0)
	1001 이상	3,202 (14.5)	0 (0.0)	0 (0.0)	494 (6.5)	0 (0.0)	0 (0.0)
계	22,049 (100.0)	0 (0.0)	0 (0.0)	7,657 (100.0)	8,316 (100.0)	6,076 (100.0)	

〈표 3-15〉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53세	0	0 (0.0)	0 (0.0)	0 (0.0)	4 (0.1)	7,539 (100.0)	5,872 (100.0)
	1~5	3,583 (17.8)	0 (0.0)	0 (0.0)	549 (8.2)	0 (0.0)	0 (0.0)
	6~10	1,144 (5.7)	0 (0.0)	0 (0.0)	931 (13.9)	0 (0.0)	0 (0.0)
	11~50	5,041 (25.0)	0 (0.0)	0 (0.0)	2,508 (37.3)	0 (0.0)	0 (0.0)
	51~100	1,944 (9.7)	0 (0.0)	0 (0.0)	823 (12.3)	0 (0.0)	0 (0.0)
	101~500	4,085 (20.3)	0 (0.0)	0 (0.0)	1,302 (19.4)	0 (0.0)	0 (0.0)
	501~1000	1,211 (6.0)	0 (0.0)	0 (0.0)	256 (3.8)	0 (0.0)	0 (0.0)
	1001 이상	3,121 (15.5)	0 (0.0)	0 (0.0)	345 (5.1)	0 (0.0)	0 (0.0)
계	20,129 (100.0)	0 (0.0)	0 (0.0)	6,718 (100.0)	7,539 (100.0)	5,872 (100.0)	
54세	0	0 (0.0)	0 (0.0)	0 (0.0)	6 (0.1)	7,664 (100.0)	7,519 (100.0)
	1~5	3,750 (17.1)	0 (0.0)	0 (0.0)	601 (8.8)	0 (0.0)	0 (0.0)
	6~10	1,251 (5.7)	0 (0.0)	0 (0.0)	943 (13.9)	0 (0.0)	0 (0.0)
	11~50	5,573 (25.3)	0 (0.0)	0 (0.0)	2,585 (38.0)	0 (0.0)	0 (0.0)
	51~100	2,214 (10.1)	0 (0.0)	0 (0.0)	828 (12.2)	0 (0.0)	0 (0.0)
	101~500	4,498 (20.5)	0 (0.0)	0 (0.0)	1,265 (18.6)	0 (0.0)	0 (0.0)
	501~1000	1,418 (6.4)	0 (0.0)	0 (0.0)	249 (3.7)	0 (0.0)	0 (0.0)
	1001 이상	3,285 (14.9)	0 (0.0)	0 (0.0)	329 (4.8)	0 (0.0)	0 (0.0)
계	21,989 (100.0)	0 (0.0)	0 (0.0)	6,806 (100.0)	7,664 (100.0)	7,519 (100.0)	
55세	0	0 (0.0)	0 (0.0)	0 (0.0)	1 (0.0)	3,762 (100.0)	17,199 (100.0)
	1~5	3,618 (15.4)	0 (0.0)	0 (0.0)	234 (9.4)	0 (0.0)	0 (0.0)
	6~10	1,349 (5.8)	0 (0.0)	0 (0.0)	347 (14.0)	0 (0.0)	0 (0.0)
	11~50	5,736 (24.5)	0 (0.0)	0 (0.0)	920 (37.1)	0 (0.0)	0 (0.0)
	51~100	2,555 (10.9)	0 (0.0)	0 (0.0)	307 (12.4)	0 (0.0)	0 (0.0)
	101~500	4,931 (21.0)	0 (0.0)	0 (0.0)	487 (19.6)	0 (0.0)	0 (0.0)
	501~1000	1,486 (6.3)	0 (0.0)	0 (0.0)	98 (4.0)	0 (0.0)	0 (0.0)
	1001 이상	3,765 (16.1)	0 (0.0)	0 (0.0)	85 (3.4)	0 (0.0)	0 (0.0)
계	23,440 (100.0)	0 (0.0)	0 (0.0)	2,479 (100.0)	3,762 (100.0)	17,199 (100.0)	

〈표 3-16〉 2000년 퇴사자들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전체)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7세	0	0 (0.0)	0 (0.0)	0 (0.0)	3 (0.0)	6,928 (100.0)	5,067 (100.0)
	1~5	2,940 (13.1)	0 (0.0)	0 (0.0)	725 (6.9)	0 (0.0)	0 (0.0)
	6~10	1,800 (8.0)	0 (0.0)	0 (0.0)	1,176 (11.2)	0 (0.0)	0 (0.0)
	11~50	7,623 (33.9)	0 (0.0)	0 (0.0)	3,435 (32.7)	0 (0.0)	0 (0.0)
	51~100	2,582 (11.5)	0 (0.0)	0 (0.0)	1,246 (11.9)	0 (0.0)	0 (0.0)
	101~500	4,683 (20.8)	0 (0.0)	0 (0.0)	2,007 (19.1)	0 (0.0)	0 (0.0)
	501~1000	984 (4.4)	0 (0.0)	0 (0.0)	512 (4.9)	0 (0.0)	0 (0.0)
	1001 이상	1,885 (8.4)	0 (0.0)	0 (0.0)	1,398 (13.3)	0 (0.0)	0 (0.0)
계	22,497 (100.0)	0 (0.0)	0 (0.0)	10,502 (100.0)	6,928 (100.0)	5,067 (100.0)	
48세	0	0 (0.0)	0 (0.0)	0 (0.0)	6 (0.1)	7,736 (100.0)	5,682 (100.0)
	1~5	3,130 (12.7)	0 (0.0)	0 (0.0)	692 (6.2)	0 (0.0)	0 (0.0)
	6~10	1,999 (8.1)	0 (0.0)	0 (0.0)	1,207 (10.7)	0 (0.0)	0 (0.0)
	11~50	8,278 (33.6)	0 (0.0)	0 (0.0)	3,745 (33.3)	0 (0.0)	0 (0.0)
	51~100	2,860 (11.6)	0 (0.0)	0 (0.0)	1,365 (12.1)	0 (0.0)	0 (0.0)
	101~500	5,175 (21.0)	0 (0.0)	0 (0.0)	2,213 (19.7)	0 (0.0)	0 (0.0)
	501~1000	1,113 (4.5)	0 (0.0)	0 (0.0)	585 (5.2)	0 (0.0)	0 (0.0)
	1001 이상	2,104 (8.5)	0 (0.0)	0 (0.0)	1,428 (12.7)	0 (0.0)	0 (0.0)
계	24,659 (100.0)	0 (0.0)	0 (0.0)	11,241 (100.0)	7,736 (100.0)	5,682 (100.0)	
49세	0	0 (0.0)	0 (0.0)	0 (0.0)	2 (0.0)	5,655 (100.0)	4,081 (100.0)
	1~5	2,303 (12.8)	0 (0.0)	0 (0.0)	477 (5.8)	0 (0.0)	0 (0.0)
	6~10	1,371 (7.6)	0 (0.0)	0 (0.0)	883 (10.7)	0 (0.0)	0 (0.0)
	11~50	6,125 (34.1)	0 (0.0)	0 (0.0)	2,690 (32.7)	0 (0.0)	0 (0.0)
	51~100	2,099 (11.7)	0 (0.0)	0 (0.0)	1,026 (12.5)	0 (0.0)	0 (0.0)
	101~500	3,771 (21.0)	0 (0.0)	0 (0.0)	1,617 (19.7)	0 (0.0)	0 (0.0)
	501~1000	745 (4.1)	0 (0.0)	0 (0.0)	387 (4.7)	0 (0.0)	0 (0.0)
	1001 이상	1,542 (8.6)	0 (0.0)	0 (0.0)	1,138 (13.8)	0 (0.0)	0 (0.0)
계	17,956 (100.0)	0 (0.0)	0 (0.0)	8,220 (100.0)	5,655 (100.0)	4,081 (100.0)	
50세	0	0 (0.0)	0 (0.0)	0 (0.0)	2 (0.0)	6,300 (100.0)	4,387 (100.0)
	1~5	2,475 (12.6)	0 (0.0)	0 (0.0)	507 (5.7)	0 (0.0)	0 (0.0)
	6~10	1,542 (7.9)	0 (0.0)	0 (0.0)	952 (10.7)	0 (0.0)	0 (0.0)
	11~50	6,396 (32.6)	0 (0.0)	0 (0.0)	2,938 (33.0)	0 (0.0)	0 (0.0)
	51~100	2,331 (11.9)	0 (0.0)	0 (0.0)	1,133 (12.7)	0 (0.0)	0 (0.0)
	101~500	4,207 (21.5)	0 (0.0)	0 (0.0)	1,821 (20.4)	0 (0.0)	0 (0.0)
	501~1000	914 (4.7)	0 (0.0)	0 (0.0)	427 (4.8)	0 (0.0)	0 (0.0)
	1001 이상	1,735 (8.9)	0 (0.0)	0 (0.0)	1,133 (12.7)	0 (0.0)	0 (0.0)
계	19,600 (100.0)	0 (0.0)	0 (0.0)	8,913 (100.0)	6,300 (100.0)	4,387 (100.0)	

<표 3-16>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51세	0	0 (0.0)	0 (0.0)	0 (0.0)	3 (0.0)	6,314 (100.0)	4,138 (100.0)
	1~5	2,271 (11.8)	0 (0.0)	0 (0.0)	544 (6.2)	0 (0.0)	0 (0.0)
	6~10	1,494 (7.8)	0 (0.0)	0 (0.0)	949 (10.8)	0 (0.0)	0 (0.0)
	11~50	6,436 (33.4)	0 (0.0)	0 (0.0)	2,952 (33.5)	0 (0.0)	0 (0.0)
	51~100	2,317 (12.0)	0 (0.0)	0 (0.0)	1,083 (12.3)	0 (0.0)	0 (0.0)
	101~500	4,144 (21.5)	0 (0.0)	0 (0.0)	1,746 (19.8)	0 (0.0)	0 (0.0)
	501~1000	925 (4.8)	0 (0.0)	0 (0.0)	437 (5.0)	0 (0.0)	0 (0.0)
	1001 이상	1,668 (8.7)	0 (0.0)	0 (0.0)	1,089 (12.4)	0 (0.0)	0 (0.0)
계	19,255 (100.0)	0 (0.0)	0 (0.0)	8,803 (100.0)	6,314 (100.0)	4,138 (100.0)	
52세	0	0 (0.0)	0 (0.0)	0 (0.0)	2 (0.0)	6,323 (100.0)	4,282 (100.0)
	1~5	2,338 (12.1)	0 (0.0)	0 (0.0)	534 (6.2)	0 (0.0)	0 (0.0)
	6~10	1,506 (7.8)	0 (0.0)	0 (0.0)	959 (11.1)	0 (0.0)	0 (0.0)
	11~50	6,356 (33.0)	0 (0.0)	0 (0.0)	2,951 (34.1)	0 (0.0)	0 (0.0)
	51~100	2,223 (11.5)	0 (0.0)	0 (0.0)	1,048 (12.1)	0 (0.0)	0 (0.0)
	101~500	4,157 (21.6)	0 (0.0)	0 (0.0)	1,662 (19.2)	0 (0.0)	0 (0.0)
	501~1000	933 (4.8)	0 (0.0)	0 (0.0)	417 (4.8)	0 (0.0)	0 (0.0)
	1001 이상	1,755 (9.1)	0 (0.0)	0 (0.0)	1,090 (12.6)	0 (0.0)	0 (0.0)
계	19,268 (100.0)	0 (0.0)	0 (0.0)	8,663 (100.0)	6,323 (100.0)	4,282 (100.0)	
53세	0	0 (0.0)	0 (0.0)	0 (0.0)	0 (0.0)	6,191 (100.0)	4,686 (100.0)
	1~5	2,230 (11.6)	0 (0.0)	0 (0.0)	550 (6.6)	0 (0.0)	0 (0.0)
	6~10	1,577 (8.2)	0 (0.0)	0 (0.0)	979 (11.7)	0 (0.0)	0 (0.0)
	11~50	6,457 (33.5)	0 (0.0)	0 (0.0)	2,928 (34.9)	0 (0.0)	0 (0.0)
	51~100	2,238 (11.6)	0 (0.0)	0 (0.0)	1,030 (12.3)	0 (0.0)	0 (0.0)
	101~500	4,117 (21.4)	0 (0.0)	0 (0.0)	1,597 (19.0)	0 (0.0)	0 (0.0)
	501~1000	908 (4.7)	0 (0.0)	0 (0.0)	413 (4.9)	0 (0.0)	0 (0.0)
	1001 이상	1,739 (9.0)	0 (0.0)	0 (0.0)	892 (10.6)	0 (0.0)	0 (0.0)
계	19,266 (100.0)	0 (0.0)	0 (0.0)	8,389 (100.0)	6,191 (100.0)	4,686 (100.0)	
54세	0	0 (0.0)	0 (0.0)	0 (0.0)	2 (0.0)	5,054 (100.0)	4,110 (100.0)
	1~5	1,793 (11.4)	0 (0.0)	0 (0.0)	396 (6.1)	0 (0.0)	0 (0.0)
	6~10	1,244 (7.9)	0 (0.0)	0 (0.0)	738 (11.4)	0 (0.0)	0 (0.0)
	11~50	5,150 (32.9)	0 (0.0)	0 (0.0)	2,415 (37.2)	0 (0.0)	0 (0.0)
	51~100	1,841 (11.8)	0 (0.0)	0 (0.0)	799 (12.3)	0 (0.0)	0 (0.0)
	101~500	3,384 (21.6)	0 (0.0)	0 (0.0)	1,277 (19.7)	0 (0.0)	0 (0.0)
	501~1000	765 (4.9)	0 (0.0)	0 (0.0)	312 (4.8)	0 (0.0)	0 (0.0)
	1001 이상	1,483 (9.5)	0 (0.0)	0 (0.0)	557 (8.6)	0 (0.0)	0 (0.0)
계	15,660 (100.0)	0 (0.0)	0 (0.0)	6,496 (100.0)	5,054 (100.0)	4,110 (100.0)	

〈표 3-17〉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55세	0	0 (0.0)	0 (0.0)	0 (0.0)	2 (0.0)	4,924 (100.0)	4,624 (100.0)
	1~5	1,576 (10.1)	0 (0.0)	0 (0.0)	432 (7.1)	0 (0.0)	0 (0.0)
	6~10	1,060 (6.8)	0 (0.0)	0 (0.0)	779 (12.8)	0 (0.0)	0 (0.0)
	11~50	4,899 (31.4)	0 (0.0)	0 (0.0)	2,247 (37.1)	0 (0.0)	0 (0.0)
	51~100	1,926 (12.3)	0 (0.0)	0 (0.0)	737 (12.2)	0 (0.0)	0 (0.0)
	101~500	3,583 (23.0)	0 (0.0)	0 (0.0)	1,159 (19.1)	0 (0.0)	0 (0.0)
	501~1000	917 (5.9)	0 (0.0)	0 (0.0)	284 (4.7)	0 (0.0)	0 (0.0)
	1001 이상	1,651 (10.6)	0 (0.0)	0 (0.0)	424 (7.0)	0 (0.0)	0 (0.0)
계	15,612 (100.0)	0 (0.0)	0 (0.0)	6,064 (100.0)	4,924 (100.0)	4,624 (100.0)	
56세	0	0 (0.0)	0 (0.0)	0 (0.0)	2 (0.0)	5,054 (100.0)	4,383 (100.0)
	1~5	1,502 (9.6)	0 (0.0)	0 (0.0)	412 (6.7)	0 (0.0)	0 (0.0)
	6~10	1,159 (7.4)	0 (0.0)	0 (0.0)	782 (12.7)	0 (0.0)	0 (0.0)
	11~50	5,123 (32.8)	0 (0.0)	0 (0.0)	2,363 (38.3)	0 (0.0)	0 (0.0)
	51~100	1,874 (12.0)	0 (0.0)	0 (0.0)	807 (13.1)	0 (0.0)	0 (0.0)
	101~500	3,448 (22.1)	0 (0.0)	0 (0.0)	1,166 (18.9)	0 (0.0)	0 (0.0)
	501~1000	809 (5.2)	0 (0.0)	0 (0.0)	260 (4.2)	0 (0.0)	0 (0.0)
	1001 이상	1,684 (10.8)	0 (0.0)	0 (0.0)	370 (6.0)	0 (0.0)	0 (0.0)
계	15,599 (100.0)	0 (0.0)	0 (0.0)	6,162 (100.0)	5,054 (100.0)	4,383 (100.0)	
57세	0	0 (0.0)	0 (0.0)	0 (0.0)	0 (0.0)	2,916 (100.0)	10,249 (100.0)
	1~5	1,460 (9.5)	0 (0.0)	0 (0.0)	160 (7.2)	0 (0.0)	0 (0.0)
	6~10	1,162 (7.6)	0 (0.0)	0 (0.0)	269 (12.1)	0 (0.0)	0 (0.0)
	11~50	5,197 (33.8)	0 (0.0)	0 (0.0)	869 (39.1)	0 (0.0)	0 (0.0)
	51~100	1,928 (12.5)	0 (0.0)	0 (0.0)	286 (12.9)	0 (0.0)	0 (0.0)
	101~500	3,414 (22.2)	0 (0.0)	0 (0.0)	417 (18.8)	0 (0.0)	0 (0.0)
	501~1000	759 (4.9)	0 (0.0)	0 (0.0)	97 (4.4)	0 (0.0)	0 (0.0)
	1001 이상	1,466 (9.5)	0 (0.0)	0 (0.0)	123 (5.5)	0 (0.0)	0 (0.0)
계	15,386 (100.0)	0 (0.0)	0 (0.0)	2,221 (100.0)	2,916 (100.0)	10,249 (100.0)	

제 4 장 노동시장변화와 국민연금재정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된 45~55세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자격변동이 국민연금재정과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45세에서 55세를 사업장에서 조기퇴직연령군으로 정의하는 경우, 이들이 퇴직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전직, 자영업으로 인한 지역가입으로의 전환 또는 납부예외 혹은 미가입자로의 전환 등으로 신고소득의 변동과 국민연금제도상에서의 가입기간등이 변화하게 된다.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평균신고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대한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지만 미가입 또는 보험료미납, 납부예외 등으로 남는 경우 사업장재직상태에 비해 가입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4장에서는 우선, 1998년 45~55세 사업장가입자중 사업장가입은 유지하되 등급이 하락한 사람의 1998년 등급유지에 따른 국민연금재정과 소득대체율의 영향, 등급하락으로 인한 국민연금재정 및 소득대체율에의 영향을 분석하며, 또한 사업장퇴사자중 2003년 지역가입자로 확인되었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1998년 퇴사당시의 사업장에서 퇴사당시의 소득수준으로 계속 종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와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비교 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현재 보험료미납자 또는 미가입자들이 1998년 당시 사업장에서 그 당시 소득수준으로 계속 가입되는 상황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재정에의 효과와 개인의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제 1 절 조기퇴직자의 소득등급분포 및 가입기간분포

1. 소득등급분포

1998년에 퇴사당시 소득등급의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2절의 재정수지분석은 1998년 당시의 소득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아래 <표 4-1>은 1998년 사업장가입자에서 자격변동이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소득등급을 자격변동내역 별로 살펴보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미납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사업장가입당시 소득등급이 사업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자격변동별 등급구간 분포

등급구간	자격변동내역							
	1998(전체)		2003(사업장)		2003(지역)		2003(미납자)	
	45세	55세	45세	55세	45세	55세	45세	55세
1 ~ 10	579 (1.9%)	309 (1.3%)	35 (0.3%)	1 (0%)	3,438 (32.7%)	969 (26.1%)	214 (3%)	214 (1.2%)
11 ~ 20	8,934 (29.7%)	8,617 (36.7%)	2,400 (20%)	1,165 (47%)	1,367 (13.0%)	845 (22.7%)	3,194 (44.3%)	6,037 (35.1%)
21 ~ 30	9,093 (30.2%)	6,836 (29.1%)	4,163 (34.6%)	873 (35.2%)	5,071 (48.3%)	1,594 (43%)	1,842 (25.5%)	4,901 (28.5%)
31 ~ 40	6,778 (22.5%)	4,040 (17.2%)	2,791 (23.2%)	239 (9.6%)	548 (5.2%)	182 (5%)	1,159 (16.1%)	3,106 (18%)
41 ~ 45	4,642 (15.4%)	3,638 (15.5%)	2,617 (21.8%)	239 (9.6%)	74 (0.7%)	121 (3.2%)	793 (11%)	2,941 (7.1%)
합계	30,026 (100%)	23,440 (100%)	12,006 (100%)	2,517 (100%)	10,498 (100%)	3,711 (100%)	7,202 (100%)	17,199 (100%)

1998년에 퇴사를 한 후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의 퇴직당시 소득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45세의 경우, 소득등급이 21~30등급에 속한 사람들의 비중(34.6%)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55세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 1

1~20등급에 속한 사람들의 비중(47%)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 45세로 이직을 하는 하는 사람들은 소득등급에 관계없이 고루 분포하는 반면, 55세에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31등급 이상에서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의 퇴직당시 소득등급을 살펴보면 45세와 55세 모두, 21~30등급에 속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48.3%와 43%로 가장 높았다. 2003년 현재 미납자인 사람들이 1998년에 속했던 소득등급을 보면 45세와 55세 모두 11~20등급에 속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아 44.3%, 35.1% 임을 알 수 있다.

〈표 4-2〉 1998년 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분포

(단위: 명)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19	14	11	15	11	13	18	6	12	7	11
2	2	5		1	2	3	2	1	3		2
3	3	2	1	1	2		4	4		1	
4	5	6	6	6	7	6	6	5		6	4
5	3	6	3	6	4	2	2	4	3	2	1
6	17	13	8	11	10	4	4	4	2	7	3
7	22	27	17	15	15	14	9	17	7	9	7
8	61	74	52	47	53	47	42	34	25	36	37
9	192	197	131	166	151	152	135	111	105	107	101
10	255	248	201	198	169	183	191	150	117	136	143
11	485	517	408	435	419	432	405	340	306	335	334
12	653	784	558	660	548	608	600	455	453	533	511
13	648	750	537	606	596	591	617	484	488	533	590
14	1007	1156	867	949	914	945	958	734	733	781	911
15	1005	1135	895	951	995	986	1039	879	844	921	991
16	1060	1306	946	1081	1088	1133	1187	969	937	1119	1150
17	988	1150	910	1000	995	1105	1079	912	891	987	1091
18	1175	1415	1084	1156	1199	1280	1263	1082	971	1114	1218
19	1002	1114	868	912	923	1021	1026	854	810	908	980
20	911	1031	783	840	878	933	876	775	725	805	841
21	961	1089	809	884	934	881	960	741	721	771	903
22	1107	1215	836	955	983	984	1032	845	725	813	895
23	709	827	635	680	694	706	685	602	503	589	647
24	811	905	730	739	803	771	759	654	527	623	657
25	905	1030	771	795	858	809	832	661	661	623	659
26	949	1052	757	788	807	842	796	659	519	576	673
27	846	950	712	729	699	717	748	575	505	541	622
28	1155	1122	818	847	822	855	824	667	550	622	697
29	833	879	622	653	644	653	673	501	482	463	558
30	817	866	633	692	651	635	580	503	416	542	525
31	838	875	623	650	651	588	595	504	416	456	467
32	749	785	541	498	547	526	542	414	358	407	447
33	961	947	682	742	721	676	682	564	471	552	561
34	617	652	473	462	440	472	442	373	321	341	390
35	602	611	409	452	432	456	445	370	317	353	390
36	637	690	473	463	451	446	448	349	329	345	370
37	569	609	416	436	430	440	418	331	287	331	317
38	676	693	451	525	478	501	527	386	348	370	394
39	579	665	434	437	413	447	411	332	345	320	373
40	550	641	419	416	457	488	476	347	318	378	331
41	604	669	425	494	510	458	463	403	361	356	355
42	517	572	391	425	419	406	398	337	258	311	288
43	564	575	434	471	433	437	375	349	309	337	301
44	413	456	368	340	349	344	307	245	228	246	227
45	2544	3118	2377	2883	2993	2960	2963	2517	2422	2376	2467

〈표 4-3〉 2003년 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분포

(단위: 명)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9	3	9	4	4	5	3		3	3	
2	1							1			
3		1	1							2	
4	1							3			
5	2			1	1		1				
6	2	2	1				1	2			
7	3	3	2	4	4	3			2	3	
8	1	11	4	7	7	4	4	3	1	1	
9	6	12	5	7	7	11	3	12	3	1	1
10	10	10	12	16	16	8	8	4	4	6	
11	18	22	17	11	11	21	20	6	12	17	7
12	32	44	29	38	38	39	28	21	19	26	13
13	41	42	49	52	52	48	48	41	39	50	15
14	206	261	217	223	223	255	246	190	192	226	91
15	207	263	191	228	228	243	277	228	232	247	97
16	301	356	304	342	342	344	386	346	306	343	157
17	312	356	291	339	339	380	428	360	363	403	172
18	438	546	425	550	550	595	617	510	535	593	233
19	426	519	410	482	482	531	564	483	492	552	203
20	419	448	391	419	419	527	513	447	440	477	177
21	476	576	481	511	511	522	542	464	437	388	160
22	551	669	474	552	552	526	531	400	387	364	144
23	344	380	307	353	353	366	341	250	205	225	89
24	402	436	380	391	391	384	378	336	280	255	97
25	434	471	365	416	416	428	421	322	266	262	82
26	404	493	373	405	405	371	399	273	246	244	70
27	372	394	282	283	283	313	315	215	170	152	64
28	496	522	400	340	340	368	371	273	209	230	67
29	348	408	269	285	285	257	234	214	141	180	47
30	336	373	255	324	324	270	239	193	151	131	53
31	355	339	288	265	265	265	241	190	133	136	44
32	351	295	222	253	253	186	194	125	130	98	27
33	498	483	349	356	356	309	278	234	135	153	34
34	271	289	222	189	189	187	168	103	99	80	15
35	265	275	161	190	190	162	140	111	84	93	22
36	248	260	181	174	174	144	153	96	70	69	17
37	188	212	141	158	158	122	116	88	70	56	15
38	240	272	188	169	169	164	122	109	88	76	35
39	196	204	133	122	122	109	80	62	48	56	21
40	179	176	131	127	127	109	98	56	48	40	9
41	201	219	150	157	157	104	113	85	61	62	22
42	137	135	96	97	97	76	65	40	34	28	13
43	176	176	95	118	118	80	76	51	32	42	10
44	140	136	72	90	90	68	66	32	36	25	10
45	1963	2131	1366	1400	1400	1089	960	678	515	411	146

주: 1) 연령은 1998년 기준임.

〈표 4-4〉 1998년대비 2003년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 연령·등급별 가입자 분포

(단위: 명)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9	3	9	4	4	5	3		3	3	
2	1							1			
3		1	1							2	
4	1							3			
5	2			1							
6	2	1	1		1		1	2			
7	3	3	2	4		3			2	3	
8	1	11	4	7	3	4	4	3	1	1	
9	6	12	5	6	7	9	3	11	3	1	1
10	7	9	9	14	8	7	6	4	3	5	
11	17	17	14	8	17	19	18	5	11	10	6
12	25	34	22	31	26	31	21	17	15	19	10
13	32	34	35	42	26	33	36	29	27	31	9
14	145	189	169	162	175	188	183	146	139	159	57
15	130	172	125	152	138	166	180	158	149	159	61
16	178	208	186	202	212	213	246	219	188	219	99
17	162	182	146	182	219	205	235	206	219	255	113
18	247	299	229	304	346	366	368	317	338	378	137
19	228	278	234	260	306	295	348	266	301	324	127
20	194	192	169	204	261	273	280	257	256	265	88
21	242	286	241	267	259	273	292	260	247	194	89
22	302	356	266	297	293	307	311	231	213	210	97
23	137	160	143	163	170	169	170	124	100	111	50
24	168	189	160	174	193	195	205	185	146	129	48
25	206	238	170	199	208	195	233	186	144	146	42
26	184	255	188	182	190	170	197	146	121	119	41
27	150	167	109	117	128	136	146	109	81	75	36
28	246	262	203	179	175	206	189	152	109	130	39
29	134	151	99	113	119	115	94	86	67	77	27
30	136	146	105	121	111	110	102	95	73	57	30
31	133	133	100	100	113	121	101	75	53	57	14
32	125	87	73	88	72	72	69	54	59	43	13
33	180	192	139	150	141	126	113	111	68	81	18
34	76	87	71	72	68	60	64	39	31	29	6
35	83	87	43	67	64	56	44	40	36	34	8
36	94	82	60	59	61	56	52	36	31	34	6
37	51	68	37	56	45	51	43	40	29	27	3
38	83	90	61	60	73	58	52	48	39	32	10
39	56	80	36	34	49	43	32	24	21	19	11
40	45	53	42	50	45	30	38	30	22	19	6
41	60	63	53	59	59	40	51	44	29	30	11
42	34	29	29	30	27	23	33	14	16	15	7
43	36	43	32	40	33	32	27	23	9	17	5
44	30	30	17	27	24	24	13	7	14	7	4
45	795	917	616	676	622	561	522	395	295	242	89

<표 4-5> 2003년 기준 지역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분포

(단위: 명)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3392	3750	2761	2907	2907	3064	2947	2467	2346	2231	901
2	3		2	4	4	1	2	1		3	1
3		2	1	1	1	1	2				
4	1	2		1	1	3	2			2	2
5		1					2			1	2
6		1	1	1	1	1	4	1		1	
7		1	4	1	1	3	4	3	3	5	1
8	2	9	5	8	8	4	7	5	10	1	2
9	4	49	45	36	36	35	28	30	21	25	17
10	36	46	43	69	69	79	72	81	67	84	43
11	55	102	55	65	65	83	89	79	52	63	38
12	71	26	15	15	15	29	32	22	26	25	19
13	23	30	17	25	25	26	21	21	15	18	19
14	24	236	170	177	177	221	233	165	149	175	121
15	177	99	81	80	80	105	81	83	71	79	51
16	81	150	98	118	118	127	110	109	78	99	69
17	134	322	234	256	256	324	322	274	216	265	137
18	270	314	201	266	266	262	271	205	182	203	121
19	272	299	256	233	233	257	217	211	175	174	117
20	260	529	360	431	431	438	446	326	306	287	153
21	502	355	239	236	236	229	226	195	149	169	79
22	311	1991	1550	1664	1664	1800	1803	1348	1266	1309	645
23	1848	1281	926	1094	1094	1181	1159	1004	891	894	482
24	1124	323	210	213	213	248	206	171	123	148	66
25	285	371	258	311	311	312	256	217	209	185	97
26	309	215	169	190	190	173	191	151	134	139	60
27	203	151	120	132	132	140	136	124	106	113	36
28	163	177	138	160	160	142	142	128	115	82	56
29	196	132	73	93	93	86	93	88	54	62	20
30	130	138	95	128	128	136	133	129	106	120	53
31	107	106	80	92	92	101	121	99	96	105	45
32	102	57	33	49	49	49	48	35	29	35	18
33	47	96	63	85	85	84	75	49	48	47	34
34	92	59	37	41	41	38	44	37	28	37	16
35	45	43	31	42	42	30	39	37	32	38	18
36	41	33	31	34	34	38	27	24	32	19	10
37	40	35	23	26	26	19	28	27	21	21	10
38	14	42	34	27	27	29	45	34	24	21	13
39	35	27	18	24	24	26	23	20	22	24	12
40	25	23	11	19	19	19	23	13	16	7	6
41	15	28	16	23	23	23	31	21	23	29	12
42	19	11	11	10	10	12	8	12	15	20	3
43	17	19	11	10	10	12	9	14	6	13	2
44	14	19	14	12	12	13	12	7	13	17	4
45	9	135	114	120	120	156	170	137	151	169	100

주: 1) 연령은 1998년 기준임.

〈표 4-6〉 2003년 기준 미가입자의 1998년 연령별 등급별 분포

(단위: 명)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5	4	8	3	3	6	10	4	4	4	8
2		1			1	1			1		2
3	2							3			
4	1			2	1	1		1		3	3
5		1	1	2	2		1	2	1		
6	5	1	2	5	3	1				1	2
7	6	6	5	3	3	2	2	4	1	4	3
8	19	23	16	15	14	16	11	16	7	12	22
9	75	68	54	70	60	54	58	36	37	33	69
10	101	87	80	78	71	59	71	52	38	42	105
11	174	194	142	156	159	142	133	104	102	99	226
12	271	342	210	240	218	232	233	157	164	197	356
13	257	286	222	245	217	228	223	198	168	204	381
14	385	450	330	381	346	351	324	273	263	275	629
15	394	445	331	363	351	345	376	277	249	298	695
16	388	540	334	404	374	372	396	301	276	390	813
17	354	434	341	353	327	380	361	282	299	328	783
18	387	464	379	367	403	391	377	330	309	353	851
19	324	362	270	295	286	313	309	272	244	291	690
20	260	303	235	224	234	264	237	267	207	235	613
21	234	287	214	232	208	232	279	187	190	223	646
22	264	297	201	241	249	252	264	235	201	256	622
23	152	204	151	172	167	178	170	161	138	151	470
24	185	202	154	154	191	173	166	162	143	177	482
25	188	206	160	144	168	195	181	172	166	172	483
26	177	197	162	153	147	162	161	169	113	163	480
27	147	188	138	138	109	146	162	129	130	153	434
28	211	209	161	155	155	159	173	141	131	176	496
29	138	155	122	136	128	151	155	106	109	149	404
30	146	144	110	112	125	114	129	112	110	170	384
31	159	180	97	112	105	110	104	112	91	138	356
32	122	117	98	83	93	94	84	92	88	131	322
33	164	143	116	92	130	110	127	140	111	167	424
34	101	108	83	68	64	81	97	92	81	111	293
35	97	114	73	70	63	67	89	87	93	128	303
36	122	121	78	49	82	74	94	70	81	139	287
37	94	101	52	71	65	80	94	92	71	125	250
38	122	115	82	108	81	78	121	85	90	130	298
39	92	139	79	78	65	87	88	79	101	135	290
40	86	104	73	83	87	91	97	90	97	165	283
41	98	104	61	82	95	76	109	103	120	152	278
42	74	87	70	70	73	83	95	91	86	147	236
43	106	101	74	75	79	68	86	90	89	156	251
44	71	74	60	55	52	68	70	60	68	106	186
45	444	505	382	463	484	559	646	640	804	1030	1990

주: 1) 연령은 1998년 기준임.

2. 가입기간분포

1998년에 퇴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과거가입기간이 있어야만 연금급여액의 추정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과거가입기간을 분석해 보았다.

특징중의 하나는 소득등급이 상승할수록 가입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1998년에 퇴사를 한 사람들 중 가입기간이 가장 긴 그룹은 2003년에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중 1998년 당시 소득등급이 41~45등급이었던 사람들이다.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그리고 소득등급이 높을수록 평균가입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가입기간은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36~144개월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120~124개월, 그리고 미납부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76~92개월로 가장 짧았다.

〈표 4-7〉 자격변동별 등급구간 분포

등급구간	자격변동내역							
	1998(전체)		2003(사업장)		2003(지역)		2003(미납자)	
	45세	55세	45세	55세	45세	55세	45세	55세
1 ~ 10	46	73	116	141	97	113	48	77
11 ~ 20	55	70	117	125	114	104	50	65
21 ~ 30	77	90	133	144	124	122	74	93
31 ~ 40	103	110	151	151	137	125	98	112
41 ~ 45	118	116	167	161	131	159	114	117
평균	79	91	136	144	120	124	76	92

〈표 4-8〉 1998년 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평균가입기간 분포
(단위: 월)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44.3	83.9	66.4	55.0	80.3	65.5	56.1	79.7	73.8	95.0	68.6
2	30.0	68.8		67.0	32.5	70.0	73.5	58.0	93.3		119.5
3	38.7	58.5	59.0	23.0	37.0		44.3	74.8		20.0	
4	67.8	65.5	73.3	90.7	51.4	79.8	90.2	79.4		69.0	33.5
5	49.0	79.7	78.0	32.3	85.5	96.5	68.5	59.3	84.3	56.0	95.0
6	39.9	71.6	62.1	66.5	36.3	71.5	86.5	68.0	47.0	58.4	97.0
7	50.2	61.6	65.9	50.1	55.9	62.7	76.7	49.7	54.6	71.7	69.9
8	45.4	43.3	43.8	50.6	54.9	72.4	53.3	50.7	72.0	54.5	58.6
9	53.6	49.9	56.8	54.6	58.5	62.8	50.1	58.0	52.2	53.0	63.5
10	47.3	48.6	52.5	51.4	54.5	52.4	57.5	53.3	57.4	57.3	54.6
11	43.8	50.9	46.4	51.3	51.4	54.6	56.3	54.4	54.8	53.6	55.3
12	46.6	47.8	50.1	51.7	54.9	50.9	53.1	54.3	53.5	57.7	56.0
13	48.8	51.7	51.8	54.4	55.7	54.7	59.8	60.5	56.4	60.5	58.6
14	52.1	52.2	53.5	55.7	54.4	56.2	55.9	59.4	59.8	59.9	57.2
15	54.7	52.3	56.7	57.8	58.2	58.3	58.9	57.6	60.5	61.8	59.9
16	55.9	53.6	60.0	58.9	59.2	60.9	60.0	58.2	60.8	57.8	63.1
17	62.0	64.1	65.9	66.8	66.2	67.0	65.9	68.9	64.4	66.1	67.1
18	62.4	63.1	65.6	66.9	66.1	64.6	66.5	63.9	65.2	66.9	67.0
19	65.9	68.1	67.7	68.7	69.0	70.3	68.3	69.9	70.8	72.0	72.1
20	65.1	71.4	70.7	72.9	75.3	73.6	74.8	78.6	74.5	74.6	77.2
21	68.9	69.1	71.1	75.8	75.4	75.6	76.7	74.7	78.1	78.4	81.1
22	67.5	69.4	72.2	72.4	72.8	73.7	74.1	75.8	77.9	76.3	81.2
23	78.2	79.1	78.0	81.1	81.6	80.3	83.5	80.4	81.2	84.1	87.0
24	73.2	75.0	78.9	78.2	81.0	80.9	82.8	82.0	86.6	85.6	88.3
25	76.1	73.9	75.4	80.8	80.1	82.5	82.0	82.7	85.1	85.7	90.1
26	77.7	78.6	79.4	82.6	81.1	82.2	85.2	83.0	83.5	89.4	88.8
27	81.9	83.5	85.6	87.4	90.3	85.9	88.2	90.4	89.8	92.0	95.2
28	76.9	80.0	82.3	81.9	80.7	83.6	84.7	82.8	86.0	87.7	92.2
29	87.8	87.9	89.9	94.2	91.5	91.3	91.2	92.4	96.2	96.7	99.7
30	91.8	90.5	91.7	92.5	93.0	94.4	93.3	96.8	98.0	96.9	100.8
31	90.1	93.5	91.6	93.5	93.8	93.3	94.6	96.2	98.6	97.0	104.0
32	96.8	97.0	100.5	102.0	101.9	101.6	102.0	101.1	103.9	104.0	108.4
33	94.5	92.9	96.9	93.3	96.9	95.1	97.7	96.0	94.2	99.9	103.5
34	103.8	106.6	104.8	104.3	104.9	104.4	105.3	106.1	107.2	112.1	107.7
35	106.3	108.8	108.6	107.2	106.9	107.8	108.1	106.7	110.0	111.1	112.7
36	107.3	107.5	110.0	106.3	108.0	108.7	107.9	109.8	108.9	110.7	113.2
37	111.0	109.0	109.4	108.2	115.5	112.7	111.7	111.9	113.1	113.0	114.2
38	106.0	108.6	108.5	107.6	108.1	110.5	109.6	107.7	108.4	110.2	110.7
39	113.7	112.9	113.3	113.0	113.4	112.4	113.8	113.7	114.9	116.1	115.6
40	112.9	115.4	116.5	116.8	115.1	115.7	115.7	114.1	115.3	117.0	117.6
41	114.3	113.7	116.1	111.4	113.8	111.2	112.8	112.1	113.4	113.3	110.1
42	120.0	119.3	120.2	117.7	118.0	118.7	117.1	119.4	118.4	117.3	118.4
43	118.4	119.5	119.7	121.7	119.1	119.0	119.6	115.8	120.3	117.8	118.3
44	119.8	119.3	120.1	120.9	120.2	118.9	118.7	117.3	119.8	118.4	119.4
45	119.2	119.1	119.2	120.0	120.2	120.1	118.9	118.4	119.0	118.4	119.7

〈표 4-9〉 2003년 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평균가입기간 분포
(단위: 월)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151.7	163.3	127.1	127.5	136.5	142.6	126.7		179.7	154.0	
2	188.0							110.0			
3	0.0	126.0	125.0							144.5	
4	57.0							181.3			
5	114.0			53.0			187.0				
6	73.5	111.5	104.0		136.0		118.0	147.5			
7	117.0	140.0	138.5	84.3		93.7			127.5	118.0	
8	99.0	117.1	121.0	132.0	161.7	95.5	118.3	93.3	99.0	102.0	
9	139.0	116.1	128.0	107.6	134.7	137.7	126.3	124.2	123.7	96.0	141.0
10	113.5	137.1	126.8	122.4	144.0	111.3	139.9	132.8	136.0	123.7	
11	132.1	128.0	122.6	116.0	114.3	143.4	112.2	131.0	149.4	121.5	139.3
12	117.8	132.6	119.6	122.6	106.5	134.0	129.4	122.9	127.4	122.3	124.6
13	114.5	128.9	120.3	124.6	121.1	130.0	120.6	121.2	107.8	123.3	114.0
14	111.6	114.8	114.0	119.1	117.8	123.4	119.8	117.4	120.6	123.9	121.5
15	115.8	110.3	115.0	115.6	119.8	119.7	120.4	118.5	119.5	124.3	121.4
16	110.3	111.7	119.7	117.1	121.4	119.6	120.6	127.6	125.9	124.0	118.4
17	115.0	113.7	114.5	122.2	121.9	121.3	124.7	120.8	127.8	124.2	127.1
18	118.4	121.5	120.7	122.3	124.6	126.7	126.9	124.2	126.9	128.3	124.1
19	117.2	121.0	127.9	125.7	125.7	128.5	128.5	129.4	128.5	132.5	132.4
20	122.2	122.0	126.1	125.4	132.6	130.9	132.3	133.6	135.3	132.8	130.0
21	126.0	124.4	127.3	130.7	133.1	132.1	131.0	133.2	137.1	133.7	140.2
22	128.1	129.2	131.3	132.1	134.4	136.4	135.9	138.2	136.2	137.3	134.2
23	124.8	129.9	134.9	135.8	135.4	136.8	136.6	134.7	136.6	135.7	146.0
24	133.9	132.2	132.0	137.5	137.3	137.0	139.7	138.8	141.7	137.5	147.4
25	129.6	133.1	133.9	137.5	138.1	137.2	141.9	141.7	143.2	144.9	137.6
26	136.3	139.4	142.1	136.6	142.9	138.7	143.2	140.7	146.9	144.1	147.1
27	138.7	138.7	138.9	140.5	141.2	142.4	144.8	143.6	146.4	145.9	148.7
28	136.0	139.3	141.2	143.6	142.3	144.1	142.0	145.4	143.6	150.0	145.3
29	145.3	139.9	145.4	147.2	145.8	146.6	147.4	147.3	147.1	147.5	152.9
30	139.6	140.8	145.3	147.3	146.4	145.8	150.0	150.1	152.3	149.9	147.5
31	142.5	144.8	145.6	143.5	148.0	147.2	145.1	146.5	146.9	143.1	140.8
32	145.1	149.4	145.2	152.6	150.4	150.3	149.9	151.1	150.9	158.5	150.3
33	144.6	146.4	146.7	148.9	147.3	149.4	146.6	152.8	148.8	147.8	155.6
34	148.3	153.9	150.7	159.2	154.7	153.4	155.2	150.6	150.2	153.0	156.5
35	152.7	155.5	155.2	154.8	156.8	152.0	152.0	153.3	158.0	155.7	150.1
36	154.8	152.5	156.7	152.5	155.1	153.6	157.4	149.4	154.6	153.7	163.7
37	153.3	153.5	159.9	155.9	159.9	156.6	157.3	157.6	158.5	152.1	148.1
38	154.8	150.3	154.3	152.8	157.0	154.0	154.9	152.2	155.9	148.2	152.6
39	158.3	159.4	160.0	160.0	159.3	165.9	158.9	162.0	162.3	161.2	155.2
40	161.0	166.2	165.3	168.8	160.1	161.3	156.9	152.3	156.0	162.1	145.4
41	159.6	158.3	165.5	161.4	158.5	158.2	158.4	155.7	157.0	152.6	155.5
42	164.2	165.4	166.8	173.1	165.6	165.3	169.3	161.7	161.3	153.3	157.9
43	169.3	164.7	170.3	162.7	169.4	165.3	168.7	160.5	162.3	158.0	149.2
44	169.2	169.7	166.1	171.0	170.3	166.8	162.6	157.9	157.7	161.7	179.9
45	175.0	175.8	175.3	174.9	173.7	173.9	172.3	169.5	167.2	166.6	169.7

주: 1) 연령은 1998년 기준임.

〈표 4-10〉 1998년대비 2008년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의 연령·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단위: 월)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151.67	163.33	127.11	127.50	136.50	142.60	126.67		179.67	154.00	
2	188.00							110.00			
3		126.00	125.00							144.50	
4	57.00							181.33			
5	114.00			53.00							
6	73.50	123.00	104.00		136.00		118.00	147.50			
7	117.00	140.00	138.50	84.25		93.67			127.50	118.00	
8	99.00	117.09	121.00	132.00	161.67	95.50	118.25	93.33	99.00	102.00	
9	139.00	116.08	128.00	115.83	134.71	139.78	126.33	124.55	123.67	96.00	141.00
10	136.00	142.67	139.00	119.50	144.00	119.57	141.00	132.75	159.67	119.60	
11	136.71	129.29	126.14	127.75	110.35	144.79	112.78	139.60	155.00	138.90	135.17
12	120.48	139.00	123.36	124.90	102.31	142.26	139.71	127.06	131.60	132.84	118.70
13	111.75	130.76	122.54	128.00	128.81	143.48	130.06	127.93	113.63	128.55	129.22
14	119.47	119.39	119.08	123.19	123.41	128.01	124.68	120.29	128.50	128.18	128.91
15	122.52	117.05	126.10	124.70	127.14	126.78	124.86	124.68	126.13	129.23	131.90
16	120.24	122.45	132.62	128.00	129.11	129.70	129.29	135.75	135.72	129.37	127.06
17	127.17	125.31	126.48	134.03	130.49	131.80	135.44	132.66	136.28	135.37	137.73
18	129.77	131.90	131.58	133.89	136.35	137.35	137.70	132.13	136.69	137.44	132.96
19	132.56	133.24	135.77	137.53	140.53	139.92	139.17	141.96	139.01	142.27	144.03
20	137.48	142.66	140.47	140.82	147.08	145.96	148.70	145.19	148.12	147.34	146.43
21	140.60	138.06	141.07	142.49	146.25	145.65	144.89	146.43	151.59	147.64	156.97
22	138.84	141.64	143.30	144.44	147.33	146.60	147.73	149.65	149.67	149.37	144.77
23	142.74	143.73	151.69	148.70	148.96	150.07	149.48	150.46	151.15	149.47	161.48
24	148.62	146.03	145.65	148.84	149.10	149.08	150.44	150.11	156.77	152.59	161.31
25	143.01	143.06	145.65	151.85	149.52	149.43	153.32	153.15	157.94	156.47	152.38
26	149.88	152.52	150.18	149.69	156.86	150.50	157.10	155.11	154.81	153.65	156.80
27	152.39	148.71	152.48	153.77	155.90	157.41	157.22	158.36	154.42	157.85	164.97
28	143.72	147.81	148.51	150.35	153.55	154.62	152.92	159.14	155.14	156.63	151.21
29	155.34	153.15	160.43	156.43	159.98	161.26	165.19	161.20	157.15	155.70	160.85
30	152.70	153.01	158.91	159.82	158.60	161.50	160.56	161.68	160.34	163.21	158.20
31	156.58	156.49	156.67	161.43	160.87	157.26	156.44	157.59	153.83	157.21	153.43
32	159.30	163.37	160.47	164.11	167.13	165.06	167.52	165.37	160.88	161.91	173.31
33	156.87	159.00	159.55	157.91	157.26	160.48	162.82	160.69	155.91	158.90	163.67
34	165.17	166.93	168.27	168.29	165.84	164.50	168.36	165.36	159.13	170.00	169.00
35	156.58	165.56	170.19	167.90	163.25	171.41	170.80	170.68	172.22	165.68	150.13
36	160.09	167.17	164.93	159.88	166.41	161.27	167.38	162.42	156.90	156.91	177.00
37	161.35	161.09	171.30	163.27	168.71	165.49	163.63	162.05	165.34	163.70	170.00
38	162.88	164.68	167.80	167.33	167.30	163.28	165.65	162.96	166.03	166.31	168.80
39	162.41	169.49	168.92	173.18	170.51	169.70	165.66	166.75	170.76	171.47	164.64
40	172.67	170.15	170.60	170.96	167.96	168.70	164.08	173.53	172.64	167.42	171.83
41	161.05	167.08	171.40	167.66	166.20	171.70	169.96	166.52	166.21	161.70	165.18
42	169.85	172.00	173.52	177.47	175.48	174.70	172.52	175.00	175.56	164.40	164.29
43	173.28	168.86	171.78	165.13	173.52	167.69	180.52	173.04	178.33	165.35	154.80
44	172.10	165.30	173.71	164.37	164.13	167.21	179.62	167.43	172.14	163.14	183.00
45	178.36	178.68	179.71	179.62	177.86	179.11	178.37	176.29	175.41	174.27	179.97

〈표 4-11〉 2003년 기준 지역가입자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평균가입기간 분포
(단위: 월)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90.6	91.7	92.4	94.7	96.9	96.8	98.1	94.3	95.6	89.8	87.6
2	73.0		117.5	54.5	80.5	101.0	119.5	44.0		71.0	176.0
3	0.0	133.0	20.0	39.0	104.0	147.0	98.5				
4	146.0	107.5		45.0		91.3	110.0			126.5	120.5
5		67.0			127.0		68.0			46.0	97.0
6		86.0	120.0	77.0	80.0	81.0	131.5	116.0		127.0	
7	140.0	183.0	115.3	119.0	107.5	133.7	131.3	125.3	175.3	127.8	118.0
8	121.5	67.1	90.0	94.5	81.3	102.5	99.3	124.0	93.2	95.0	100.0
9	84.1	92.6	89.7	84.4	83.6	93.9	87.0	92.4	118.9	92.5	85.1
10	126.0	116.7	137.0	126.4	126.5	126.7	118.0	113.7	120.6	119.2	127.7
11	105.9	112.0	114.1	115.8	120.8	119.8	118.3	120.2	116.1	117.1	118.1
12	127.1	104.9	112.7	109.5	112.8	110.4	118.2	108.6	114.1	114.9	104.9
13	124.2	114.7	119.1	92.3	120.0	121.5	126.8	117.7	116.4	121.0	91.4
14	111.3	114.9	110.8	122.2	119.0	125.4	114.0	113.7	117.4	115.2	108.0
15	115.0	115.5	112.4	114.4	116.0	120.9	120.0	119.0	117.3	109.8	113.0
16	106.0	111.1	112.3	115.1	114.0	116.0	112.7	116.0	115.1	98.4	94.9
17	116.9	118.4	116.0	117.3	123.3	123.5	116.4	120.2	118.9	113.3	100.9
18	111.2	118.9	117.2	117.7	115.9	111.1	119.1	125.2	120.4	110.3	102.1
19	116.9	113.4	118.5	118.3	119.2	120.9	115.6	113.1	117.0	117.0	106.1
20	115.8	116.4	119.5	120.1	122.5	118.4	118.1	117.4	114.5	113.5	107.5
21	108.5	114.9	120.9	116.0	121.2	116.6	113.7	119.9	111.8	120.7	121.0
22	115.5	118.3	120.2	122.2	120.8	121.6	123.6	119.6	116.4	119.5	109.7
23	122.0	122.2	123.2	122.2	124.1	124.1	120.3	121.3	121.0	115.8	109.6
24	123.6	125.6	122.4	126.9	126.4	136.0	125.8	130.6	134.1	131.8	124.0
25	127.5	129.4	126.8	136.0	133.0	131.3	132.7	132.9	128.1	128.6	120.7
26	126.1	132.6	130.5	136.2	129.6	135.5	132.8	126.3	137.9	138.2	126.8
27	124.6	132.4	131.5	133.4	129.5	128.6	135.1	133.5	138.3	132.7	130.8
28	123.9	129.4	130.7	140.3	136.4	133.2	134.1	126.8	135.5	138.7	118.9
29	133.8	130.4	124.7	130.8	138.0	134.4	137.4	135.0	133.3	138.0	128.3
30	139.3	136.3	136.3	138.2	141.5	144.1	145.4	140.7	135.4	139.6	138.3
31	127.3	133.5	142.8	145.3	138.4	139.3	140.4	139.6	132.3	140.9	122.3
32	127.7	135.6	130.7	144.1	141.9	143.8	135.7	140.1	142.6	132.7	157.5
33	131.5	137.1	136.1	141.8	144.8	139.3	139.7	141.0	147.1	144.6	137.4
34	132.7	144.6	134.2	139.8	132.2	134.2	124.6	151.1	151.9	150.7	119.0
35	139.9	144.2	147.9	137.4	137.6	146.6	141.2	142.2	150.1	144.7	131.5
36	138.9	129.8	139.7	137.8	138.0	136.6	144.9	136.8	138.3	130.0	121.8
37	152.1	142.9	133.6	132.1	153.8	128.9	131.6	143.3	132.1	113.5	138.9
38	142.2	122.7	132.5	135.4	146.7	153.0	130.8	140.6	137.1	136.8	118.6
39	143.9	153.0	148.6	127.3	144.7	138.3	147.4	156.3	150.2	125.5	114.2
40	139.6	136.3	151.0	130.2	145.9	157.8	146.4	131.2	143.0	139.3	101.5
41	125.2	144.0	160.6	149.0	144.0	155.0	149.8	149.4	147.1	157.1	163.3
42	141.1	145.0	129.3	159.3	145.0	144.2	148.6	137.3	146.1	132.9	182.3
43	150.7	131.9	144.1	124.9	132.5	122.3	151.3	150.7	148.3	138.5	133.5
44	110.1	132.0	143.1	127.2	149.5	139.2	135.1	143.4	151.2	153.4	176.0
45	133.8	140.9	140.0	144.3	144.8	140.1	139.5	144.7	150.2	149.3	144.9

주: 1) 연령은 1998년 기준임.

〈표 4-12〉 2003년 기준 미가입자의 1998년까지 연령별 등급별 가입자 평균가입
기간 분포

(단위: 월)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	38.6	84.0	59.3	17.3	103.7	60.0	41.9	80.5	81.3	90.5	60.0
2		17.0			19.0	113.0			92.0		119.5
3	38.5							97.7			
4	107.0			61.5	98.0	81.0		108.0		67.3	43.3
5		94.0	103.0	59.5	96.0		70.0	81.0	80.0		
6	47.6	22.0	67.0	67.6	35.0	56.0				125.0	122.5
7	30.5	24.8	63.4	63.3	49.0	40.0	42.0	44.5	37.0	66.3	91.7
8	37.7	36.5	36.0	43.9	45.9	73.6	50.2	45.9	78.7	46.2	59.2
9	47.4	39.9	50.6	46.7	50.8	55.1	42.7	57.5	46.6	56.2	64.2
10	39.7	44.0	49.1	47.3	49.5	46.6	51.1	49.9	69.2	62.0	59.4
11	37.6	45.0	43.4	45.1	48.3	48.8	51.7	56.2	61.6	52.1	57.6
12	40.6	43.9	48.3	44.5	50.8	45.0	52.3	48.3	57.9	59.9	57.1
13	45.4	43.5	49.5	53.2	52.0	51.1	56.3	61.9	54.4	63.0	60.6
14	50.1	46.7	48.9	49.4	54.5	55.0	56.2	62.9	61.8	61.0	61.2
15	50.7	47.1	52.5	54.4	55.2	53.7	59.7	56.4	60.3	65.2	62.8
16	48.9	48.9	53.8	56.9	52.5	59.9	60.2	59.2	64.1	61.8	66.5
17	59.0	60.7	60.2	63.4	62.4	65.4	64.0	69.3	66.0	71.1	71.2
18	53.9	57.3	63.0	62.2	62.9	64.0	65.0	66.3	67.4	69.6	69.3
19	59.1	61.3	64.8	65.2	66.8	67.4	68.3	71.9	76.6	81.7	73.9
20	61.4	66.4	67.6	73.3	79.3	70.6	75.1	84.4	77.9	79.2	80.3
21	66.1	69.5	72.5	73.5	71.1	76.5	76.7	82.4	84.0	85.2	83.8
22	64.0	62.7	72.5	72.7	75.8	75.5	77.1	73.2	84.8	86.5	84.9
23	75.9	74.9	75.5	74.9	77.9	80.3	81.0	85.2	89.4	92.0	90.9
24	70.7	71.6	78.2	81.1	82.2	79.0	87.2	85.7	91.5	96.2	92.3
25	74.0	70.2	77.7	78.1	77.6	82.1	85.6	85.7	91.4	93.9	93.1
26	74.9	78.7	76.7	83.2	84.0	82.6	81.9	91.2	83.6	95.5	92.1
27	78.7	82.5	77.4	85.3	87.5	81.3	87.4	93.5	96.4	100.6	99.0
28	69.5	76.5	81.7	78.1	70.3	80.2	83.8	90.5	92.6	100.6	96.8
29	81.2	85.7	86.2	90.2	86.3	93.2	90.9	101.9	97.8	107.1	104.6
30	85.0	81.3	88.1	91.8	90.9	92.6	94.2	96.9	101.6	103.0	102.5
31	85.4	85.5	83.3	86.0	88.5	86.1	89.3	97.1	100.6	109.1	105.8
32	89.2	92.6	97.1	99.0	101.9	101.4	103.7	102.1	107.0	111.1	111.5
33	84.6	84.4	92.3	90.8	94.0	94.7	94.8	96.4	100.6	108.5	106.3
34	97.9	100.1	92.2	96.1	95.0	97.1	100.5	103.2	114.4	118.3	109.1
35	98.2	104.7	100.2	107.4	107.7	98.0	106.7	114.0	109.3	115.9	114.6
36	101.6	102.4	103.0	97.2	105.3	113.2	104.8	110.4	113.2	115.6	115.6
37	109.5	102.1	100.2	102.0	112.2	109.5	110.0	111.7	115.2	117.6	115.9
38	100.7	101.6	102.9	106.5	102.0	104.5	108.1	105.0	110.7	112.9	113.8
39	107.7	107.0	110.6	112.2	113.1	107.3	112.1	114.1	116.8	120.7	116.9
40	109.2	113.0	112.7	116.2	112.5	114.8	114.8	117.3	121.0	118.7	119.3
41	111.1	106.2	114.1	102.9	108.3	98.5	108.0	113.2	115.6	116.4	112.7
42	116.0	118.5	115.8	109.3	115.0	114.4	112.5	120.1	120.2	117.9	119.2
43	116.6	116.8	116.3	116.1	115.3	110.2	118.3	112.9	118.8	120.7	119.7
44	115.9	109.5	110.1	118.9	114.0	114.0	120.4	117.5	120.8	119.7	120.3
45	112.6	110.6	109.8	110.7	111.8	110.5	109.0	112.5	115.6	118.4	119.6

주: 1) 연령은 1998년 기준임.

제 2 절 자격변동에 따른 재정수지분석

1. 보험료 수입 및 급여추계를 위한 제반 가정

1998년기준 사업장가입자들 2003년 사업장에 있으되, 그 등급이 하락한 사람, 지역가입자 혹은 미납자로 남은 사람들의 자격변동에 대한 국민연금상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과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 및 분석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횡단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현행 자료를 가지고 자격변동에 따른 재정수지 및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을 추계해 보고자 한다. 단순가정에 의한 재정추계이지만, 실제 가입자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재정추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가정한 내용들이다.

- ① 1998년까지의 보험료 수입은 1998년 이전의 가입기간을 1988년~1992년(보험료 3%), 1993년~1997년(보험료 6%), 1998년 이후(보험료 9%)로 구분하여 1998년까지의 보험료 수입을 추계 하였다.
※ 각 보험료별 기간은 1998년까지의 가입기간을 기본으로 하여 역산하여 추정하였다.
- ② 1998년 이후의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 9%, 가입등급 및 연금가입기간은 59세까지 유지되며 60세에 사업장가입자에서 탈퇴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③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998년의 45~55세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며, 60세에 도달시 가입자수에서 제외하였다. 즉, 1998년 55세 가입자의 경우, 2003년에서 60세에 도달함으로써 2003년 보험료수입계산시 이들 연령층을 제외하였다.
- ④ 연금급여산식

$$\left[2.4(A + 0.75B) \times \frac{P_1}{P} + 1.8(A + B) \times \frac{P_2}{P} \right] \times \left(1 + 0.05 \times \frac{n}{12} \right)$$

i) A(가입자 평균임금): 1,320,105원(2003년 기준)

※ 1999년~2003년까지의 평균증가율 2.8%를 적용하여 2004년 이후 A값 추정

ii) B(생애 평균임금): 현행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iii) P_1 : 1988년~1997년까지의 가입기간(월)

P_2 : 1998년 이후의 가입기간(월) P : 국민연금 전체가입기간(월)

n : 가입기간 20년 초과년수

iv) 10년 미만 가입자는 연금최소가입연수인 10년으로 보정하였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자는 감액노령연금을 가정하였다(10년 가입시 완전노령연금의 47.5%에서 1년마다 5%씩 상향하여 19년 가입시 92.5%적용).

⑤ 연금슬라이드 : 물가상승률 3% 적용

- 2000~2002년까지의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⑥ 연금수급은 60세부터 시작

⑦ 연금수급기간 : 18년 가정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한 남녀 45~55세의 평균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⑧ 연금보험료 수입 및 급여지출의 현재가치화 : 이자율 5%가정(장기 콜금리: 1999~2002년까지의 산술평균은 4.8%지만 추정을 위해 5%로 가정함)

- 산식: 현재가치 = 추정연금액 / $(1 + 0.05)^n$ (n: 年數)

⑨ 사망률, 유족연금, 장애연금, 가급연금액, 이직률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자격변동내용별 재정수지분석

가. 사업장가입자(1998) → 사업장가입자(2003)는 유지하되 등급이 하락한 경우

여기서는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했지만, 등급이 하락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수입 및 급여지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첫째, 사업장가입자가 1998년의 등급을 2003년까지 계속 유지하고 이후에도 등급이 변하지 않을 경우의 보험수입과 급여지출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2003년 기준으로 1998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이 2003년 등급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연금보험수입과 급여지출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 사업장가입자 중 1998년대비 등급하락자들이 1998년의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의 보험료 수입은 1조 5913억원, 연금급여는 3조 45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정수지는 1조 8622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3년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의 보험료 수입은 1조 1216억원, 연금급여는 2조 9290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수지는 1조 8074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등급하락시와 등급유지시의 순수지차는 548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4-13〉 1998년대비 2003년 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들의 수지분석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¹			연금급여 ²			수지차		순수지차
	등급유지	등급하락	차이	등급유지	등급하락	차이	등급유지	등급하락	
누계	15,913	11,216	4,697	34,535	29,290	5,245	△ 18,622	△ 18,074	548

주: 1) 2012년까지의 누계임.
 2) 2003년부터 2031년까지의 누계임.

나. 사업장가입자(1998) → 보험료납부지역가입자(2003)

1998년 사업장가입자에서 2003년기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 자격변동에 따른 국민연금수지차를 분석하였다. 첫째, 2003년 기준 지역가입자가 1998년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와 둘째, 1998년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의 연금보험수입 및 급여지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를 볼 경우, 2003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이 1998년이후 계속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은 2조 3615억원, 연금급여는 7조 5679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5조 2064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1998년 이후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보험료수입은 8989억원, 연금급여는 3조 8827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2조 9838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보험료수입은 1조 46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금급여지출은 3조 685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의 순수지차는 2조 2226억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4-14〉 지역가입자유형별 수지분석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¹			연금급여 ²			수지차		순수지차
	사업장 유지	지역변경	차이	사업장 유지	지역변경	차이	사업장 유지	지역변경	
누계	23,615	8,989	14,626	75,679	38,827	36,852	△52,064	△29,838	22,226

주: 1) 2012년까지의 누계임.

2) 2003년부터 2031년까지의 누계임.

등급변동에 따른 등급별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에도 사업장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경우 1등급의 소득대체율은 128.1% 7등급 97.7%, 16등급 50.7%, 31등급 29.6%, 45등급 23.6%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1등급은 78.5% 7등급 77.5%, 16등급 37.8%, 31등급 23.1%, 45등급

17.8%로 나타나, 사업장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대체율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15〉 자격변동에 따른 소득대체율변동

(단위: %)

등급	사업장유지시	지역	차이	등급	사업장유지시	지역	차이
1	128.1	78.5	49.6	24	36.7	27.9	8.8
2	110.7	76.7	34.0	25	35.3	26.9	8.4
3	109.8	85.3	24.5	26	34.3	26.5	7.8
4	115.6	76.2	39.4	27	34.3	25.4	8.9
5	107.4	62.8	44.6	28	32.0	24.7	7.3
6	104.7	68.2	36.5	29	30.8	24.1	6.7
7	97.7	77.5	20.2	30	30.2	23.9	6.3
8	86.3	59.7	26.6	31	29.6	23.1	6.5
9	83.5	52.2	31.3	32	30.4	22.9	7.5
10	76.9	60.5	16.4	33	28.3	22.2	6.1
11	70.5	53.5	17.0	34	29.6	21.5	8.1
12	65.1	49.7	15.4	35	30.4	21.5	8.9
13	61.1	46.9	14.2	36	30.4	20.5	9.9
14	56.7	44.2	12.5	37	28.2	19.8	8.4
15	53.2	40.9	12.3	38	27.5	19.5	8.0
16	50.7	37.8	12.9	39	27.9	19.7	8.2
17	49.3	36.7	12.6	40	28.1	19.2	8.9
18	46.5	34.2	12.3	41	26.8	20.1	6.7
19	44.1	32.2	11.9	42	29.6	19.4	10.2
20	43.1	30.9	12.2	43	27.0	18.2	8.8
21	41.3	29.5	11.8	44	28.1	18.2	9.9
22	38.7	28.8	9.9	45	23.6	17.8	5.8
23	38.3	28.2	10.1				

다. 사업장가입자(1998)→ 보험료미납자(납부예외자, 미가입등(2003))

본 부문에서는 1998년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3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수입 및 지출의 재정수지변화를 추계해 보았다. 역시 앞에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첫째, 2003년 기준 보험료미납자가 1998년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와 둘째, 1998년 이후 바로 미납자로 변경될 경우의 연금보험수입 및 지출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2003년기준 미납자들이 1998년의 사업장가입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보험료수입은 1조 6609억원, 연금급여는 4조 6208억원으로 재정수지는 2조 9599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반면에 1998년 이후 미가입자로 남아있는 경우 1998년까지의 보험료수입은 6984억원, 연금급여는 1조 1535억원, 재정수지는 4551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순수지차는 2조 5048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4-16〉 가입자유형별 수지분석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연금급여			수지차		순수지차
	사업장 유지	미가입자	차이	사업장 유지	미가입자	차이	사업장 유지	미가입자	
누계	16,609	6,984	9,625	46,208	11,535	34,673	△29,599	△4,551	25,048

주: 1) 2012년까지의 누계임.

2)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사업장가입시의 누계임.

3) 반환일시금의 이자는 5%(연, 장기복금리) 가정함.

2003년기준 미납자들이 1998년의 사업장가입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볼 경우, 1등급은 93.7%, 6등급 81.4%, 12등급 46.7%, 20등급 33.0%, 30등급 24.9%, 40등급 21.4%, 45등급 19.6%로 추계되었다. 반면에 미가입의 상태를 계속해 유지하는 경우, 일부 미가입 상태로 전환하기전 가입기간

이 10년이 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0”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가입자들중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일부러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대상자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미가입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이후 거의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대상자들의 소득대체율이 “0”이라는 점을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결국 이들 대상자들의 일부가 기초적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경우 공공부조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다.

〈표 4-17〉 가입자유형별 등급별 소득대체율 비교

(단위: %)

등급	사업장유지시	미가입	등급	사업장유지시	미가입
1	93.7	0	24	29.2	0
2	87.1	68.1	25	28.1	0
3	97.4	0	26	27.2	0
4	90.9	0	27	26.8	0
5	91.3	0	28	25.7	0
6	81.4	59.1	29	25.6	0
7	65.4	0	30	24.9	0
8	63.0	0	31	24.1	0
9	57.6	0	32	24.2	15.4
10	53.7	0	33	23.4	0
11	50.3	0	34	23.3	14.5
12	46.7	0	35	23.3	0
13	44.7	0	36	23.2	0
14	42.0	0	37	22.4	13.6
15	39.2	0	38	21.7	0
16	37.2	0	39	21.7	13.1
17	37.0	0	40	21.4	12.9
18	34.7	0	41	20.8	12.6
19	33.5	0	42	20.8	12.8
20	33.0	0	43	20.1	12.6
21	31.5	0	44	21.0	12.3
22	29.8	0	45	19.6	12.0
23	29.7	0			

라. 기준연도별 보험료수입 및 급여지출 추이

1998년 사업장가입자들이 1998년의 사업장등급을 유지한다고 가정시 추정된 보험료수입 및 연금급여지출의 변화와 2003년 가입자자격이 변동한 이후의 보험료수입 변화 및 연금급여지출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1998년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수입은 1998년까지는 2조 4395억 원이며, 연령증가에 따라 보험료수입이 감소해 2012년에는 334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2012까지의 전체적인 보험료수입은 6조 6169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1998년 이후 가입자자격에 변동이 생겨 2003년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미납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2003년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2012년까지의 보험료수입은 2조 3914억 원, 지역가입자의 2012년까지의 보험료수입은 8989억 원으로 추계되어 전체적인 합계는 3조 290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4-18〉 연도별 보험료 수입 추정(1998년 기준 45~55세)

(단위: 억원)

연도	1998년기준	2003년기준		
		사업장	지역	합계
1998년 이전	24,395			
1999	4,819			
2000	4,819			
2001	4,819			
2002	4,819			
2003	4,435	16,418	5,574	21,992
2004	3,876	1,517	744	2,262
2005	3,380	1,356	647	2,002
2006	2,894	1,188	551	1,739
2007	2,381	1,002	449	1,450
2008	1,906	823	355	1,178
2009	1,472	643	273	916
2010	1,077	479	198	677
2011	742	335	137	471
2012	334	153	62	215
합계	66,169	23,914	8,989	32,903

동 금액에 1998년 이후 사업장을 나와 미가입의 상태로 남아 있던 사람들의 1998까지의 보험료수입 6984억원을 합한 경우, 2003년 가입자격 변동으로 인한 총 추정보험료는 3조 9887억원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사업장가입자격을 계속 유지시와의 보험료수입차이는 2조 628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기준연도별 연금급여 지출을 살펴볼 경우, 1998년 사업장가입 당시의 등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60세부터 연금급여를 수령할 경우의 총연금급여액은 16조 705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2003년에 가입자 자격이 변동후 60세 이후 연금급여를 수령한다고 한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사업장지위를 유지할 경우, 연금급여지출은 6조 101억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3조 8827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동 금액 합계인 9조 8928억원에, 1998년이후 미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의 연금급여지출 1조 1535억원을 합할 경우, 2003년 자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연금급여지출액은 11조 46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1998년 자격을 유지한 것과 비교시 27조 7519억원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9〉 연도별 연금급여 추정(1998년 기준 45~55세)

(단위: 억원)

연도	1998년기준	2003년기준		
		사업장	지역	합계
2003	744	69	83	152
2004	1,456	264	239	502
2005	2,120	475	395	870
2006	2,864	730	568	1,298
2007	3,788	1,072	796	1,869
2008	4,730	1,423	1,035	2,457
2009	5,676	1,799	1,268	3,068
2010	6,607	2,185	1,493	3,678
2011	7,430	2,541	1,694	4,235
2012	8,580	3,043	1,979	5,022
2013	9,558	3,481	2,234	5,715
2014	9,376	3,415	2,192	5,607
2015	9,197	3,350	2,150	5,500
2016	9,022	3,286	2,109	5,395
2017	8,850	3,223	2,069	5,292
2018	8,682	3,162	2,030	5,191
2019	8,516	3,102	1,991	5,093
2020	8,354	3,043	1,953	4,996
2021	8,195	2,985	1,916	4,900
2022	7,523	2,880	1,821	4,702
2023	6,875	2,689	1,678	4,367
2024	6,264	2,488	1,534	4,022
2025	5,601	2,257	1,380	3,637
2026	4,815	1,967	1,187	3,154
2027	4,020	1,672	989	2,661
2028	3,224	1,360	794	2,155
2029	2,442	1,043	606	1,649
2030	1,737	747	436	1,183
2031	808	351	207	558
합계	167,056	60,101	38,827	98,928

3. 생애평균소득의 변동을 통한 재정수지 비교

가. 추정배경

연금급여 추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가입자의 평균임금과 전생애평균임금이다. 이중 가입자평균임금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앞에서 가정한대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가입자의 전생애평균임금은 추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자신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추정된 것이기에 동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연금급여지출을 추정하였다.

노동연구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전연령대의 전생애평균임금은 120.6만원으로 추정되었다⁴⁾. 따라서 본 부문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25등급이하는 현재의 표준보수월액이 자신의 생애소득이라 가정하였으며, 26~32등급은 생애평균소득을 120만원으로 가정하였다. 33등급 이상은 현재가치시 사용한 장기복금리를 기준으로 각 등급별 보수월액에 5%씩 할인하여 생애평균소득으로 삼아 전체적인 연금급여를 추정하였다.

기본적인 추정의 기본가정은 앞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추정은 두가지 방법 즉, 1998년의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와 2003년의 변동자격기준을 기준으로 향후 연금급여지출을 추정하였다. 보험료수입은 변경된 생애소득이 아닌 1998년과 2003년 당시 가입등급의 표준보수월액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앞의 추정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동 추정은 가입자의 생애표준보수월액이 변동할 경우 가입자 자격에 변동에 따른 연금급여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다소 강한 가정하에 추정되었지만 자료와 data의 정교성이 구축되는 경우 좀 더 정밀한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장지연, 『고연령자의 임금과 취업형태』, 한국노동연구원, 2002.

나. 사업장가입자(1998) → 사업장가입자(2003)는 유지하되 등급이 하락한 경우

분석결과 2003년 사업장가입자격을 유지한 자중 1998년에 비해 등급하락자들이 1998년의 등급을 유지할 경우의 연금급여는 3조 30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정수지는 1조 7156억원으로 B값을 변경하기전 1조 8622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2003년 사업장가입자 중 1998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의 연금급여는 2조 8397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수지는 1조 7181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등급하락시와 등급유지시의 순수지차는 25억원으로 B값을 변경하기 전에 548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20〉 1998년대비 2003년 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들의 수지분석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¹			연금급여 ²			수지차		순수지차
	등급유지	등급하락	차이	등급유지	등급하락	차이	등급유지	등급하락	
누계	15,913	11,216	4,697	33,069	28,397	4,672	△17,156	△17,181	25

주: 1) 2012년까지의 누계임.

2) 2003년부터 2031년까지의 누계임.

다. 사업장가입자(1998) → 보험료납부지역가입자(2003)

B값변화에 따른 2003년 지역가입자들의 분석결과를 볼 경우, 2003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이 1998년 이후 계속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연금급여는 7조 3004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4조 9389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1998년 이후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시 연금급여는 3조 8253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2조 9264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연금급여지출은 3조 47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사업

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의 순수지차는 2조 125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B값 변경전 2조 226억원에 비해 2101억원 감소된 것이다.

〈표 4-21〉 지역가입자유형별 수지분석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¹			연금급여 ²			수지차		순수지차
	사업장 유지	지역변경	차이	사업장 유지	지역변경	차이	사업장 유지	지역변경	
누계	23,615	8,989	14,626	73,004	38,253	34,751	△ 49,389	△ 29,264	20,125

주: 1) 2012년까지의 누계임.
 2) 2003년부터 2031년까지의 누계임.

라. 사업장가입자(1998)→ 보험료미납자(납부예외자, 미가입등(2003))

2003년기준 보험료미납자들에 대한 분석결과 2003년기준 미납자들이 1998년의 사업장가입 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연금급여는 4조 4785억원으로 재정수지는 2조 8176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1998년이후 미가입자로 남아있는 경우 1998년까지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한 연금급여는 1조 945억원, 재정수지는 3961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순수지차는 2조 4215억원으로 B값 변동전 2조 5048억원에 비해 833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22〉 가입자유형별 수지분석

(단위: 억원)

연도	보험료수입			연금급여			수지차		순수지차
	사업장 유지	미가입자	차이	사업장 유지	미가입자	차이	사업장 유지	미가입자	
누계	16,609	6,984	9,625	44,785	10,945	33,840	△ 28,176	△ 3,961	24,215

주: 1) 2012년까지의 누계임.
 2)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사업장가입시의 누계임.
 3) 반환일시금의 이자는 5%(연, 장기률금리) 가정함.

제 3 절 소결

본 절은 국민연금의 실제 1998년기준 45~55세 사업장가입자의 2003년도의 자격변동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변동 및 전생애평균소득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미비 및 분석상의 차이로 인해 주로 횡단면적인 요소만을 분석하였으며, 인구변화, 경제적인 요인, 기금수입, 정부보조 등 실제 재정추계에 있어 가정해야 할 요소들은 대부분 제외되어 추정에 있어 어느정도 한계점은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격변화와 전생애평균소득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데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나 학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주장되어 오던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사업장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45~55세 사업장가입자들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금액은 6조 616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연금급여지출은 16조 7056억원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아가는 연금급여가 약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자료분석을 살펴볼 경우, 연금가입자들이 사업장가입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지역가입자나 미가입의 형태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연금재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즉, 200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계속해 남아 있는 경우보다는 재정에의 부담이 2조 2226억원 감소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금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자격변동이 단기적으로 연금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급여하락은 자격변동자들의 노후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스스로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이들 노후소득의 감소는 정부가 연금과는 다른 형태의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즉 노후소득감소에 따른 고령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부조나 경로연금 같은 별도의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의 마련은 장기적으로 정부재정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입자자격 변동을 통해 자료분석결과,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노동시장에의 변화가 매우 심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1998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남아있던 45~55세의 약 28만명 가입자 중 2003년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는 약 10만명, 지역가입자는 약 86천명, 나머지는 미가입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사업장가입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약 49천명의 사람들이 등급이 하락하거나 1998년과 동일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수치로만 1998년 이후 사업장가입자로서 등급이 증가한 사람은 28만명 중 약 18.2%인 5만 1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가입자중 사업장가입때보다 등급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는 약 2만명에 불과하며, 등급이 하락하거나 동일한 경우는 약 16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가입자격의 변동은 근로자들의 소득감소와 더불어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차원의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제 5 장 국민연금의 노동시장에서의 공익적 기능

앞장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지 못하고 자영업자나 미가입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연금제도가 저부담·고급여의 체계로 인해 연금재정측면에서는 이들이 미가입이나 납부예외자로 전락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개인적인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현실은 20년 이상 근속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에서 탈퇴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의 저하, 하향신고등으로 인해 소득등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앞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가입기간의 축소와 소득등급의 하락 등 2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 고령근로자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 조기퇴직을 방지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연금급여수준이 높아 60세 이후 노동시장의 참여보다는 연금수급을 선호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확보차원에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부분연금지급 등 점진적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문제가 되는 고령근로자의 연령은 선진국과 같이 60세가 아니고 45세 전후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시점을 65세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60세 이후 65까지 연금제도의 조정으로 고령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시점을 연장시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이 선진국 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도저히 연금제도의 보완으로는 고령근로자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4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취업가능성확대와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장잔류기간을 연장

시키거나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만 할 것이다. 취업 가능성의 확대는 고령자를 고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를 수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업에서 고령근로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이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인만큼 근로시간단축과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제1절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개선이 아닌 연금의 관리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재취업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제2절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취업 가능성 또는 사업장잔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가 기업전체로 확산되어야만 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기금이 기업으로 다시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주주권행사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제3절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고령근로자지원정책의 강화를 또 다른 정책방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제 1 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능확대를 통한 고령근로자 재취업활성화 방안

고령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잔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선 개인적인 노력은 자신을 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 그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적합한 직종과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의 일종인 소득단절을 대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은 정년퇴직이후의 소득의 단절보다는 45세 전후에 퇴사로 인한 소득의 단절 또는 소득수준의 하락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관리주체는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퇴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퇴사한 사업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성공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만 한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보험료의 징수, 급여지급, 가입자의 자격변동관리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취업자에 대한 재교육은 기업이 부담해야하나 실제 중견간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50~64세 근로자가 업무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1994~1998)에 의하면 덴마크의 50~64세 근로자의 교육참여경험자비중은 덴마크 45%, 노르웨이, 미국이 40% 등으로 높고 폴란드가 11%로 우리나라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업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수요조사를 통해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장가입자들에게 신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장잔류가능성을 높여주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만 징수하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각 지사별로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또 다른 역할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가입자들에 대한 취업알선서비스의 제공이다. 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장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지역내 기업들의 인력수요와 사업장가입자와 도시지역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임시·일용직근로자들의 취업수요를 연계시켜 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경우 연금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같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추진중인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취업알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제도에서 운용되고 있는 고령자취업지원을 위한 임금보조금제도를 연계시키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노령근로자의 사업장애의 잔류와 퇴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임금보조금제도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내용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다수고용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근로자의 6% 이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는 사업장	분기당 15만원을 6%를 초과하여 고용한 고령근로자의 수만큼 지원
신규고용	구직등록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하고 있는 고령자를 월 1인 이상 새로이 고용	신규 고령근로자 1인 당 25만원을 6개월간 지급
재고용	경영상이유, 정년퇴직, 질병, 부상, 통근 곤란 등으로 퇴직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퇴직 3개월 후 2년이내에 재고용	재고용자 1인당 30만원 6개월간 지급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책: 각국사례』, 한국노동연구원, 2003.

고령자고용에 대한 임금보조금제도는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다. 다만, 장지연(2002)에 의하면 이 제도의 수혜자는 고령근로자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학력수준이 낮고 단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도의 보완을 통해 거의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5-2〉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지원업체(개소) (증가율 %)	1,726	4,098 (137.4)	8,379 (104.5)	10,126 (20.8)	12,336 (21.8)	14,360 (16.4)
지원인원(명) (증가율 %)	110,207	103,579 (△6.0)	150,534 (45.3)	177,520 (17.9)	222,658 (25.4)	268,424 (20.6)
지원금액(백만원) (증가율 %)	8,824	9,257 (4.9)	13,495 (45.8)	15,915 (17.9)	28,009 (76.0)	38,769 (38.4)

제 2 절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점진적 퇴직제도 확산방안

국민연금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 기금은 다시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에 재투자되고 있다. 기금의 소유주는 가입자이고 가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협하는 조기퇴직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확산을 주주권행사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주권행사는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금에 의한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의결권행사차원에서 당연히 행사되어야만 한다. 의결권행사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제도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 의결권행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표 5-3〉 국민연금기금의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21,670,945	28,282,412	37,464,653	46,992,280	60,615,248	75,641,113	92,774,725
공 공 부 분	14,675,229	19,065,229	26,795,096	31,857,319	34,511,390	30,784,652	30,198,894
재정자금	4,752,000	4,142,000	2,902,000	0	0	0	0
공공자금	9,923,229	14,923,229	23,893,096	31,857,319	34,183,819	29,444,077	24,221,077
국채	0	0	0	0	327,571	1,340,575	5,977,817
복 지 부 분	694,538	805,194	1,438,506	989,927	716,493	633,218	526,948
금 융 부 분	6,301,178	8,411,989	9,231,051	14,145,034	25,387,365	44,223,243	62,048,883
채 권	2,656,814	3,654,827	4,827,421	9,020,631	19,593,345	38,591,062	56,412,923
금전신탁	1,739,129	1,837,051	1,146,995	539,025	350,000	19,659	94,137
정기예금	75,650	355,550	311,300	154,100	210,000	0	0
수익증권	680,900	1,317,065	926,100	1,488,545	1,198,412	371,554	195,769
위탁투자	0	0	0	0	200,000	1,200,000	1,800,000
벤처투자	0	0	0	0	0	0	45,500
주 식	1,061,745	1,155,131	1,078,914	1,372,146	1,959,852	2,338,444	2,951,604
단기자금	86,940	92,365	940,321	1,570,587	1,875,756	1,702,524	548,950

주: 1. 해당연도 말일기준의 투자잔액임 2. 현금주의로 작성됨

2. 주식투자현황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는 1991년 20억규모로 최초 시작하여 2002년 매입기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금액은 2조 9546억원으로 전년(2조 2778억원) 대비 29.7% 증가하였다. 보유종목은 2001년 62개 종목에서 2002년에는 68개 종목으로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분리해서 보면 2002년 말 거래소 상장종목 62개, 코스닥 등록종목 6개에 대하여 투자하고 있다. 2002년 말 보유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래소 종목은 거래소 시가총액의 1.27%,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 시가총액의 0.2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01년에는 시가총액의 1.1%, 코스닥 등록기업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국민연금의 보유 포트폴리오를 규모별로 보면 대형주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주의 보유비중은 85.50%로서, 이는 시장의 평균 비중 68.28%를 17.22% 초과하는 것이다. 2001년에는 9.11%로 시장에 비해 26.38%초과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소형주의 보유비중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소형주 비중은 4.94%로서 시장의 20.34%에 비해 15.40%낮고 2001년에는 3.77%로 시장에 20.36% 낮게 보유하고 있었다.

중형주의 비중은 시장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5-4〉 규모별 포트폴리오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장부가액	비중	시장비중	차이
2001	대형주	26,674	90.11	63.73	+26.38
	중형주	1,813	6.12	12.15	-6.02
	소형주	1,115	3.77	24.12	-20.36
	계	29,601	100	100	-
2002	대형주	28,585	85.50	68.28	+17.22
	중형주	3,195	9.56	11.38	-1.82
	소형주	1,653	4.94	20.34	-15.40
	계	33,433	100	100	-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보면 전기전자업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업종별 보유 현황을 보면 전기전자업종이 2001년에 29.04%이고, 2002년에는 31.1%으로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보유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에 이어서 2002년 말 통신업(17.5%), 금융업(16.0%) 등이 있고 보유비중이 낮은 업종은 코스닥 등록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말의 통신업(19.74%), 금융업(12.76%)에 비해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5-5〉 업종별 투자비중

구분	장부금액	비중	시장비중	차이
음식료품	349	1.0	2.1	-1.1
화학	2,147	6.4	5.6	0.8
의약품	150	0.5	0.7	-0.2
비금속광물	75	0.2	0.7	-0.5
철강금속	1,971	5.9	4.8	0.9
기계	122	0.4	0.9	-0.5
전기전자	10,397	31.1	24.2	6.9
운수장비	2,443	7.3	5.9	1.4
유통	449	1.3	2.8	-1.5
전기가스	1,700	5.1	4.7	0.4
건설	600	1.8	1.5	0.3
운수창고	199	0.6	0.7	-0.1
통신업	5,824	17.5	12.4	5.1
금융업	5,355	16.0	16.7	-0.7
서비스업	212	0.6	1.3	-0.7
코스닥	966	2.9	12.6	-9.7
기타	473	1.4	2.4	-1.0
계	33,433	100.0	100.0	-

시장과의 구성비중이 가장 차이를 보이는 업종은 2002년말 전기전자업종으로 시장에 비해 6.9%초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업종은 5.1%초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를 종목별로 보면 2001년에는 한국통신, 삼성전기 및 국민, 한미, 하나 은행 종목을 초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말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우량주를 초과 보유하고 있다. 2001년 상위 5종목의 보유 비중은 47.6%이고, 2002년 말 상위 5종목의 비중은 전체 종목의 절반에 해당하는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 증가한 금액이다. 2002년말 상위 10종목의 보유비중도 67.2%로서 전년 56.2%에 비해 11.0% 증가하였다.

종목별로는 2001년에 한국통신, 삼성전기 및 국민, 한미, 하나은행 등 은행종목들을 초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삼성 전자, KT, SK텔레콤, 국민은행 등 상위 종목 대부분을 시장에 비해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국민연금기금보유 상위 5종목

	순위	국민연금	비중	시장	비중
2001	1	삼성전자	14.5	삼성전자	17.6
	2	한국통신	14.3	SK텔레콤	9.3
	3	국민은행	7.2	한국통신	6.1
	4	삼성전기	5.8	국민은행	5.8
	5	포항제철	5.8	한국전력	5.4
	계		47.6		44.2
2002	1	삼성전자	19.84	삼성전자	17.40
	2	KT	9.41	SK텔레콤	6.90
	3	SK텔레콤	8.00	KT	5.29
	4	국민은행	6.87	국민은행	4.66
	5	posco	5.30	한국전력	3.95
	계	-	49.42	-	38.20

2002년말 기준으로 투자비중 상위 10종목의 투자비중이 전체 주식투자액의 67%를 넘고 있어 일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5-7〉 주식 보유 상위 10개 종목 현황(2002.12.31 현재)

(단위: %)

순 위	종목명	비 중	비 고
1	삼성전자	19.84	
2	KT	9.41	
3	SK텔레콤	8.00	
4	국민은행	6.87	
5	POSCO	5.30	
6	한국전력	4.75	
7	LG전자	3.99	
8	삼성전기	3.30	
9	현대자동차	3.01	
10	삼성SDI	2.71	
합계		67.21	

※ 비중: 해당 종목 시가총액/보유 주식 시가총액.

〈표 5-8〉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기업별 지분율 현황

동양화재	4.079254079	대한해운	1.411457582	현대백화점	4.537688624
두산	1.096880268	동원증권	0.904016678	제일기획	1.738507218
대림산업	1.98804163	동원증권	0.904016678	신도리코	0.476556169
신동아화재	2.134704453	동원증권	0.904016678	포항제철	1.412200636
제일화재	8.050106843	동양고속	3.471892822	풍산	1.506024096
동아제약	0.038749283	삼성전자	0.547582683	한국통신공사	2.72240592
현대전자	0.222691797	L G 투자증권	2.809515292	한국가스공사	0.426993715
한진해운	0.447837353	L G 투자증권	2.809515292	담배인삼공사	0.966287067
삼성화재	0.515560555	L G 전선	3.105590062	한강기금	1.344323385
삼성화재	0.515560555	L G 건설	6.470588235	현대차	1.489639064
삼성물산	1.24933706	현대시멘트	1.555650871	삼성엔지	2.7016425
한화	0.326141412	삼성 S D I	3.422066109	K D S	1.744148493
L G 상사	1.619542647	하나은행	2.034042498	서울가스	1.320142857
동국제강	0.682873532	대덕전자	1.084625402	S K 텔레콤	0.358934847
제일모직	3.6	메리츠증권	2.968604443	한미캐피탈	4.160413366
현대해상	2.96163311	호텔신라	1.58526	국민은행	1.137793689
대상	0.706680303	삼성전기	3.247394224	주택은행	0.523345358

〈표 5-8〉 계속

신영증권	2.135036496	현대중공업	0.651513158	S K	1.16323103
한국철강	2.792166667	한화석화	0.491568034	대한재보험	2.341819569
코오롱	2.062104091	삼성중공업	0.259780207	오리온전기	2.414576246
아세아시멘트	1.331935125	현대상선	0.448878923	효성	1.113982008
수출포장	2.625	태림포장	0.807841828	대구은행	2.657365886
한국제지	3.196835772	현대상사	1.568236189	부산은행	0.7586141
한진	2.253614515	현대모비스	3.546910462	한국전력	0.562411353
L G 화재	2	삼성테크윈	2.456140351	데이콤	1.795932005
L G 전자	1.148015887	에스원	1.705300046	동부제강	0.325418687
두산건설	1.431265095	극동가스	0.6705	세종증권	1.548674451
현대증권	0.249415614	신한은행	0.72211536	한미은행	1.844733774
동양증권	0.911459672	L G 화학	2.0769962	대한항공	1.376108368
한진중공업	0.374491337	L G 화학	2.0769962		

3. 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를 통한 노동시장에의 공익적 영향력행사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인 국민에 대하여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일정한 위험허용한도 내에서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치 및 연금자산 가치에 제고에 기여하므로 국민연금 기금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를 올바르게 구축시켜 놓으면 기업지배구조위험은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적극적으로 주주권한을 행사한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CalPERS 개입 이전과 이후의 S&P500대비 초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개입 이전 5년간에는 평균 66.4%(연간 11.7%)의 음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이들 기업은 5년간 평균 41.3%(연간 7.2%)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투자대상회사별 주식 보유비중이 작고 보유기간이 짧아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적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매우 작다고 보아야 한다. 투자신탁, 투자신탁운용, 증권투자회사, 은행, 보험, 증권 등 연금 이외의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해당주식을 매각해버리는 Wall Street Rule을 사용하거나 행사하더라도 투자대상 기업 경영진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서 기업별 투자규모도 크기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거대연금은 index portfolio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공적연금은 수입 및 지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기업과 상업적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없어 이해상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의결권 행사를 법적으로 의무화

-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의무도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

—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

- 국민연금기금중 직접투자분은 투자하고 있는 보통주수가 2000년말의 84개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 그리고 외부자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한 없이 모두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간접투자 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첫째, 자산운용사, 투자전문사, 투신운용사 등에 간접투자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직접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이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직접투자 분에 대해서 내린 의결권 방향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이 직접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통주에 위탁운용사가 투자하는 경우는 한가지 방법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어 수탁사가 의결권을 대리 행사토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외부자문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의안을 분석하고 의결권 방향을 권고토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은행 등 수탁기관이 의결권을 위한 의안분석 능력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지배구조 기본 원칙 마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의 기본지침이 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Corporate Governance Core Principles)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 전담직원 및 위원회 마련

- 업무의 성격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를 기금운용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본부 내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하나의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만 하는 단계에서는 주식운용팀에 전담직원 한 사람을 두고 (가칭)의결권행사위원회(proxy committee)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외부 자문기관 활용

- 국민연금 내부직원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고 모든 투자대상 기업들의 주총 의안들을 일일이 분석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 관계자의 투자대상 기업 이사겸임

-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시의 강화

- 적극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시 강화와 관련하여 연금가입자들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요구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측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국민연금법에 규정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 준법감시인에 의한 감시

- 준법감시인은 의결권이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에 부합되게 행사되는 지 감시해야 하며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준법감시인은 또한,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감시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위해 준법감시인은 현재와 같이 기금운용본부장 밑에 둘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 6 장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다원화와 사각지대해소방안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은 자격관리와 징수가 손쉬운 사업장가입자의 양적인 신장 덕분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노출되지 않고 잦은 휴·폐업등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제도도입이후 양적으로 크게 신장을 보여온 사업장가입자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환경으로 인해 평균가입기간의 축소 또는 신고소득이 낮은 자영업으로의 이동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과 함께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같이 사업장가입자들의 평균가입기간이 감소하고 영세자영자로의 이전이 늘어가는 추세 속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16%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소득이 잘 노출되지 않는 자영자들의 소득하향신고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연금제도의 직역간 형평성 및 재정부담문제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상의 어려움이 많은 영세자영자의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방식으로는 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보험료부과방식으로는 납부예외자들을 포함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일부 사업장가입자들의 경우 퇴직금의 기업연금화가 실현되어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은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한 국민연금이외에는 노후소득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각지대해소를 이룰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제도는 불안정적인 고용등으로 인한 납부예외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초연금을 조세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한다면 또는 정액연금방식으로 하는 경우, 현재 납부예외와 같은 문제는 재연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노후소득보장의 2층체계의 역할을 하는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구조와 소요예산 그리고 재원확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제 1 절 조세방식기초연금제도의 급여대상과 급여수준

1. 급여대상

기초연금급여대상은 기존노령계층을 포함하고 국민연금수급자와 기존노령계층이 아니면서 사각지대에 속한 국민연금비수급자등 65세이상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거의 모든 국민이 기여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기존노령계층포함) 가구중위소득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초연금급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와 타 공적연금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는 현금급여를 수급함으로써 제외하는 것이고 타 공적연금수급자는 납세자로서 기여는 하지만 현재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국민연금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부담 또한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일부분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급여수준

기초연금액은 해당연도의 1인당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를 사용하였고 2003년의 경우 1인 기준 최저생계비(현금급여)는 313,224원이다. 기초연금급여의 수준을 설정하는데는 형평성을 최우선의 지표로 사용하였고 최대수급액은 200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313,224원의 2/3인 208,607원이 된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급여대상자가 되는 사람들과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등으로 급여대상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간에 차별을 두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비해 국민연금비기여자인 납부예외자와 기존노령계층은 급여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그 수준은 국민연금급여대상자들의 기초연금최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국민연금급여대상자들내에서는 우선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도록 하였고 생애평균소득수준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기초연금의 도입목적중의 하나는 사각지대해소에 있다. 사각지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으나 소득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아 보험료의 징수가 어려운 계층도 상당수 있다.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보다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중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연금제도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6-1> 대상별 기초연금액수준예시(2003년 기준)

급여대상		부분별 기초연금액				월기초 연금액	
		생애평균소득부분		가입기간부분 ¹			
국민연금 급여대상자	생애평 균소득 등급	1~15	A ² ×60%	가입 기간	10년	A×10%	146,094
					20년	A×30%	187,836
					30년	A×40%	208,707
		16~30	A×50%		10년	A×10%	125,224
					20년	A×30%	166,965
					30년	A×40%	187,836
		31~45	A×40%		10년	A×10%	104,353
					20년	A×30%	146,094
					30년	A×40%	166,965
국민연금급여 비대상자 (기초생활대상자와 타공적연금수급자는제외)	전가구 소득 계층	가구소득부분		국내거주기간부분			
		중위소득이상	A×0%				
		중위소득 이하	A×30%	거주 기간	10~19	A×5%	73,047
					20~29	A×10%	83,518
					30~40	A×15%	93,966

주: 1) A는 당해연도 1인기준최저생계비(현금급여)의 2/3로 정함. 2003년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는 313,224원이므로 A는 208,707원이 됨.

2) 가입기간은 10년을 초과하는 1년당 1.5%를 적용함. 예를 들어 15년은 17.5%, 25년은 32.5%가 각각 적용됨.

국민연금비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조세에 의한 것인 만큼 각종조세에 대한 기여는 국내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거주기간별로 차별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급여대상은 가구기준으로 중위소득이하인 가구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6-1>과 같이 기초연금액이 책정되는 경우 연금가입자의 최종소득대체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 6-2>와 같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소득자의 경우를 상정해서 계산해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140만원의 평균소득자가 10년, 20년, 30년을 국민연금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종소득대체율은 23.9%, 41.9%, 58.4%로 계산된다..

<표 6-2> 평균소득자의 가입기간별 최종소득대체율(2003년 기준)-1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액)	최종 소득대체율
10	15%	8.9% (125,224원)	23.9%
20	30%	11.1% (156,596원)	41.8%
30	45%	13.4% (187,836원)	58.4%

- 주: 1) 평균소득자는 생애평균소득이 14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임. 따라서 기초연금소득 대체율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급여로 환산해서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것임.
- 2)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는 시급한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재정안정화를 저부담·저급여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제도는 자영자의 소득과약문제 등으로 보험료의 적정한 부과와 소득활동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제도운영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저부담·저급여 즉, 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0%로 운영하고 부족한 노후소득은 기초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충족시키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표 6-3>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이 평균소득자기준 40년간입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의 최종소득 대체율을 계산한 것이다.

<표 6-3>에 의하면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 30년간입 30%로 하향조정되고 기초연금이 <표 6-1>과 같이 지급되면 최종소득대체율은 현행국민연금수준에 상응하는 대체율이 된다.

<표 6-3> 평균소득자의 가입기간별 최종소득대체율(2003년 기준)-2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액)	최종 소득대체율
10	10%	8.9% (125,224원)	18.9%
20	20%	11.1% (156,596원)	31.8%
30	30%	13.4% (187,836원)	43.4%

제 2 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1. 소요예산

기초연금대상자는 연도별 국민연금급여수혜자의 수와 노인인구추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정확한 소요예산은 가입자별 가입기간 및 소득자료가 제공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만을 확인해 보았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시점은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2008년 이후로 정하였다. 특례노령수급자는 연금기여기간이 10년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급여비 대상자중 거주기간 30~40년에 해당되는 월 93,966원으로 정하였다. 감액노령연금수급자들은 개인별로 가입기간이 10년에서 19년으로 다양하므로 추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득등급 16~30의 가입기간 15년에 해당되는 기초연금액 140,936원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완전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수급자들 또한 가입기간이 상이하고 수급당시 연령이 다양하므로 2015년까지 이들의 평균가입기간은 20년으로 하였고 2015년 이후 2030년까지는 평균가입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2015년까지는 156,596원, 2016년부터 2030년은 187,836원으로 정하였다. 기존노령계층 및 국민연금사각지대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30년이상 거주한 금액인 93,966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표 6-4〉 연도별 기초연금수급자수 추계

(단위: 천명)

연도	국민연금급여대상자(A)					국민연금급여비대상자
	특례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완전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기존노령계층 또는 국민연금사각지대
2008	1923	107	9	117	35	1,438
2015	1665	553	159	326	154	1,920
2020	1415	1,248	404	611	294	2,054
2025	1104	2,108	805	963	376	2,469
2030	755	2,766	1,304	1,378	362	2,928

- 주: 1) 국민연금급여비대상자는 $[(65\text{세 노인인구} - \text{국민연금급여대상자}) \times 65\%]$ - 타공적연금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 로 구하였음.
 2) 노인이 있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중 중위소득이하인 가구의 비중을 65%로 추정하였고 타공적연금대상자는 2003년 실적인 25만명을 그리고 65세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002년 기준인 97,424명을 모든 연도에 적용하였음
 3) 연금수급자추계는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에서 인용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많은 가정하에 대략적인 금액만을 추계한 것으로서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가입이력과 소득등급 그리고 중위소득이하 노인이 있는 가구의 비중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사용될 경우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경우 월 3,5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의 저하를 우려하여 추계기간을 2030년

으로 한정하였다. 2030년에는 월 1조 2천억원의 재정소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5〉 연도별 기초연금소요예산 추정액

(단위: 천명)

연도	국민연금급여대상자					국민연금급여 비대상자	월총 소요예산 (단위:억원)
	특례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완전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기존노령계층 또는 국민연금사각지대	
2008	1923× 93,966원	107× 140,936원	9× 156,596원	117× 156,596원	35× 156,596원	1,438× 93,966원	3,561
2015	1665× 93,966원	553× 140,936원	159× 156,596원	326× 156,596원	154× 156,596원	1,920× 93,966원	5,148
2020	1415× 93,966원	1,248× 140,936원	404× 187,836원	611× 187,836원	294× 187,836원	2,054× 93,966원	7,068
2025	1104× 93,966원	2,108× 140,936원	805× 187,836원	963× 187,836원	376× 187,836원	2,469× 93,966원	9,711
2030	755× 93,966원	2,766× 140,936원	1,304× 187,836원	1,378× 187,836원	362× 187,836원	2,928× 93,966원	12,125

주: 연도별 소요예산은 2003년도 가격으로 계산된 것임.

2. 재원확보방안

기초연금은 조세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만 한다. 2008년도 기초연금소요예산은 월간 3,561억원 연간 42,732억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조세 총부담액은 2002년말기준으로 1,354,935억원 이며 이 중에서 국세가 1,039,678억원, 지방세가 315,25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963,812억원으로 조세부담율은 22.7%가 된다. 2008년부터 42,732억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연간 조세부담액은 397,667억원이며 조세부담율은 22.7%에서 조금 상승한 23.43%로 올라가게 된다.

이 수준은 미국, 일본 보다 약간 높아지는 수준이고 프랑스, 영국, 이태리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일본과 미국은 정부의 부채규

모가 상당히 커서 일반회계상의 조세부담으로는 국민부담의 국가간 비교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국가부채가 크지 않아 이들 국가보다 조세부담율이 상승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진정한 부담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표 6-6〉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단위: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조세부담율	22.7(23.4)	17.2	22.7	31.0	21.7	28.9	29.6

주: 한국의 ()안의 조세부담률은 기초연금도입이후의 수치임.

우리나라 국세의 주요세목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국세의 총징수액은 96조 6천억원이며 이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가가치세로 32.71%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19.91%와 19.83%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2088년에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2003년도 가격으로 4조 2,732억원이 소요된다.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세와 같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세목내에서 추가 징수하는 것이 조세저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부 세목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일부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조세저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조세의 목적이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재원의 성격도 있지만 부적절한 소비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특별소비세 와 주세 그리고 상속세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항목에 부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소요예산의 확보는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특별소비세중 유흥업종과 관련된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현재 부과·징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상당한 소득이 탈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1인당 주류소비가 세계 1, 2위를 차지할 만큼 주류 소비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류의

소비는 종류별로 소비량을 취급면허세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류취급을 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 별도의 취급면허세등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음주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인상과 철저한 부과·징수를 통해 기초연금재원의 상당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머지 일부 재원은 상속·증여세의 인상을 통해 충당하고 증권거래세와 교통세에서도 일부 추가징수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와 같은 방안은 본 연구진이 일례를 들어 설명을 한 것으로 상세한 재원확보안은 정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

〈표 6-7〉 우리나라 세목별 국세징수액

(단위: 10억원, %)

세목	징수액	비중	세목	징수액	비중
부가가치세	31,608	32.71	주세	2,655	2.74
법인세	19,243	19.91	농어촌특별세	1,379	1.42
소득세	19,160	19.83	상속·증여세	2,381	0.88
교통세	9,479	9.81	증권거래세	2,035	2.10
특별소비세	4,288	4.43	기타	856	2.46
교육세	3,532	3.65	합계	96,616	100.00

참 고 문 헌

-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 박래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홍익대 경제연구 14』, 1999.
- 어수봉,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정책토론회』, 1997.
- 장지연, 『고연령자의 임금과 취업형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안주엽 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연구01-05,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2001. 11.

부 록

〈부표 1〉 1998년 퇴사 남성사업장가입자의 2003년 가입유형

(단위: 명, %)

퇴사당 시연령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10,003 (42.7)	9,929 (99.3)	74 (0.7)	9,425 (40.2)	5,731 (60.8)	3,694 (39.2)	4,000 (17.1)	23,428 (100.0)
46세	10,825 (42.2)	10,743 (99.2)	82 (0.8)	10,422 (40.6)	6,443 (61.8)	3,979 (38.2)	4,411 (17.2)	25,658 (100.0)
47세	7,890 (42.2)	7,846 (99.4)	44 (0.6)	7,575 (40.5)	4,646 (61.3)	2,929 (38.7)	3,248 (17.4)	18,713 (100.0)
48세	8,450 (42.1)	8,398 (99.4)	52 (0.2)	8,211 (40.9)	5,201 (63.3)	3,010 (36.7)	3,404 (17.0)	20,065 (100.0)
49세	8,523 (41.6)	8,479 (99.5)	44 (0.5)	8,458 (41.3)	5,321 (62.9)	3,137 (37.1)	3,503 (17.1)	20,484 (100.0)
50세	8,290 (40.2)	8,237 (99.4)	53 (0.6)	8,535 (41.4)	5,398 (63.2)	3,137 (36.8)	3,802 (18.4)	20,627 (100.0)
전체	53,981 (41.9)	53,632 (99.4)	349 (0.6)	52,626 (40.8)	32,740 (62.2)	19,886 (37.8)	22,368 (17.3)	128,975 (100.0)

〈부표 2〉 2000년 퇴사 남성사업장가입자의 2003년 가입유형

(단위: 명, %)

퇴사당시 연령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11,387 (49.8)	11,316 (99.4)	71 (0.6)	8,000 (35.0)	4,579 (57.2)	3,421 (42.8)	3,485 (15.2)	22,872 (100.0)
46세	9,475 (48.8)	9,408 (99.3)	67 (0.7)	7,024 (36.1)	3,992 (56.8)	3,032 (43.2)	2,933 (15.1)	19,432 (100.0)
47세	8,297 (49.4)	8,244 (99.4)	53 (0.6)	5,853 (34.8)	3,353 (57.3)	2,500 (42.7)	2,657 (15.8)	16,807 (100.0)
48세	8,832 (48.3)	8,777 (99.4)	55 (0.6)	6,438 (35.2)	3,623 (56.3)	2,815 (43.7)	3,005 (16.4)	18,275 (100.0)
49세	6,359 (48.1)	6,327 (99.5)	32 (0.5)	4,728 (35.8)	2,698 (57.1)	2,030 (42.9)	2,128 (16.1)	13,215 (100.0)
50세	7,039 (48.2)	6,984 (99.2)	55 (0.8)	5,178 (35.4)	2,975 (57.5)	2,203 (42.5)	2,398 (16.4)	14,615 (100.0)
전체	51,389 (48.8)	51,056 (99.4)	333 (0.6)	37,221 (35.4)	21,220 (57.0)	16,001 (43.0)	16,606 (15.8)	105,216 (100.0)

〈부표 3〉 1998년 퇴사 여성사업장가입자의 2003년 가입유형

(단위: 명, %)

퇴사당시 연령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2,419 (32.7)	2,410 (99.6)	9 (0.4)	1,632 (22.0)	846 (51.8)	786 (48.2)	3,352 (45.3)	7,403 (100.0)
46세	2,818 (32.4)	2,809 (99.7)	9 (0.3)	1,908 (21.9)	950 (49.8)	958 (50.2)	3,975 (45.7)	8,701 (100.0)
47세	2,117 (33.0)	2,110 (99.7)	7 (0.3)	1,408 (21.9)	680 (48.3)	728 (51.7)	2,895 (45.1)	6,420 (100.0)
48세	2,341 (32.6)	2,339 (99.9)	2 (0.1)	1,711 (23.9)	811 (47.4)	900 (52.6)	3,119 (43.5)	7,171 (100.0)
49세	2,054 (30.0)	2,048 (99.7)	6 (0.3)	1,822 (26.6)	846 (46.4)	976 (53.6)	2,981 (43.5)	6,857 (100.0)
50세	1,992 (28.5)	1,987 (99.7)	5 (0.3)	2,024 (28.9)	954 (47.1)	1,070 (52.9)	2,985 (42.6)	7,001 (100.0)
전체	13,741 (31.6)	13,703 (99.7)	38 (0.3)	10,505 (24.1)	5,087 (48.4)	5,418 (51.6)	19,307 (44.3)	43,553 (100.0)

〈부표 4〉 2000년 퇴사 여성사업장가입자의 2003년 가입유형

(단위: 명, %)

퇴사당 시연령 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3,591 (39.2)	3,578 (99.6)	13 (0.4)	1,693 (18.5)	842 (49.7)	851 (50.3)	3,870 (42.3)	9,154 (100.0)
46세	3,046 (40.3)	3,036 (99.7)	10 (0.3)	1,457 (19.3)	728 (50.0)	729 (50.0)	3,060 (40.5)	7,563 (100.0)
47세	2,626 (40.4)	2,620 (99.8)	6 (0.2)	1,300 (20.0)	585 (45.0)	715 (55.0)	2,571 (39.6)	6,497 (100.0)
48세	2,818 (39.2)	2,814 (99.9)	4 (0.1)	1,527 (21.3)	774 (50.7)	753 (49.3)	2,836 (39.5)	7,181 (100.0)
49세	2,146 (40.2)	2,139 (99.7)	7 (0.3)	1,104 (20.7)	554 (50.2)	550 (49.8)	2,088 (39.1)	5,338 (100.0)
50세	2,189 (38.9)	2,187 (99.9)	2 (0.1)	1,325 (23.6)	627 (47.3)	698 (52.7)	2,107 (37.5)	5,621 (100.0)
전체	16,416 (39.7)	16,374 (99.7)	42 (0.3)	8,406 (20.3)	4,110 (48.9)	4,296 (51.1)	16,532 (40.0)	41,354 (100.0)

〈부표 5〉 1998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45~55세)

(단위: 명, %)

퇴사당 시연령 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9,644 (42.4)	9,572 (99.3)	72 (0.7)	9,211 (40.5)	5,592 (60.7)	3,619 (39.3)	3,911 (17.2)	22,766 (100.0)
46세	10,471 (42.0)	10,389 (99.2)	82 (0.8)	10,148 (40.7)	6,254 (61.6)	3,894 (38.4)	4,316 (17.3)	24,935 (100.0)
47세	7,664 (42.1)	7,618 (99.4)	46 (0.6)	7,394 (40.6)	4,527 (61.2)	2,867 (38.8)	3,160 (17.3)	18,218 (100.0)
48세	8,196 (42.0)	8,145 (99.4)	51 (0.6)	7,992 (40.9)	5,067 (63.4)	2,925 (36.6)	3,329 (17.1)	19,517 (100.0)
49세	8,237 (41.4)	8,190 (99.4)	47 (0.6)	8,252 (41.5)	5,183 (62.8)	3,069 (37.2)	3,403 (17.1)	19,892 (100.0)
50세	8,053 (40.1)	7,997 (99.3)	56 (0.7)	8,337 (41.5)	5,263 (63.1)	3,074 (38.9)	3,705 (18.4)	20,095 (100.0)
51세	8,014 (39.8)	7,962 (99.4)	52 (0.6)	8,036 (39.9)	5,109 (63.6)	2,927 (36.4)	4,076 (20.3)	20,126 (100.0)
52세	6,338 (38.0)	6,295 (99.3)	43 (0.7)	6,561 (39.3)	4,233 (64.5)	2,328 (35.5)	3,799 (22.8)	16,698 (100.0)
53세	5,600 (36.7)	5,566 (99.4)	34 (0.6)	5,812 (38.1)	3,636 (62.6)	2,176 (37.4)	3,848 (25.2)	15,260 (100.0)
54세	5,648 (33.9)	5,606 (99.3)	42 (0.7)	5,890 (35.4)	3,849 (65.3)	2,041 (34.7)	5,112 (30.7)	16,650 (100.0)
55세	2,009 (11.4)	1,998 (99.5)	11 (0.5)	2,742 (15.6)	1,940 (70.8)	802 (29.2)	12,810 (72.9)	17,561 (100.0)
전체	79,874 (37.7)	79,338 (99.3)	536 (0.7)	80,375 (38.0)	50,653 (63.0)	29,722 (37.0)	51,469 (24.3)	211,718 (100.0)

〈부표 6〉 2000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47~57세)

(단위: 명, %)

퇴사당시 연령 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7세	7,963 (49.2)	7,911 (99.3)	52 (0.7)	5,674 (35.0)	3,247 (57.2)	2,427 (42.8)	2,561 (15.8)	16,198 (100.0)
48세	8,499 (48.1)	8,449 (99.4)	50 (0.6)	6,249 (35.4)	3,519 (56.3)	2,730 (43.7)	2,919 (16.5)	17,667 (100.0)
49세	6,134 (48.1)	6,102 (99.5)	32 (0.5)	4,576 (35.9)	2,617 (57.2)	1,959 (42.8)	2,048 (16.1)	12,758 (100.0)
50세	6,787 (48.0)	6,731 (99.2)	56 (0.8)	5,018 (35.5)	2,883 (57.5)	2,135 (42.5)	2,327 (16.5)	14,132 (100.0)
51세	6,759 (48.7)	6,725 (99.5)	34 (0.5)	4,904 (35.3)	2,773 (56.5)	2,131 (43.5)	2,215 (16.0)	13,878 (100.0)
52세	6,759 (48.3)	6,717 (99.4)	42 (0.6)	4,851 (34.7)	2,760 (56.9)	2,091 (43.1)	2,377 (17.0)	13,987 (100.0)
53세	6,571 (46.8)	6,533 (99.4)	38 (0.6)	4,690 (33.4)	2,718 (58.0)	1,972 (42.0)	2,789 (19.9)	14,050 (100.0)
54세	5,187 (44.4)	5,150 (99.3)	37 (0.7)	3,848 (33.0)	2,331 (60.6)	1,517 (39.4)	2,641 (22.6)	11,676 (100.0)
55세	4,867 (41.8)	4,838 (99.4)	29 (0.6)	3,690 (31.7)	2,198 (59.6)	1,492 (40.4)	3,083 (26.5)	11,640 (100.0)
56세	4,935 (42.4)	4,911 (99.5)	24 (0.5)	3,785 (32.5)	2,349 (62.1)	1,436 (37.9)	2,917 (25.1)	11,637 (100.0)
57세	1,768 (15.3)	1,755 (99.3)	13 (0.7)	2,128 (18.4)	1,485 (69.8)	643 (30.2)	7,697 (66.4)	11,593 (100.0)
전체	66,229 (44.4)	65,822 (99.4)	407 (0.6)	49,413 (33.1)	28,880 (58.4)	20,533 (41.6)	33,574 (22.5)	149,216 (100.0)

〈부표 7〉 2000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45~55세)

(단위: 명, %)

퇴사당시 연령 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5세	2,362 (32.5)	2,354 (99.7)	8 (0.3)	1,607 (22.1)	832 (51.8)	775 (48.2)	3,291 (45.3)	7,260 (100.0)
46세	2,752 (32.3)	2,742 (99.6)	10 (0.3)	1,859 (21.9)	925 (49.8)	934 (50.2)	3,897 (45.8)	8,508 (100.0)
47세	2,075 (32.9)	2,067 (99.6)	8 (0.4)	1,381 (21.9)	667 (48.3)	714 (51.7)	2,851 (45.2)	6,307 (100.0)
48세	2,252 (32.2)	2,250 (99.9)	2 (0.1)	1,670 (23.9)	785 (47.0)	885 (53.0)	3,073 (43.9)	6,995 (100.0)
49세	1,992 (29.7)	1,985 (99.6)	7 (0.4)	1,779 (26.5)	829 (46.6)	950 (53.4)	2,935 (43.8)	6,706 (100.0)
50세	1,940 (28.3)	1,935 (99.7)	5 (0.3)	1,980 (28.9)	928 (46.9)	1,052 (53.1)	2,941 (42.9)	6,861 (100.0)
51세	1,774 (26.4)	1,769 (99.7)	5 (0.3)	2,057 (30.6)	1,060 (51.5)	997 (48.5)	2,887 (43.0)	6,718 (100.0)
52세	1,319 (24.6)	1,318 (99.9)	1 (0.1)	1,755 (32.8)	872 (49.7)	883 (50.3)	2,277 (42.6)	5,351 (100.0)
53세	1,118 (23.0)	1,117 (99.9)	1 (0.1)	1,727 (35.5)	865 (50.1)	862 (49.9)	2,024 (41.6)	4,869 (100.0)
54세	1,158 (21.7)	1,157 (99.9)	1 (0.1)	1,774 (33.2)	932 (52.5)	842 (47.5)	2,407 (45.1)	5,339 (100.0)
55세	470 (8.0)	469 (99.8)	1 (0.2)	1,020 (17.3)	622 (61.0)	398 (39.0)	4,389 (74.7)	5,879 (100.0)
전체	19,212 (27.1)	19,163 (99.7)	49 (0.3)	18,609 (26.3)	9,317 (50.1)	9,292 (49.9)	32,972 (46.6)	70,793 (100.0)

〈부표 8〉 2000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가입유형(47~57세)

(단위: 명, %)

퇴사당 시연령 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비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합 계	납부자	비납부자		
47세	1,415 (46.6)	1,407 (99.4)	8 (0.6)	919 (30.2)	474 (51.6)	445 (48.4)	705 (23.2)	3,039 (100.0)
48세	2,742 (39.2)	2,738 (99.9)	4 (0.1)	1,487 (21.3)	748 (50.3)	739 (49.7)	2,763 (39.5)	6,992 (100.0)
49세	2,086 (40.1)	2,079 (99.7)	7 (0.3)	1,079 (20.8)	541 (50.1)	538 (49.9)	2,033 (39.1)	5,198 (100.0)
50세	2,126 (38.9)	2,124 (99.9)	2 (0.1)	1,282 (23.4)	612 (47.7)	670 (52.3)	2,060 (37.7)	5,468 (100.0)
51세	2,044 (38.0)	2,039 (99.8)	5 (0.2)	1,410 (26.2)	633 (44.9)	777 (55.1)	1,923 (35.8)	5,377 (100.0)
52세	1,904 (36.1)	1,902 (99.9)	2 (0.1)	1,472 (27.9)	694 (47.1)	778 (52.9)	1,905 (36.1)	5,281 (100.0)
53세	1,818 (34.9)	1,818 (100.0)	0 (0.0)	1,501 (28.8)	739 (49.2)	762 (50.8)	1,897 (36.4)	5,216 (100.0)
54세	1,309 (32.9)	1,308 (99.9)	1 (0.1)	1,206 (30.3)	589 (48.8)	617 (51.2)	1,469 (36.9)	3,984 (100.0)
55세	1,197 (30.1)	1,195 (99.8)	2 (0.2)	1,234 (31.1)	625 (50.6)	609 (49.4)	1,541 (38.8)	3,972 (100.0)
56세	1,227 (31.0)	1,225 (99.8)	2 (0.2)	1,269 (32.0)	686 (54.1)	583 (45.9)	1,466 (37.0)	3,962 (100.0)
57세	453 (11.9)	453 (100.0)	0 (0.0)	788 (20.8)	530 (67.3)	258 (32.7)	2,552 (67.3)	3,793 (100.0)
전체	18,321 (35.0)	18,288 (99.8)	33 (0.2)	13,647 (26.1)	6,871 (50.3)	6,776 (49.7)	20,314 (38.9)	52,282 (100.0)

〈부표 9〉 1998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5,281 (52.8)	3,489 (34.9)	1,233 (12.3)	10,003 (100.0)
	지역	1,636 (12.2)	11,535 (85.9)	254 (1.9)	13,425 (100.0)
46세	사업장	5,501 (50.8)	3,943 (36.4)	1,381 (12.8)	10,825 (100.0)
	지역	1,779 (12.0)	12,808 (86.3)	246 (1.7)	14,833 (100.0)
47세	사업장	3,930 (49.8)	3,008 (38.1)	952 (12.1)	7,890 (100.0)
	지역	1,255 (11.6)	9,373 (86.6)	195 (1.8)	10,823 (100.0)
48세	사업장	4,084 (48.3)	3,348 (39.6)	1,018 (12.0)	8,450 (100.0)
	지역	1,385 (11.9)	10,023 (86.3)	207 (1.8)	11,615 (100.0)
49세	사업장	3,981 (46.7)	3,560 (41.8)	982 (11.5)	8,523 (100.0)
	지역	1,332 (11.1)	10,365 (86.7)	264 (2.2)	11,961 (100.0)
50세	사업장	3,787 (45.7)	3,576 (43.1)	927 (11.2)	8,290 (100.0)
	지역	1,387 (11.2)	10,707 (86.8)	243 (2.0)	12,337 (100.0)

주: 지역가입항목에서 등급하락 수치는 미가입자 및 가입상태가 취득 이외인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함.

〈부표 10〉 2000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7,192 (63.2)	2,447 (21.5)	1,748 (15.4)	11,387 (100.0)
	지역	1,723 (15.0)	9,445 (82.2)	317 (2.8)	11,485 (100.0)
46세	사업장	5,945 (62.7)	2,081 (22.0)	1,449 (15.3)	9,475 (100.0)
	지역	1,506 (15.1)	8,183 (82.2)	268 (2.7)	9,957 (100.0)
47세	사업장	5,110 (61.6)	1,853 (22.3)	1,334 (16.1)	8,297 (100.0)
	지역	1,235 (14.5)	7,027 (82.6)	248 (2.9)	8,510 (100.0)
48세	사업장	5,506 (62.3)	1,993 (22.6)	1,333 (15.1)	8,832 (100.0)
	지역	1,365 (14.5)	7,807 (82.7)	271 (2.9)	9,443 (100.0)
49세	사업장	3,935 (61.9)	1,430 (22.5)	994 (15.6)	6,359 (100.0)
	지역	1,011 (14.7)	5,612 (81.9)	233 (3.4)	6,856 (100.0)
50세	사업장	4,354 (61.9)	1,677 (23.8)	1,008 (14.3)	7,039 (100.0)
	지역	1,150 (15.2)	6,197 (81.8)	229 (3.0)	7,576 (100.0)

주: 지역가입항목에서 등급하락 수치는 미가입자 및 가입상태가 취득 이외인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함.

〈부표 11〉 1998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1,775 (73.4)	508 (21.0)	136 (5.6)	2,419 (100.0)
	지역	501 (10.1)	4,442 (89.1)	41 (0.8)	4,984 (100.0)
46세	사업장	2,050 (72.7)	610 (21.6)	158 (5.6)	2,818 (100.0)
	지역	558 (9.5)	5,260 (89.4)	65 (1.1)	5,883 (100.0)
47세	사업장	1,507 (71.2)	471 (22.2)	139 (6.6)	2,117 (100.0)
	지역	449 (10.4)	3,828 (89.0)	26 (0.6)	4,303 (100.0)
48세	사업장	1,605 (68.6)	579 (24.7)	157 (6.7)	2,341 (100.0)
	지역	491 (10.2)	4,293 (88.9)	46 (1.0)	4,830 (100.0)
49세	사업장	1,339 (65.2)	554 (27.0)	161 (7.8)	2,054 (100.0)
	지역	524 (10.9)	4,230 (88.1)	49 (1.0)	4,803 (100.0)
50세	사업장	1,295 (65.0)	547 (27.5)	150 (7.5)	1,992 (100.0)
	지역	581 (11.6)	4,383 (87.5)	45 (0.9)	5,009 (100.0)

주: 지역가입항목에서 등급하락 수치는 미가입자 및 가입상태가 취득 이외인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함.

〈부표 12〉 2000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2,856 (79.5)	445 (12.4)	290 (8.1)	3,591 (100.0)
	지역	586 (10.5)	4,929 (88.6)	48 (0.9)	5,563 (100.0)
46세	사업장	2,449 (80.4)	388 (12.7)	209 (6.9)	3,046 (100.0)
	지역	504 (11.2)	3,956 (87.6)	57 (1.3)	4,517 (100.0)
47세	사업장	2,060 (78.4)	386 (14.7)	180 (6.9)	2,626 (100.0)
	지역	411 (10.6)	3,415 (88.2)	45 (1.2)	3,871 (100.0)
48세	사업장	2,178 (77.3)	425 (15.1)	215 (7.6)	2,818 (100.0)
	지역	516 (11.8)	3,785 (86.8)	62 (1.4)	4,363 (100.0)
49세	사업장	1,713 (79.8)	306 (14.3)	127 (5.9)	2,146 (100.0)
	지역	394 (12.3)	2,751 (86.2)	47 (1.5)	3,192 (100.0)
50세	사업장	1,685 (77.0)	356 (16.3)	148 (6.8)	2,189 (100.0)
	지역	446 (13.0)	2,939 (85.6)	47 (1.4)	3,432 (100.0)

주: 지역가입항목에서 등급하락 수치는 미가입자 및 가입상태가 취득 이외인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함.

〈부표 13〉 1998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45~55세)

(단위: 명, %)

연령	구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5,072 (52.6)	3,392 (35.2)	1,180 (12.2)	9,644 (100.0)
	지역	1,599 (12.2)	11,276 (85.9)	247 (1.9)	13,122 (100.0)
46세	사업장	5,286 (50.5)	3,840 (36.7)	1,345 (12.8)	10,471 (100.0)
	지역	1,729 (12.0)	12,493 (86.4)	242 (1.7)	14,464 (100.0)
47세	사업장	3,789 (49.4)	2,952 (38.5)	923 (12.0)	7,664 (100.0)
	지역	1,214 (11.5)	9,149 (86.7)	191 (1.8)	10,554 (100.0)
48세	사업장	3,920 (47.8)	3,289 (40.1)	987 (12.0)	8,196 (100.0)
	지역	1,347 (11.9)	9,777 (86.4)	197 (1.7)	11,321 (100.0)
49세	사업장	3,818 (46.4)	3,468 (42.1)	951 (11.5)	8,237 (100.0)
	지역	1,285 (11.0)	10,108 (86.7)	262 (2.2)	11,655 (100.0)
50세	사업장	3,656 (45.4)	3,511 (43.6)	886 (11.0)	8,053 (100.0)
	지역	1,658 (11.3)	10,447 (86.8)	237 (2.0)	12,042 (100.0)
51세	사업장	3,514 (43.8)	3,622 (45.2)	878 (11.0)	8,014 (100.0)
	지역	1,388 (11.5)	10,425 (86.1)	299 (2.5)	12,112 (100.0)
52세	사업장	2,641 (41.7)	3,019 (47.6)	678 (10.7)	6,338 (100.0)
	지역	1,131 (10.9)	8,981 (86.7)	248 (2.4)	10,360 (100.0)
53세	사업장	2,293 (40.9)	2,761 (49.3)	546 (9.8)	5,600 (100.0)
	지역	1,080 (11.2)	8,357 (86.5)	223 (2.3)	9,660 (100.0)
54세	사업장	2,313 (41.0)	2,773 (49.1)	562 (10.0)	5,648 (100.0)
	지역	1,235 (11.2)	9,520 (86.5)	247 (2.2)	11,002 (100.0)
55세	사업장	759 (37.8)	1,065 (53.0)	185 (9.2)	2,009 (100.0)
	지역	722 (4.6)	14,678 (94.4)	152 (1.0)	15,552 (100.0)

〈부표 14〉 2000년 남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47~57세)

(단위: 명, %)

연령	구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7세	사업장	4,893 (61.4)	1,766 (22.2)	1,304 (16.4)	7,963 (100.0)
	지역	1,206 (14.6)	6,795 (82.5)	234 (2.8)	8,235 (100.0)
48세	사업장	5,278 (62.1)	1,925 (22.6)	1,296 (15.2)	8,499 (100.0)
	지역	1,323 (14.4)	7,584 (82.7)	261 (2.8)	9,168 (100.0)
49세	사업장	3,779 (61.6)	1,380 (22.5)	975 (15.9)	6,134 (100.0)
	지역	985 (14.9)	5,409 (81.7)	230 (3.5)	6,624 (100.0)
50세	사업장	4,173 (61.5)	1,623 (23.9)	991 (14.6)	6,787 (100.0)
	지역	1,118 (15.2)	6,007 (81.8)	220 (3.0)	7,345 (100.0)
51세	사업장	4,162 (61.6)	1,628 (24.1)	969 (14.3)	6,759 (100.0)
	지역	1,100 (15.5)	5,794 (81.4)	224 (3.1)	7,118 (100.0)
52세	사업장	4,214 (62.3)	1,581 (23.4)	964 (14.3)	6,759 (100.0)
	지역	1,126 (15.6)	5,862 (81.1)	240 (3.3)	7,228 (100.0)
53세	사업장	4,007 (61.0)	1,675 (25.5)	889 (13.5)	6,571 (100.0)
	지역	1,160 (15.5)	6,041 (80.8)	278 (3.7)	7,479 (100.0)
54세	사업장	3,173 (61.2)	1,380 (26.6)	634 (12.2)	5,187 (100.0)
	지역	1,037 (16.0)	5,212 (80.3)	240 (3.7)	6,489 (100.0)
55세	사업장	2,777 (57.1)	1,535 (31.5)	555 (11.4)	4,867 (100.0)
	지역	977 (14.4)	5,574 (82.3)	222 (3.3)	6,773 (100.0)
56세	사업장	2,872 (58.2)	1,552 (31.4)	511 (10.4)	4,935 (100.0)
	지역	1,063 (15.9)	5,367 (80.1)	272 (4.1)	6,702 (100.0)
57세	사업장	1,093 (61.8)	494 (27.9)	181 (10.2)	1,768 (100.0)
	지역	853 (8.7)	8,811 (89.7)	161 (1.6)	9,825 (100.0)

〈부표 15〉 1998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45~55세)

(단위: 명, %)

연령	구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5세	사업장	1,726 (73.1)	502 (21.3)	134 (5.7)	2,362 (100.0)
	지역	491 (10.0)	4,365 (89.1)	42 (0.9)	4,898 (100.0)
46세	사업장	1,996 (72.5)	602 (21.9)	154 (5.6)	2,752 (100.0)
	지역	545 (9.5)	5,148 (89.4)	63 (1.1)	5,756 (100.0)
47세	사업장	1,474 (71.0)	465 (22.4)	136 (6.6)	2,075 (100.0)
	지역	443 (10.5)	3,763 (88.9)	26 (0.6)	4,232 (100.0)
48세	사업장	1,540 (68.4)	556 (24.7)	156 (6.9)	2,252 (100.0)
	지역	475 (10.0)	4,223 (89.0)	45 (0.9)	4,743 (100.0)
49세	사업장	1,292 (64.9)	547 (27.5)	153 (7.7)	1,992 (100.0)
	지역	508 (10.8)	4,159 (88.2)	47 (1.0)	4,714 (100.0)
50세	사업장	1,261 (65.0)	533 (27.5)	146 (7.5)	1,940 (100.0)
	지역	562 (11.4)	4,315 (87.7)	44 (0.9)	4,921 (100.0)
51세	사업장	1,119 (63.1)	509 (28.7)	146 (8.2)	1,774 (100.0)
	지역	701 (14.2)	4,193 (84.8)	50 (1.0)	4,944 (100.0)
52세	사업장	807 (61.2)	409 (31.0)	103 (7.8)	1,319 (100.0)
	지역	548 (13.6)	3,445 (85.4)	39 (1.0)	4,032 (100.0)
53세	사업장	706 (63.1)	300 (26.8)	112 (10.0)	1,118 (100.0)
	지역	586 (15.6)	3,124 (83.3)	41 (1.1)	3,751 (100.0)
54세	사업장	711 (61.4)	354 (30.6)	93 (8.0)	1,158 (100.0)
	지역	626 (15.0)	3,492 (83.5)	63 (1.5)	4,181 (100.0)
55세	사업장	300 (63.8)	128 (27.2)	42 (8.9)	470 (100.0)
	지역	424 (7.8)	4,949 (91.5)	36 (0.7)	5,409 (100.0)

〈부표 16〉 2000년 여성퇴사자의 2003년 등급변동(47~57세)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47세	사업장	966 (68.3)	257 (18.2)	192 (13.6)	1,415 (100.0)
	지역	199 (12.3)	1,391 (85.7)	34 (2.1)	1,624 (100.0)
48세	사업장	2,110 (77.0)	421 (15.4)	211 (7.7)	2,742 (100.0)
	지역	498 (11.7)	3,691 (86.8)	61 (1.4)	4,250 (100.0)
49세	사업장	1,666 (79.9)	296 (14.2)	124 (5.9)	2,086 (100.0)
	지역	382 (12.3)	2,683 (86.2)	47 (1.5)	3,112 (100.0)
50세	사업장	1,639 (77.1)	345 (16.2)	142 (6.7)	2,126 (100.0)
	지역	435 (13.0)	2,861 (85.6)	46 (1.4)	3,342 (100.0)
51세	사업장	1,600 (78.3)	313 (15.3)	131 (6.4)	2,044 (100.0)
	지역	470 (14.1)	2,818 (84.5)	45 (1.4)	3,333 (100.0)
52세	사업장	1,473 (77.4)	291 (15.3)	140 (7.4)	1,904 (100.0)
	지역	524 (15.5)	2,801 (82.9)	52 (1.5)	3,377 (100.0)
53세	사업장	1,368 (75.2)	320 (17.6)	130 (7.2)	1,818 (100.0)
	지역	559 (16.5)	2,784 (81.9)	55 (1.6)	3,398 (100.0)
54세	사업장	1,006 (76.9)	196 (15.0)	107 (8.2)	1,309 (100.0)
	지역	437 (16.3)	2,181 (81.5)	57 (1.2)	2,675 (100.0)
55세	사업장	881 (73.6)	220 (18.4)	96 (8.0)	1,197 (100.0)
	지역	453 (16.3)	2,261 (81.5)	61 (2.2)	2,775 (100.0)
56세	사업장	933 (76.0)	205 (16.7)	89 (7.3)	1,227 (100.0)
	지역	533 (19.5)	2,143 (78.4)	59 (2.2)	2,735 (100.0)
57세	사업장	346 (76.4)	67 (14.8)	40 (8.8)	453 (100.0)
	지역	445 (13.3)	2,849 (85.3)	46 (1.4)	3,340 (100.0)

〈부표 17〉 1998년 대비 2003년 평균소득변동의 성별비교

(단위: 원, 명, %)

연 령	구 분	남 성		여 성	
		평균소득	인 원	평균소득	인 원
45세	사업장	40,891	10,003 (42.7)	213,026	2,419 (32.7)
	지역	-1,240,845	13,425 (57.3)	-708,614	4,984 (67.3)
46세	사업장	-4,558	10,825 (42.2)	199,801	2,818 (32.4)
	지역	-1,260,263	14,833 (57.8)	-688,455	5,883 (67.6)
47세	사업장	-64,264	7,890 (42.2)	167,246	2,117 (33.0)
	지역	-1,272,327	10,823 (57.8)	-669,663	4,303 (67.0)
48세	사업장	-96,383	8,450 (42.1)	148,133	2,341 (32.6)
	지역	-1291,731	11,615 (57.9)	-676,383	4,830 (67.4)
49세	사업장	-81,702	10,577 (38.7)	127,576	2,054 (30.0)
	지역	-1,131,969	16,764 (61.3)	-668,545	4,803 (70.0)
50세	사업장	-183,522	8,290 (40.2)	108,017	1,992 (28.5)
	지역	-1,310,924	12,337 (59.8)	-669,743	5,009 (71.5)

〈부표 18〉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대비 평균소득변동 성별비교

(단위: 원, 명, %)

연 령	구 분	남 성		여 성	
		평균소득	인 원	평균소득	인 원
45세	사업장	292,297	11,387 (49.8)	251,189	3,591 (39.2)
	지역	-999,631	11,485 (50.2)	-615,587	5,563 (60.8)
46세	사업장	264,383	9,475 (48.8)	253,700	3,046 (40.3)
	지역	-1,006,673	9,957 (51.2)	-608,176	4,517 (59.7)
47세	사업장	239,989	8,297 (49.4)	243,880	2,626 (40.4)
	지역	-1,021,955	8,510 (50.6)	-617,083	3,871 (59.6)
48세	사업장	233,227	8,832 (48.3)	219,237	2,818 (39.2)
	지역	-1,015,795	9,443 (51.7)	-587,426	4,363 (60.8)
49세	사업장	221,494	6,359 (48.1)	233,877	2,146 (40.2)
	지역	-989,462	6,856 (51.9)	-578,606	3,192 (59.8)
50세	사업장	184,881	7,039 (48.2)	195,002	2,189 (38.9)
	지역	-1,001,061	7,576 (51.8)	-556,582	3,432 (61.1)

〈부표 19〉 1998년 대비 2003년 평균소득변동의 성별비교(45~55세)
(단위: 원, 명,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평균소득	인원	평균소득	인원
45세	사업장	35,039	9,644 (42.4)	210,940	2,362 (32.5)
	지역	-1240,223	13,122 (57.6)	-708,552	4,898 (67.5)
46세	사업장	-18,586	10,471 (42.0)	198,732	2,752 (32.3)
	지역	-1263,211	14,464 (58.0)	-692,144	5,756 (67.7)
47세	사업장	-73,952	7,664 (42.1)	166,270	2,075 (32.9)
	지역	-1275,273	10,554 (57.9)	-670,260	4,232 (67.1)
48세	사업장	-108,115	8,196 (42.0)	146,634	2,252 (32.2)
	지역	-1296,098	11,321 (58.0)	-679,289	4,743 (67.8)
49세	사업장	-141,477	8,237 (41.4)	124,950	1,992 (29.7)
	지역	-1322,399	11,655 (58.6)	-671,561	4,714 (70.3)
50세	사업장	-193,272	8,053 (40.1)	103,588	1,940 (28.3)
	지역	-1314,372	12,042 (59.9)	-670,916	4,921 (71.7)
51세	사업장	-225,463	8,014 (39.8)	90,930	1,774 (26.4)
	지역	-1321,790	12,112 (60.2)	-631,236	4,944 (73.6)
52세	사업장	-262,588	6,338 (38.0)	60,371	1,319 (24.6)
	지역	-1346,628	10,360 (62.0)	-650,630	4,032 (75.4)
53세	사업장	-312,966	5,600 (36.7)	61,082	1,118 (23.0)
	지역	-1398,332	9,660 (63.3)	-608,470	3,751 (77.0)
54세	사업장	-285,358	5,648 (33.9)	51,097	1,158 (21.7)
	지역	-1415,714	11,002 (66.1)	-607,778	4,181 (78.3)
55세	사업장	-325,520	2,009 (11.4)	66,511	470 (8.0)
	지역	-1623,646	15,552 (88.6)	-703,392	5,409 (92.0)

〈부표 20〉 2000년 대비 2003년 평균소득변동의 성별비교(47~57세)
(단위: 원, 명, %)

연 령	구 분	남 성		여 성	
		평균소득	인 원	평균소득	인 원
47세	사업장	239,602	7,963 (49.2)	276,495	1,415 (46.6)
	지역	-1024,588	8,235 (50.8)	-931,619	1,624 (53.4)
48세	사업장	231,093	8,499 (48.1)	217,166	2,742 (39.2)
	지역	-1016,703	9,168 (51.9)	-590,056	4,250 (60.8)
49세	사업장	218,600	6,134 (48.1)	232,689	2,086 (40.1)
	지역	-989,813	6,624 (51.9)	-581,028	3,112 (59.9)
50세	사업장	181,833	6,787 (48.0)	196,308	2,126 (38.9)
	지역	-1002,016	7,345 (52.0)	-558,824	3,342 (61.1)
51세	사업장	168,282	6,759 (48.7)	186,796	2,044 (38.0)
	지역	-993,405	7,118 (51.3)	-561,344	3,333 (62.0)
52세	사업장	153,213	6,759 (48.3)	176,796	1,904 (36.1)
	지역	-1009,341	7,228 (51.7)	-552,366	3,377 (63.9)
53세	사업장	127,320	6,571 (46.8)	147,926	1,818 (34.9)
	지역	-1010,132	7,479 (53.2)	-533,743	3,398 (65.1)
54세	사업장	105,446	5,187 (44.4)	144,935	1,309 (32.9)
	지역	-1052,057	6,489 (55.6)	-532,254	2,675 (67.1)
55세	사업장	18,147	4,867 (41.8)	117,845	1,197 (30.1)
	지역	-1162,116	6,773 (58.2)	-567,553	2,775 (69.9)
56세	사업장	17,992	4,935 (42.4)	121,874	1,227 (31.0)
	지역	-1053,024	6,702 (57.6)	-486,907	2,735 (69.0)
57세	사업장	50,266	1,768 (15.3)	112,605	453 (11.9)
	지역	-1152,980	9,825 (84.7)	-532,620	3,340 (88.1)

〈부표 21〉 1998년 남성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5세	0	0 (0.0)	0 (0.0)	0 (0.0)	3 (0.0)	9,425 (100.0)	4,000 (100.0)
	1~5	5,557 (23.7)	0 (0.0)	0 (0.0)	863 (8.6)	0 (0.0)	0 (0.0)
	6~10	1,448 (6.2)	0 (0.0)	0 (0.0)	1,359 (13.6)	0 (0.0)	0 (0.0)
	11~50	5,260 (22.5)	0 (0.0)	0 (0.0)	3,225 (32.2)	0 (0.0)	0 (0.0)
	51~100	2,064 (8.8)	0 (0.0)	0 (0.0)	1,116 (11.2)	0 (0.0)	0 (0.0)
	101~500	4,442 (19.0)	0 (0.0)	0 (0.0)	1,957 (19.6)	0 (0.0)	0 (0.0)
	501~1000	1,319 (5.6)	0 (0.0)	0 (0.0)	386 (3.9)	0 (0.0)	0 (0.0)
	1001 이상	3,338 (14.2)	0 (0.0)	0 (0.0)	1,094 (10.9)	0 (0.0)	0 (0.0)
	계	23,428 (100.0)	0 (0.0)	0 (0.0)	10,003 (100.0)	9,425 (100.0)	4,000 (100.0)
46세	0	0 (0.0)	0 (0.0)	0 (0.0)	1 (0.0)	10,422 (100.0)	4,411 (100.0)
	1~5	5,641 (22.0)	0 (0.0)	0 (0.0)	924 (8.5)	0 (0.0)	0 (0.0)
	6~10	1,538 (6.0)	0 (0.0)	0 (0.0)	1,411 (13.0)	0 (0.0)	0 (0.0)
	11~50	5,756 (22.4)	0 (0.0)	0 (0.0)	3,525 (32.6)	0 (0.0)	0 (0.0)
	51~100	2,275 (8.9)	0 (0.0)	0 (0.0)	1,255 (11.6)	0 (0.0)	0 (0.0)
	101~500	4,985 (19.4)	0 (0.0)	0 (0.0)	2,105 (19.4)	0 (0.0)	0 (0.0)
	501~1000	1,543 (6.0)	0 (0.0)	0 (0.0)	418 (3.9)	0 (0.0)	0 (0.0)
	1001 이상	3,920 (15.3)	0 (0.0)	0 (0.0)	1,186 (11.0)	0 (0.0)	0 (0.0)
	계	25,658 (100.0)	0 (0.0)	0 (0.0)	10,825 (100.0)	10,422 (100.0)	4,411 (100.0)
47세	0	0 (0.0)	0 (0.0)	0 (0.0)	1 (0.0)	7,575 (100.0)	3,248 (100.0)
	1~5	4,047 (21.6)	0 (0.0)	0 (0.0)	640 (8.1)	0 (0.0)	0 (0.0)
	6~10	1,158 (6.2)	0 (0.0)	0 (0.0)	1,034 (13.1)	0 (0.0)	0 (0.0)
	11~50	4,107 (21.9)	0 (0.0)	0 (0.0)	2,607 (33.0)	0 (0.0)	0 (0.0)
	51~100	1,701 (9.1)	0 (0.0)	0 (0.0)	950 (12.0)	0 (0.0)	0 (0.0)
	101~500	3,621 (19.4)	0 (0.0)	0 (0.0)	1,571 (19.9)	0 (0.0)	0 (0.0)
	501~1000	1,106 (5.9)	0 (0.0)	0 (0.0)	333 (4.2)	0 (0.0)	0 (0.0)
	1001 이상	2,973 (15.9)	0 (0.0)	0 (0.0)	754 (9.6)	0 (0.0)	0 (0.0)
	계	18,713 (100.0)	0 (0.0)	0 (0.0)	7,890 (100.0)	7,575 (100.0)	3,248 (100.0)
48세	0	0 (0.0)	0 (0.0)	0 (0.0)	2 (0.0)	8,211 (100.0)	3,404 (100.0)
	1~5	4,145 (20.7)	0 (0.0)	0 (0.0)	720 (8.5)	0 (0.0)	0 (0.0)
	6~10	1,111 (5.5)	0 (0.0)	0 (0.0)	1,094 (12.9)	0 (0.0)	0 (0.0)
	11~50	4,540 (22.6)	0 (0.0)	0 (0.0)	2,750 (32.5)	0 (0.0)	0 (0.0)
	51~100	1,799 (9.0)	0 (0.0)	0 (0.0)	1,003 (11.9)	0 (0.0)	0 (0.0)
	101~500	4,012 (20.0)	0 (0.0)	0 (0.0)	1,708 (20.2)	0 (0.0)	0 (0.0)
	501~1000	1,156 (5.8)	0 (0.0)	0 (0.0)	342 (4.0)	0 (0.0)	0 (0.0)
	1001 이상	3,302 (16.5)	0 (0.0)	0 (0.0)	831 (9.8)	0 (0.0)	0 (0.0)
	계	20,065 (100.0)	0 (0.0)	0 (0.0)	8,450 (100.0)	8,211 (100.0)	3,404 (100.0)

〈부표 21〉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9세	0	0 (0.0)	0 (0.0)	0 (0.0)	1 (0.0)	8,458 (100.0)	3,503 (100.0)
	1~5	4,128 (20.2)	0 (0.0)	0 (0.0)	711 (8.3)	0 (0.0)	0 (0.0)
	6~10	1,154 (5.6)	0 (0.0)	0 (0.0)	1,177 (13.8)	0 (0.0)	0 (0.0)
	11~50	4,637 (22.6)	0 (0.0)	0 (0.0)	2,779 (32.6)	0 (0.0)	0 (0.0)
	51~100	1,825 (8.9)	0 (0.0)	0 (0.0)	1,047 (12.3)	0 (0.0)	0 (0.0)
	101~500	4,101 (20.0)	0 (0.0)	0 (0.0)	1,638 (19.2)	0 (0.0)	0 (0.0)
	501~1000	1,282 (6.3)	0 (0.0)	0 (0.0)	362 (4.2)	0 (0.0)	0 (0.0)
	1001 이상	3,357 (16.4)	0 (0.0)	0 (0.0)	808 (9.5)	0 (0.0)	0 (0.0)
	계	20,484 (100.0)	0 (0.0)	0 (0.0)	8,523 (100.0)	8,458 (100.0)	3,503 (100.0)
50세	0	0 (0.0)	0 (0.0)	0 (0.0)	0 (0.0)	8,535 (100.0)	3,802 (100.0)
	1~5	4,074 (19.8)	0 (0.0)	0 (0.0)	655 (7.9)	0 (0.0)	0 (0.0)
	6~10	1,240 (6.0)	0 (0.0)	0 (0.0)	1,096 (13.2)	0 (0.0)	0 (0.0)
	11~50	4,692 (22.7)	0 (0.0)	0 (0.0)	2,978 (35.9)	0 (0.0)	0 (0.0)
	51~100	1,858 (9.0)	0 (0.0)	0 (0.0)	971 (11.7)	0 (0.0)	0 (0.0)
	101~500	4,138 (20.1)	0 (0.0)	0 (0.0)	1,557 (18.8)	0 (0.0)	0 (0.0)
	501~1000	1,218 (5.9)	0 (0.0)	0 (0.0)	359 (4.3)	0 (0.0)	0 (0.0)
	1001 이상	3,407 (16.5)	0 (0.0)	0 (0.0)	674 (8.1)	0 (0.0)	0 (0.0)
	계	20,267 (100.0)	0 (0.0)	0 (0.0)	8,290 (100.0)	8,535 (100.0)	3,802 (100.0)

〈부표 22〉 2000년 남성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5세	0	0 (0.0)	0 (0.0)	0 (0.0)	0 (0.0)	8,000 (100.0)	3,485 (100.0)
	1~5	3,285 (14.4)	0 (0.0)	0 (0.0)	885 (7.8)	0 (0.0)	0 (0.0)
	6~10	2,092 (9.1)	0 (0.0)	0 (0.0)	1,489 (13.1)	0 (0.0)	0 (0.0)
	11~50	7,535 (32.9)	0 (0.0)	0 (0.0)	3,761 (33.0)	0 (0.0)	0 (0.0)
	51~100	2,398 (10.5)	0 (0.0)	0 (0.0)	1,236 (10.9)	0 (0.0)	0 (0.0)
	101~500	4,741 (20.7)	0 (0.0)	0 (0.0)	1,927 (16.9)	0 (0.0)	0 (0.0)
	501~1000	926 (4.0)	0 (0.0)	0 (0.0)	551 (4.8)	0 (0.0)	0 (0.0)
	1001 이상	1,895 (8.3)	0 (0.0)	0 (0.0)	1,538 (13.5)	0 (0.0)	0 (0.0)
계	22,872 (100.0)	0 (0.0)	0 (0.0)	11,387 (100.0)	8,000 (100.0)	3,485 (100.0)	
46세	0	0 (0.0)	0 (0.0)	0 (0.0)	0 (0.0)	7,024 (100.0)	2,933 (100.0)
	1~5	2,756 (14.2)	0 (0.0)	0 (0.0)	782 (8.3)	0 (0.0)	0 (0.0)
	6~10	1,705 (8.8)	0 (0.0)	0 (0.0)	1,204 (12.7)	0 (0.0)	0 (0.0)
	11~50	6,367 (32.8)	0 (0.0)	0 (0.0)	3,056 (32.3)	0 (0.0)	0 (0.0)
	51~100	2,071 (10.7)	0 (0.0)	0 (0.0)	987 (10.4)	0 (0.0)	0 (0.0)
	101~500	3,952 (20.3)	0 (0.0)	0 (0.0)	1,667 (17.6)	0 (0.0)	0 (0.0)
	501~1000	797 (4.1)	0 (0.0)	0 (0.0)	467 (4.9)	0 (0.0)	0 (0.0)
	1001 이상	1,784 (9.2)	0 (0.0)	0 (0.0)	1,312 (13.8)	0 (0.0)	0 (0.0)
계	19,432 (100.0)	0 (0.0)	0 (0.0)	9,475 (100.0)	7,024 (100.0)	2,933 (100.0)	
47세	0	0 (0.0)	0 (0.0)	0 (0.0)	0 (0.0)	5,853 (100.0)	2,657 (100.0)
	1~5	2,278 (13.6)	0 (0.0)	0 (0.0)	651 (7.8)	0 (0.0)	0 (0.0)
	6~10	1,485 (8.8)	0 (0.0)	0 (0.0)	1,033 (12.5)	0 (0.0)	0 (0.0)
	11~50	5,574 (33.2)	0 (0.0)	0 (0.0)	2,717 (32.7)	0 (0.0)	0 (0.0)
	51~100	1,744 (10.4)	0 (0.0)	0 (0.0)	889 (10.7)	0 (0.0)	0 (0.0)
	101~500	3,445 (20.5)	0 (0.0)	0 (0.0)	1,501 (18.1)	0 (0.0)	0 (0.0)
	501~1000	736 (4.4)	0 (0.0)	0 (0.0)	379 (4.6)	0 (0.0)	0 (0.0)
	1001 이상	1,545 (9.2)	0 (0.0)	0 (0.0)	1,127 (13.6)	0 (0.0)	0 (0.0)
계	16,807 (100.0)	0 (0.0)	0 (0.0)	8,297 (100.0)	5,853 (100.0)	2,657 (100.0)	
48세	0	0 (0.0)	0 (0.0)	0 (0.0)	0 (0.0)	6,438 (100.0)	3,005 (100.0)
	1~5	2,424 (13.3)	0 (0.0)	0 (0.0)	622 (7.0)	0 (0.0)	0 (0.0)
	6~10	1,585 (8.7)	0 (0.0)	0 (0.0)	1,073 (12.1)	0 (0.0)	0 (0.0)
	11~50	6,041 (33.1)	0 (0.0)	0 (0.0)	2,977 (33.7)	0 (0.0)	0 (0.0)
	51~100	1,965 (10.8)	0 (0.0)	0 (0.0)	954 (10.8)	0 (0.0)	0 (0.0)
	101~500	3,807 (20.8)	0 (0.0)	0 (0.0)	1,654 (18.7)	0 (0.0)	0 (0.0)
	501~1000	803 (4.4)	0 (0.0)	0 (0.0)	437 (4.9)	0 (0.0)	0 (0.0)
	1001 이상	1,650 (9.0)	0 (0.0)	0 (0.0)	1,115 (12.6)	0 (0.0)	0 (0.0)
계	18,275 (100.0)	0 (0.0)	0 (0.0)	8,832 (100.0)	6,438 (100.0)	3,005 (100.0)	

〈부표 22〉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9세	0	0 (0.0)	0 (0.0)	0 (0.0)	0 (0.0)	4,728 (100.0)	2,128 (100.0)
	1~5	1,789 (13.5)	0 (0.0)	0 (0.0)	414 (6.5)	0 (0.0)	0 (0.0)
	6~10	1,102 (8.3)	0 (0.0)	0 (0.0)	755 (11.9)	0 (0.0)	0 (0.0)
	11~50	4,468 (33.8)	0 (0.0)	0 (0.0)	2,128 (33.5)	0 (0.0)	0 (0.0)
	51~100	1,462 (11.1)	0 (0.0)	0 (0.0)	735 (11.6)	0 (0.0)	0 (0.0)
	101~500	2,683 (20.3)	0 (0.0)	0 (0.0)	1,184 (18.6)	0 (0.0)	0 (0.0)
	501~1000	521 (3.9)	0 (0.0)	0 (0.0)	285 (4.5)	0 (0.0)	0 (0.0)
	1001 이상	1,190 (9.0)	0 (0.0)	0 (0.0)	858 (13.5)	0 (0.0)	0 (0.0)
	계	13,215 (100.0)	0 (0.0)	0 (0.0)	6,359 (100.0)	4,728 (100.0)	2,128 (100.0)
50세	0	0 (0.0)	0 (0.0)	0 (0.0)	1 (0.0)	5,178 (100.0)	2,398 (100.0)
	1~5	1,961 (13.4)	0 (0.0)	0 (0.0)	457 (6.5)	0 (0.0)	0 (0.0)
	6~10	1,275 (8.7)	0 (0.0)	0 (0.0)	861 (12.2)	0 (0.0)	0 (0.0)
	11~50	4,770 (32.6)	0 (0.0)	0 (0.0)	2,327 (33.1)	0 (0.0)	0 (0.0)
	51~100	1,626 (11.1)	0 (0.0)	0 (0.0)	855 (12.1)	0 (0.0)	0 (0.0)
	101~500	3,026 (20.7)	0 (0.0)	0 (0.0)	1,365 (19.4)	0 (0.0)	0 (0.0)
	501~1000	642 (4.4)	0 (0.0)	0 (0.0)	292 (4.1)	0 (0.0)	0 (0.0)
	1001 이상	1,315 (9.0)	0 (0.0)	0 (0.0)	881 (12.5)	0 (0.0)	0 (0.0)
	계	14,615 (100.0)	0 (0.0)	0 (0.0)	7,039 (100.0)	5,178 (100.0)	2,398 (100.0)

〈부표 23〉 1998년 여성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거			현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5세	0	0 (0.0)	0 (0.0)	0 (0.0)	0 (0.0)	1,632 (100.0)	3,352 (100.0)
	1~5	1,572 (21.2)	0 (0.0)	0 (0.0)	104 (4.3)	0 (0.0)	0 (0.0)
	6~10	491 (6.6)	0 (0.0)	0 (0.0)	171 (7.1)	0 (0.0)	0 (0.0)
	11~50	2,285 (30.9)	0 (0.0)	0 (0.0)	882 (36.5)	0 (0.0)	0 (0.0)
	51~100	950 (12.8)	0 (0.0)	0 (0.0)	374 (15.5)	0 (0.0)	0 (0.0)
	101~500	1,375 (18.6)	0 (0.0)	0 (0.0)	572 (23.6)	0 (0.0)	0 (0.0)
	501~1000	284 (3.8)	0 (0.0)	0 (0.0)	141 (5.8)	0 (0.0)	0 (0.0)
	1001 이상	446 (6.0)	0 (0.0)	0 (0.0)	175 (7.2)	0 (0.0)	0 (0.0)
계	7,403 (100.0)	0 (0.0)	0 (0.0)	2,419 (100.0)	1,632 (100.0)	3,352 (100.0)	
46세	0	0 (0.0)	0 (0.0)	0 (0.0)	0 (0.0)	1,908 (100.0)	3,975 (100.0)
	1~5	1,845 (21.2)	0 (0.0)	0 (0.0)	84 (3.0)	0 (0.0)	0 (0.0)
	6~10	580 (6.7)	0 (0.0)	0 (0.0)	215 (7.6)	0 (0.0)	0 (0.0)
	11~50	2,667 (30.7)	0 (0.0)	0 (0.0)	1,005 (35.7)	0 (0.0)	0 (0.0)
	51~100	1,143 (13.1)	0 (0.0)	0 (0.0)	484 (17.2)	0 (0.0)	0 (0.0)
	101~500	1,623 (18.7)	0 (0.0)	0 (0.0)	659 (23.4)	0 (0.0)	0 (0.0)
	501~1000	355 (4.1)	0 (0.0)	0 (0.0)	180 (6.4)	0 (0.0)	0 (0.0)
	1001 이상	488 (5.6)	0 (0.0)	0 (0.0)	191 (6.8)	0 (0.0)	0 (0.0)
계	8,701 (100.0)	0 (0.0)	0 (0.0)	2,818 (100.0)	1,908 (100.0)	3,975 (100.0)	
47세	0	0 (0.0)	0 (0.0)	0 (0.0)	0 (0.0)	1,408 (100.0)	2,895 (100.0)
	1~5	1,351 (21.0)	0 (0.0)	0 (0.0)	74 (3.5)	0 (0.0)	0 (0.0)
	6~10	385 (6.0)	0 (0.0)	0 (0.0)	153 (7.2)	0 (0.0)	0 (0.0)
	11~50	2,026 (31.6)	0 (0.0)	0 (0.0)	748 (35.3)	0 (0.0)	0 (0.0)
	51~100	848 (13.2)	0 (0.0)	0 (0.0)	378 (17.9)	0 (0.0)	0 (0.0)
	101~500	1,213 (18.9)	0 (0.0)	0 (0.0)	457 (21.6)	0 (0.0)	0 (0.0)
	501~1000	262 (4.1)	0 (0.0)	0 (0.0)	147 (6.9)	0 (0.0)	0 (0.0)
	1001 이상	335 (5.2)	0 (0.0)	0 (0.0)	160 (7.6)	0 (0.0)	0 (0.0)
계	6,420 (100.0)	0 (0.0)	0 (0.0)	2,117 (100.0)	1,408 (100.0)	2,895 (100.0)	
48세	0	0 (0.0)	0 (0.0)	0 (0.0)	0 (0.0)	1,711 (100.0)	3,119 (100.0)
	1~5	1,343 (18.7)	0 (0.0)	0 (0.0)	73 (3.1)	0 (0.0)	0 (0.0)
	6~10	448 (6.2)	0 (0.0)	0 (0.0)	164 (7.0)	0 (0.0)	0 (0.0)
	11~50	2,221 (31.0)	0 (0.0)	0 (0.0)	855 (36.5)	0 (0.0)	0 (0.0)
	51~100	935 (13.0)	0 (0.0)	0 (0.0)	418 (17.9)	0 (0.0)	0 (0.0)
	101~500	1,436 (20.0)	0 (0.0)	0 (0.0)	496 (21.2)	0 (0.0)	0 (0.0)
	501~1000	338 (4.7)	0 (0.0)	0 (0.0)	167 (7.1)	0 (0.0)	0 (0.0)
	1001 이상	450 (6.3)	0 (0.0)	0 (0.0)	168 (7.2)	0 (0.0)	0 (0.0)
계	7,171 (100.0)	0 (0.0)	0 (0.0)	2,341 (100.0)	1,711 (100.0)	3,119 (100.0)	

〈부표 23〉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9세	0	0 (0.0)	0 (0.0)	0 (0.0)	0 (0.0)	1,822 (100.0)	2,981 (100.0)
	1~5	1,313 (19.1)	0 (0.0)	0 (0.0)	72 (3.5)	0 (0.0)	0 (0.0)
	6~10	435 (6.3)	0 (0.0)	0 (0.0)	169 (8.2)	0 (0.0)	0 (0.0)
	11~50	2,126 (31.0)	0 (0.0)	0 (0.0)	734 (35.7)	0 (0.0)	0 (0.0)
	51~100	851 (12.4)	0 (0.0)	0 (0.0)	316 (15.4)	0 (0.0)	0 (0.0)
	101~500	1,369 (20.0)	0 (0.0)	0 (0.0)	499 (24.3)	0 (0.0)	0 (0.0)
	501~1000	332 (4.8)	0 (0.0)	0 (0.0)	124 (6.0)	0 (0.0)	0 (0.0)
	1001 이상	431 (6.3)	0 (0.0)	0 (0.0)	140 (6.8)	0 (0.0)	0 (0.0)
	계	6,857 (100.0)	0 (0.0)	0 (0.0)	2,054 (100.0)	1,822 (100.0)	2,981 (100.0)
50세	0	0 (0.0)	0 (0.0)	0 (0.0)	0 (0.0)	2,024 (100.0)	2,985 (100.0)
	1~5	1,352 (19.3)	0 (0.0)	0 (0.0)	66 (3.3)	0 (0.0)	0 (0.0)
	6~10	433 (6.2)	0 (0.0)	0 (0.0)	165 (8.3)	0 (0.0)	0 (0.0)
	11~50	2,121 (30.3)	0 (0.0)	0 (0.0)	710 (35.6)	0 (0.0)	0 (0.0)
	51~100	907 (13.0)	0 (0.0)	0 (0.0)	293 (14.7)	0 (0.0)	0 (0.0)
	101~500	1,380 (19.7)	0 (0.0)	0 (0.0)	480 (24.1)	0 (0.0)	0 (0.0)
	501~1000	340 (4.9)	0 (0.0)	0 (0.0)	136 (6.8)	0 (0.0)	0 (0.0)
	1001 이상	468 (6.7)	0 (0.0)	0 (0.0)	142 (7.1)	0 (0.0)	0 (0.0)
	계	7,001 (100.0)	0 (0.0)	0 (0.0)	1,992 (100.0)	2,024 (100.0)	2,985 (100.0)

〈부표 24〉 2000년 여성퇴사자의 사업장규모별 자격변동비교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5세	0	0 (0.0)	0 (0.0)	0 (0.0)	0 (0.0)	1,693 (100.0)	3,870 (100.0)
	1~5	959 (10.5)	0 (0.0)	0 (0.0)	113 (3.1)	0 (0.0)	0 (0.0)
	6~10	621 (6.8)	0 (0.0)	0 (0.0)	266 (7.4)	0 (0.0)	0 (0.0)
	11~50	3,487 (38.1)	0 (0.0)	0 (0.0)	1,324 (36.9)	0 (0.0)	0 (0.0)
	51~100	1,332 (14.6)	0 (0.0)	0 (0.0)	639 (17.8)	0 (0.0)	0 (0.0)
	101~500	1,820 (19.9)	0 (0.0)	0 (0.0)	729 (20.3)	0 (0.0)	0 (0.0)
	501~1000	395 (4.3)	0 (0.0)	0 (0.0)	169 (4.7)	0 (0.0)	0 (0.0)
	1001 이상	540 (5.9)	0 (0.0)	0 (0.0)	351 (9.8)	0 (0.0)	0 (0.0)
계	9,154 (100.0)	0 (0.0)	0 (0.0)	3,591 (100.0)	1,693 (100.0)	3,870 (100.0)	
46세	0	0 (0.0)	0 (0.0)	0 (0.0)	0 (0.0)	1,457 (100.0)	3,060 (100.0)
	1~5	786 (10.4)	0 (0.0)	0 (0.0)	96 (3.2)	0 (0.0)	0 (0.0)
	6~10	497 (6.6)	0 (0.0)	0 (0.0)	193 (6.3)	0 (0.0)	0 (0.0)
	11~50	2,782 (36.8)	0 (0.0)	0 (0.0)	1,089 (35.8)	0 (0.0)	0 (0.0)
	51~100	1,121 (14.8)	0 (0.0)	0 (0.0)	492 (16.2)	0 (0.0)	0 (0.0)
	101~500	1,576 (20.8)	0 (0.0)	0 (0.0)	685 (22.5)	0 (0.0)	0 (0.0)
	501~1000	317 (4.2)	0 (0.0)	0 (0.0)	175 (5.7)	0 (0.0)	0 (0.0)
	1001 이상	484 (6.4)	0 (0.0)	0 (0.0)	316 (10.4)	0 (0.0)	0 (0.0)
계	7,563 (100.0)	0 (0.0)	0 (0.0)	3,046 (100.0)	1,457 (100.0)	3,060 (100.0)	
47세	0	0 (0.0)	0 (0.0)	0 (0.0)	0 (0.0)	1,300 (100.0)	2,571 (100.0)
	1~5	732 (11.3)	0 (0.0)	0 (0.0)	93 (3.5)	0 (0.0)	0 (0.0)
	6~10	386 (5.9)	0 (0.0)	0 (0.0)	186 (7.1)	0 (0.0)	0 (0.0)
	11~50	2,365 (36.4)	0 (0.0)	0 (0.0)	898 (34.2)	0 (0.0)	0 (0.0)
	51~100	974 (15.0)	0 (0.0)	0 (0.0)	405 (15.4)	0 (0.0)	0 (0.0)
	101~500	1,369 (21.1)	0 (0.0)	0 (0.0)	607 (23.1)	0 (0.0)	0 (0.0)
	501~1000	279 (4.3)	0 (0.0)	0 (0.0)	144 (5.5)	0 (0.0)	0 (0.0)
	1001 이상	392 (6.0)	0 (0.0)	0 (0.0)	293 (11.2)	0 (0.0)	0 (0.0)
계	6,497 (100.0)	0 (0.0)	0 (0.0)	2,626 (100.0)	1,300 (100.0)	2,571 (100.0)	
48세	0	0 (0.0)	0 (0.0)	0 (0.0)	0 (0.0)	1,527 (100.0)	2,836 (100.0)
	1~5	763 (10.6)	0 (0.0)	0 (0.0)	81 (2.9)	0 (0.0)	0 (0.0)
	6~10	474 (6.6)	0 (0.0)	0 (0.0)	176 (6.2)	0 (0.0)	0 (0.0)
	11~50	2,569 (35.8)	0 (0.0)	0 (0.0)	953 (33.8)	0 (0.0)	0 (0.0)
	51~100	1,037 (14.4)	0 (0.0)	0 (0.0)	464 (16.5)	0 (0.0)	0 (0.0)
	101~500	1,517 (21.1)	0 (0.0)	0 (0.0)	640 (22.7)	0 (0.0)	0 (0.0)
	501~1000	333 (4.6)	0 (0.0)	0 (0.0)	166 (5.9)	0 (0.0)	0 (0.0)
	1001 이상	488 (6.8)	0 (0.0)	0 (0.0)	338 (12.0)	0 (0.0)	0 (0.0)
계	7,181 (100.0)	0 (0.0)	0 (0.0)	2,818 (100.0)	1,527 (100.0)	2,836 (100.0)	

〈부표 24〉 계속

구분	사업장규모(명)	과 거			현 재		
		사업장	지역	미가입	사업장	지역	미가입
49세	0	0 (0.0)	0 (0.0)	0 (0.0)	0 (0.0)	1,104 (100.0)	2,088 (100.0)
	1~5	566 (10.6)	0 (0.0)	0 (0.0)	76 (3.5)	0 (0.0)	0 (0.0)
	6~10	325 (6.1)	0 (0.0)	0 (0.0)	152 (7.1)	0 (0.0)	0 (0.0)
	11~50	1,885 (35.3)	0 (0.0)	0 (0.0)	683 (31.8)	0 (0.0)	0 (0.0)
	51~100	753 (14.1)	0 (0.0)	0 (0.0)	342 (15.9)	0 (0.0)	0 (0.0)
	101~500	1,187 (22.2)	0 (0.0)	0 (0.0)	484 (22.6)	0 (0.0)	0 (0.0)
	501~1000	238 (4.5)	0 (0.0)	0 (0.0)	110 (5.1)	0 (0.0)	0 (0.0)
	1001 이상	384 (7.2)	0 (0.0)	0 (0.0)	299 (13.9)	0 (0.0)	0 (0.0)
	계	5,338 (100.0)	0 (0.0)	0 (0.0)	2,146 (100.0)	1,104 (100.0)	2,088 (100.0)
50세	0	0 (0.0)	0 (0.0)	0 (0.0)	0 (0.0)	1,325 (100.0)	2,107 (100.0)
	1~5	577 (10.3)	0 (0.0)	0 (0.0)	58 (2.6)	0 (0.0)	0 (0.0)
	6~10	339 (6.0)	0 (0.0)	0 (0.0)	136 (6.2)	0 (0.0)	0 (0.0)
	11~50	1,879 (33.4)	0 (0.0)	0 (0.0)	731 (33.4)	0 (0.0)	0 (0.0)
	51~100	822 (14.6)	0 (0.0)	0 (0.0)	343 (15.7)	0 (0.0)	0 (0.0)
	101~500	1,281 (22.8)	0 (0.0)	0 (0.0)	506 (23.1)	0 (0.0)	0 (0.0)
	501~1000	295 (5.2)	0 (0.0)	0 (0.0)	147 (6.7)	0 (0.0)	0 (0.0)
	1001 이상	428 (7.6)	0 (0.0)	0 (0.0)	268 (12.2)	0 (0.0)	0 (0.0)
	계	5,621 (100.0)	0 (0.0)	0 (0.0)	2,189 (100.0)	1,325 (100.0)	2,107 (100.0)

□ 저 자 약 력 □

- 원 종 욱

미국 Purdu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공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공저)

- 백 화 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 태 완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